

전성협 2024년 연구보고서-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s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연구책임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공동단장)  
공동연구원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보름(전주성폭력상담소 활동가/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실무담당)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범죄분석·조사연구실 연구원)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발 간 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세상을 바꾼 용기와 시민들의 연대 끝에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들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훌쩍 신장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폭력 피해를 말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의 담당자들에게 2차 피해를 겪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 10월에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을 출범해 형사사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며 피해자 권리 존중을 위한 연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를 모아, 수사·재판 담당자들 중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발표하면서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담당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연대해 잘못된 법과 관행에 맞서온 시민감시단 활동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견고한 통념을 깨뜨리고 ‘피해자다움’을 변화시키며 피해자 권리보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2004.10~201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1.2~2022.1), 전주성폭력상담소(2022.2~현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년 동안 스물일곱 분의 디딤돌·걸림돌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열정 어린 참여와 수고 덕분에 시민감시단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감시단 20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디딤돌·걸림돌·특별상에 선정되었던 총 307건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김정혜, 양보름, 이경환, 이미경, 장임다혜, 최란 공동연구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을 반대하는 활동에 귀한 자료가 되고,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피해자 권리보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 상담 현장에서 수사와 재판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있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러분께 힘찬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 12. 9.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혜란, 공동대표 권지현, 박선경, 최현진

# 연구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실제 피해자의 권리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주목함.
- 지난 20년 동안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법적 제도, 관행,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장 활동에서 나온 목소리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이를 다시 운동으로 환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의 내용

- 지난 20년간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와 내용 정리
-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 분석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쟁점 논의

### 3. 연구 방법

- 시민감시단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 307건 분석
- 문헌 연구
- 전성협 활동가 FGI
- 전문가 자문

## II.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와 2차 피해 감시활동

### 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와 내용

- 시민감시단 발족 배경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을 적용·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남성중심적이며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성폭력에 대한 입법 채택은 물론,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그리고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하고 전국의 상담소들이 연대하여 2004년 10월부터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함.
  - 주요 활동 내용
    -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 올해의 여성인권존중 디딤돌·걸림돌 선정 및 발표 : 지난 20년 동안 총 307건의 디딤돌·걸림돌·특별상을 선정함. 이중 디딤돌은 157건이고, 걸림돌은 126건, 특별상은 24건임. 디딤돌의 경우, 판사(83건), 경찰(47건), 검사(26건), 기타(1건) 순이고, 걸림돌은 판사(82건), 검사(33건), 경찰(11건) 순서임.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분석
    -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 활동가 워크숍 : 수사절차 이해 및 모니터링 연대 방안
  -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산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역대 심사위원 및 사무국 활동가
    - 20년 동안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 : 총 60,078,720원
  - 시민감시단 활동 에피소드
2. 향후 성폭력 시민감시단 활동 방향 논의를 위한 물음들
- 시민감시단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범주를 확산할 필요가 있는가?
  - 디딤돌·걸림돌 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수정·보완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시민감시단 활동 참여자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감시단 활동 홍보와 법·정책변화를 실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Ⅲ.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 분석

#### A. 쟁점별 분석

##### 1.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 최협의설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저항행위 존재 여부를 강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기준이 되었음. 최협의설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강간인지 합의된 성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이 전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지난 20년간의 시민감시단 활동은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최협의설의 변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음. 2004년부터 실질적 저항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던 최협의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저항행위를 입증하지 못해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들을 디딤돌로 선정해옴. 최근 협의설의 적용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가 디딤돌로 선정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와 범행 당시 및 전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임.
- 강제추행에서의 최협의설 폐기와 달리 강간죄에서는 여전히 최협의설 법리가 유지되고 있어, 기소 처분이나 하급심 판단에서 여전히 최협의설을 적용해 피해자의 저항행위 입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사례들을 걸림돌로 선정하여, 대법원 판례 변화를 반영한 수사 및 재판 실무의 정착을 촉구함.
- 법리의 변화만으로 성폭력 재판의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최협의설을 폐기함으로써 폭행·협박과 위력과의 차등적인 관계 설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 해석의 변화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2. 양형

-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어서, 우발적 범행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공탁해서,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자원봉사를 해서, 피해자를 부양해야 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감형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더욱 관대한 양형 관행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성폭력 범죄의 관대한 처벌 관행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비롯하여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과 기준의 변화를 이끌었음.
- 양형기준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양형인자 및 양형인자의 정의가 잘 준수 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들이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참작 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여전히 많음. 향후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절성과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 관대한 처벌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요구됨.

### 3. '피해자다움'과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음. 20년의 세월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어떤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통념이 작동하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무 현장에서는 느끼게 됨. 국민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백래쉬와 같이 오히려 더 강화된 여성혐오나 통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과 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피해자들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그 맥락과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거나 '유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왜곡되어 비판되는 것은 부당함. 피해자다움의 통념이나 강간 신화를 비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어떤 주장도 무비판적으로 모두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통념과 편견에 의해 갇힌 사고를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더 신중한 판단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임.
-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개별 사건들에서의 상담소 등 지원단체들의 노력, 비판적 판례평석 및 토론회, 디딤돌·걸림돌 선정과 같은 여러 노력들이 통념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4. 역고소

- 역고소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됨. 무고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함.
- 무고의 문제는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겁박하여 성폭력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역고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 사건의 경우(15.6%)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 사건의 검찰 인지 비율(27.7%)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이 '성폭력 범죄는 허위 고소가 많다'라는 편견에 기반한 적극 수사여서는 안 될 것임.
- 한편, 무고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될 필요가 있음. 통계에 기반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그 이후로도 성폭력 관련 무고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통념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음.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개선 및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5. 손해배상

-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나뉘어 살펴보았음. 수사기관에 의해 야기된 2차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단순히 시혜적 조치가 아닌 법률상 의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디딤돌에 선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결론과는 달리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민사책임을 통해서나마 정의를 일부 실현하고 피해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음.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의 판단을 비교할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사건 판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제도적으로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또는 중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B. 피해유형별 쟁점과 과제

### 1.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시민감시단의 핵심적 요구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수사, 재판이었음.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은 장애 특성이 성폭력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장애 자체가 얼마나 심한지를 중심에 두거나 비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였음. 또한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를 믿지 못하거나, 진술 조사과정에서 의사 소통상의 특성이나 필요 등을 반영하지 않아 증명력 있는 피해 진술을 수집하는 데 실패함.
- 디딤돌 사례들은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진술 조사환경 조성, 지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장애 특성 반영 노력, 피해자에게 지원체계 연계, 장애 정도 외에 피고인과의 관계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으로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음.
-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끼치는 영향을 진술 조사와 구성요건 판단에 반영하라는 시민감시단의 요구는 법률 개정과 수사 관행 및 법원 판단기준의 변화를 견인하였음. 그럼에도 장애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범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음.

### 2. 아동·청소년

- 아동 대상 성폭력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그간 어떤 다른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정책을 펼쳐왔음. 그러나 강력한 처벌정책은 되려 정상참작과 자량 감경에 의해 감형되거나,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음. 강력한 처벌에는 그에 걸맞은 피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했고, 피해자는 선별되었으며,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로 판단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음.
-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명성이 강조되어 왔음. 따라서 지원단체에서는 무력한, 치명적이라는 성폭력 편견과 통념,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조력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모두 갖게 되었음.

### 3. 친족

-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수사·재판 감시 결과, 신속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구속기소를 하여 피해자와 조기에 분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디딤돌로 다수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해자의 진술 증거에 대해 친족에 의한 피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이후 하급심 판결 등에서 주요 기준점이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친족 성폭력 편견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판결들이나 친족 범위에 대해 좁은 해석과 경제권을 가진 가족 내 가해자의 위치에서 행사되는 위력을 살피지 못한 판결들은 앞으로 친족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에서 변화한 시각과 판결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음.
- 한편, 친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 판결에 이르는 법적 해결 과정의 첫 문을 여는 공소시효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음. 친족 성폭력 피해가 시간이 경과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처벌해야 하는 특성이 사라져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할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등 향후 친족 성폭력 피해의 공소시효 배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 4. 준강간

- 준강간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이 성폭력의 증거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타났음.
- 걸림돌 선정사례에서 추천 단체들은 술이나 약물이 연루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아 준강간의 피해자가 더 많이 의심받고, 피해자는 성폭력 상황에 대해 아예 설명할 수 없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데 비해 명확한 가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받는 현실을 비판했음. 또한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했지만 잊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판단하고자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폭력이 있었는지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하려 하는 문제를 비판해 왔음.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사이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남아있음. 수면, 알코올, 약물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가해자가 이용하고 그로 인해

폭행, 협박이 없이도 일방적인 성교가 가능했지만, 준강간에도, 강간에도 해당할 수 없는 문제는 폭행, 협박을 기반으로 구성된 성폭력 범죄를 동의 의사 기준으로 재판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5.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래 소위 신종 성폭력으로 분류되어 처벌 규정이 수 차례 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성폭력에 대해 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형사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시민감시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때 음란물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기 및 노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법 해석 사례들을 걸림돌로 선정해 왔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이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절차 진행에서 피해 촬영물을 다룰 때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에 노출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도 걸림돌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
-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성폭력을 다루는 법해석과 형사절차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폭력의 착취적 성격과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보호법익의 의미와 반의사에 대한 해석이 구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법규정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의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적 대상화’의 의미가 인격을 부인하고 사물화하는 태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음란성 여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판례를 통해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의미인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라는 보호법익 침해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 데이트 관계 또는 부부관계 등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이, 이전에도 성적 관계가 있었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구성요건에서 이미 탈락하거나 오히려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해 기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친밀한 관계의 성적 요구는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

의 의견을 관철하고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맥락에서의 '강제된 동의'로 드러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판단기준이 폭행·협박에 그쳐있는 현실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폭력이 제대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함.

-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보호법익, 처벌 규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성에 착목하여 피해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구성되어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에 이르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시에 필요함.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로 인식하며 처벌할 수 있는 입법과정이 과제로 남아있음.

#### 7. 군 성폭력

-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모든 군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군사법원이든 민간의 일반법원이든 군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서 처리되는 군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적 접근이 요구됨.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음. 오히려 일반법원에서 군 내부의 위계적 관계나 부대 특성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 감시, 비판이 필요함.

#### 8.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 공적인 권력관계 내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차별적 구조와 그에 중첩된 지위나 연령 등에 따른 권력구조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이 법해석 및 법 적용과정에서 요구됨.
- 시민감시단은 성희롱 법제도 도입 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성인지 관점 없이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고려하여 성적 언동에 대해 판단하거나 징계양정을 경미하게 조정하는 태도에 대해 걸림돌로 선정하며 문제를 제기해왔음.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권 침해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축되는 등 성희롱 관련 법 해석은 어느 정도 안착되었음. 그러나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 등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영역에서는 공적인 권력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성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의 속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적인 권력관계 내에서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소극적이거나 비일관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태도들이 나타남.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걸림돌로 선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관계의 맥락과 차별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수사와 재판 실무에 대해서는 디딤돌로 선정하여 격려 해움.

-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이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로서의 성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성운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C. 절차적 문제

- 절차적 문제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충실히 실행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들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개별 법령에 흠여져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반면, 재판부의 재량 내지는 수사기관에서의 방어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를 소송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절차적 문제의 걸림돌로 선정되었음.
- 이후 형사소송 절차상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등으로 소송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등이 그 내용일 수 있음.

### D. 특별상 선정의 의미

- 특별상 선정 사례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담당자들 이외에 언론을 비롯한 피해자 주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지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별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은 심층보도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짚어내어 이슈화하고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련 법과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신변을 노출하거나 선정적 보도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언론의 양면성이 재확인되었음. 장애인 복지시설의 감추어졌던 인권침해 상황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지원한 내부 직원들, 이웃에 사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한 시민들은 변화를 위한 희망이 되고 있음.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및 실천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앞으로 다양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IV. 결론

- 본 연구는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의 쟁점들을 짚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20년의 시간 속에서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했음. 무엇보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의 눈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모아 자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실천이 바쁜 일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현장과 이론의 환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 향상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기반이 되리라고 봄.
- 다만, 각 쟁점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민감시단이 선정한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담당자들이 실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안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성폭력 관련 법률과 법 해석, 형사사법 절차 및 관행의 개선에 전성협 시민감시단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리한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음. 이후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여성 인권 운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실천적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1) 시민감시단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사례 분석 .....	5
2) 문헌 연구 .....	7
3) 전성협 활동가 FGI 및 전문가 자문 .....	8
II.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와 2차 피해 감시활동 .....	9
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와 내용 .....	9
1) 시민감시단 발족 배경 .....	9
2) 주요 활동 내용 .....	10
(1)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	11
(2) 올해의 여성 인권 존중 디딤돌·걸림돌 선정 및 발표 .....	11
(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분석 .....	12
(4)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	13
(5) 활동가 워크숍 : 수사절차 이해 및 모니터링 연대 방안 .....	15
3) 함께하는 사람들 .....	16
4)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 .....	19
5) 시민감시단 활동의 에피소드 .....	21
2. 향후 성폭력 시민감시단 활동 방향 논의를 위한 물음들 .....	22
1) 시민감시단 활동 의미의 재점검 .....	23
2)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범주 확산 여부 .....	23
3) 디딤돌·걸림돌 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	23
4)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수정·보완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모색 .....	24
5) 시민감시단 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	24
6) 시민감시단 활동 홍보와 법·정책변화 견인 방안 .....	24

7)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 마련 방안 .....	25
<b>III.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 분석 .....</b>	<b>26</b>
<b>A. 쟁점별 분석 .....</b>	<b>26</b>
1.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	26
1) 폭행·협박의 최협의설과 그 변화 .....	26
2) 사례 분석 .....	29
(1) 실질적인 저항행위 없는 최협의설 인정 .....	29
(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판단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의 변화 .....	33
(3) 피해자 저항이 아닌 가해자 행위 중심의 최협의설 판단 .....	34
(4) 2005년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 하급심 판결 및 검찰 처분: 종전 최협의설 유지 .....	35
(5)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 .....	37
2. 양형 .....	38
1) 성범죄 양형기준 .....	38
2) 사례 분석 .....	44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	44
(2) 우발적 범행 감경 .....	46
(3)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감경 .....	47
(4) 공탁 및 기부 감경 .....	49
(5) 피해자 부양 감경 .....	55
(6)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처 .....	57
(7) 2차 피해 야기 가중 .....	60
3. 피해자다움과 진술 신빙성 .....	61
1) ‘피해자다움’의 통념, 강간 신화 .....	61
2) 사례 분석 .....	64
(1) 피해자의 음주 관련 편견 .....	64
(2) 모델, 저항 여부, 신고 시점 관련 편견 .....	65
(3) 피해자 반응에 대한 편견 .....	67
(4) 통념을 깬 사례들 .....	68

4. 역고소 .....	72
1) 역고소의 문제점 .....	72
2) 사례 분석 .....	74
(1)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공익성 인정, 가해자 역고소 남용 지적 .....	74
(2) 가해자의 역고소를 무고로 인정한 사례 .....	77
(3)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무고 인지, 가해자 역고소 인정 사례 .....	78
5. 손해배상 .....	81
1) 성폭력과 손해배상책임 .....	81
2) 사례 분석 .....	82
(1)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단 사례 .....	82
(2)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	85
<b>B. 피해유형별 분석 .....</b>	<b>88</b>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88
1)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변화 .....	88
2) 사례 분석 .....	90
(1) 장애인 성폭력 범죄 수사, 재판의 피해자 보호·지원 .....	92
(2)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	98
(3)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판단 .....	107
(4) ‘위력’의 판단 .....	114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	116
1)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	116
2) 사례 분석 .....	119
(1)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한 강한 처벌 ..	119
(2)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 진술 신빙성 부정 .....	120
3. 친족에 의한 피해 .....	122
1) 친족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	122
2) 사례 분석 .....	125
(1)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	125
(2) ‘사실적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의 일관성’,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	126
(3)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처벌불원 배제하고 친족 성폭력 특수성 고려 .....	127
(4)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 .....	128
(5) 친족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과 친족 관계 내 ‘위력 간음’ 처벌 공백 문제 .....	129
4. 준강간 .....	131
1) 준강간 처벌 규정 .....	131
2) 사례 분석 .....	131
(1) ‘저항했으면 항거불능 아님’ .....	131
(2) 성적 의미로 해석되는 피해자의 행동 .....	133
(3) ‘가장 보통의 준강간’ .....	134
(4)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	136
(5) ‘패싱아웃’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항거불능 인정 .....	137
(6) ‘정상적 상태였다면 동의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140
5. 디지털 성폭력 .....	140
1) 디지털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보호법의 .....	140
2) 사례 분석 .....	144
(1)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소한 법 해석 및 양형 .....	144
(2) 디지털 성폭력 속성에 대한 이해 없는 형사절차 진행과 2차 피해 .....	147
(3)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에 기반한 형사절차 진행 격려 .....	149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	153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	153
2) 사례 분석 .....	155
(1)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아내 성폭력 인정 .....	155
(2) ‘강제된 동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이해와 무지 .....	157
(3) ‘외도 때문에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냐’ 아내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 불인정 .....	158
7. 군 성폭력 .....	159
1) 군 성폭력 사건의 특성,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	160

2) 사례 분석 .....	161
(1) 적극적 판단 사례, 균형법상 추행죄 위헌성 인정 사례 .....	161
(2)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처리 사례 .....	163
(3) 부당한 무죄 판결 사례 .....	166
8.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	167
1)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	168
(1) 평등권 침해로서 성희롱 .....	168
(2)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	171
2) 사례 분석 .....	172
(1) 성적 언동에 대한 협소한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 .....	172
(2) 성희롱 행위를 사소하게 판단하는 법적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 .....	173
(3) 평등권 침해인 성희롱 판단기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	174
(4)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대응 .....	177
(5) 권력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는 법 적용 문제 제기 .....	178
(6)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법 적용 사례 .....	180
(7)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사례 .....	182
<b>C. 절차적 문제 분석 .....</b>	<b>183</b>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183
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고려 .....	183
2) 성폭력 범죄 전담부 .....	184
3) 인적 지원 .....	184
(1) 신뢰관계인 .....	184
(2) 피해자 변호사 .....	184
(3) 증인지원관 .....	186
(4) 진술조력인 .....	186
4) 개인정보 보호 .....	187
5)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	188
6)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보호 .....	188
7) 신변안전조치 .....	190

2. 절차적 문제 사례 분석 .....	190
1) 걸림돌 사례 분석 .....	190
(1)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미이행 .....	191
(2) ‘가해자 옆좌석에, 가해자를 대면하도록, 주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도록’,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	192
(3) ‘그게 말이 되나요’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 .....	194
(4)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공판절차 상 공개주의 거부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문제 .....	195
(5)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인지 기소와 역고소 수사 .....	196
(6) 범행 장면 재연, 합의 종용, 추가적인 성폭력까지 다양한 2차 피해 문제 .....	197
2) 디딤돌 사례 분석 .....	199
(1)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활용 .....	200
(2) 피해자 특성 이해와 지원단체와의 연계 방안 확보 노력 .....	202
(3)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과정 .....	203
(4) 적용범죄에 대한 넓은 해석과 공소 유지 .....	204
(5) 소송지휘권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205
<b>D. 특별상 선정의 의미 .....</b>	<b>207</b>
1. 특별상 선정이유 .....	207
2. 특별상 선정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	208
1) 언론보도의 기여와 2차 피해의 양면 .....	208
(1) 심층보도를 통한 이슈화와 관련 법·정책 견인 .....	208
(2) 피해자의 신변노출, 선정적 보도 등으로 2차 피해 야기 .....	209
2) 장애인 시설의 직원 및 단체활동가의 아주 특별한 용기 .....	210
3) 경찰의 낮은 인권 감수성 및 범죄자와의 조직적인 유착관계 .....	210
4) 대학의 피해자 구제에 능장 대응 및 대학 자율권을 앞세운 가해자 옹호 ...	211
5) 지침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요원하게 한 법원행정 .....	212
6)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결정 및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노력	212
7)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한 시민들 .....	212

IV. 결론 .....	214
1. 쟁점별 분석에서 도출된 과제 .....	214
2. 피해유형별 쟁점과 과제 .....	217
3.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224
〈참고문헌〉 .....	227
〈부록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현황(2004~2023) .....	243
〈부록 2〉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 활동 .....	277
〈부록 3〉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형사 절차상 2차 피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280
〈부록 4〉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권리 현장 & 보호자의 권리 .....	286
〈부록 5〉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성폭력 피해자 권리 현장 .....	289
〈부록 6〉 전성협(202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연구,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토론회 안내문과 토론문 .....	291
〈부록 7〉 연대자D(2024), 형사재판 1심 체크리스트 .....	319
〈부록 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상담소 명단 (132개소) .....	331

# 표 목 차

〈표 1〉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현황(2004~2023) .....	6
〈표 2〉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역대 심사위원 명단 .....	16
〈표 3〉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사무국 운영현황 .....	18
〈표 4〉 시민감시단 예산 .....	20
〈표 5〉 성범죄 양형인자와 양형요소(종합) .....	38
〈표 6〉 성범죄 주요 양형인자의 정의 .....	39
〈표 7〉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40
〈표 8〉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와 양형요소(종합) .....	42
〈표 9〉 디지털 성범죄 주요 양형인자의 정의(종합) .....	43
〈표 10〉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종합) .....	43
〈표 11〉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의 변화 .....	91
〈표 12〉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근거 및 내용 .....	116
〈표 13〉 성폭력 처벌법상 친족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내용 .....	123
〈표 14〉 디지털 성범죄 개정 사항 .....	143
〈표 15〉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 .....	159
〈표 16〉 절차적 문제 걸림돌 사례 세부 분류 .....	191
〈표 17〉 절차적 문제 디딤돌 사례 세부 분류 .....	200
〈표 18〉 역대 특별상 선정 현황 .....	207

# I. 서론

## 1. 연구 배경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와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여성 인권운동단체 활동이 이러한 사회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왔다.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문을 열고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65개의 성폭력상담소가 활동하고 있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공감과 지지를 해왔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998년에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평생 고통을 겪을 불쌍한 여성"이 아니라, 부당하게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할 권리를 갖는 존엄한 존재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의 법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성폭력을 다루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다. 당시 여성 인권단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째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신상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보완 조치가 도입되었다. 대전 연쇄 성폭력범 이중구 사건(2005), 미성년자 연쇄 성폭력범 김근식 사건(2006), 용산 어린이 성폭력·살해범 김장호 사건(2006), 조두순 사건(2008), 김수철 사건(2010), 김길태 사건(2010), 고종석 사건(2012)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이후 국회와 정부는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과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 인권단체에서는 '처벌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전담 경찰·검찰·재판부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 처벌 가능성을 무력화하고 2차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친고죄도 2013년에 폐지되고, 미성년자 성폭력의 공소시효

도 폐지되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던 위력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 스쿨미투, 사이버 성폭력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지난 3~40년 동안 성폭력 관련 법·제도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아직도 많고, 법과 현실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 피고인 측 변호인 등으로부터, 그리고 직장, 학교, 지역사회 내 가까운 동료나 주변인들,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만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10,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sup>1)</sup>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응답자의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46.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39.7%는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신고율은 과거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간 및 강간미수 신고율은 각각 1.8%와 1.9%<sup>2)</sup>였다.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2.6%<sup>3)</sup>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다만 이 조사는 강간, 강간미수 외의 성추행, 성기노출, 불법 촬영 등 6개 범주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에서 신고한 사람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전 연구 수치와의 단순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낮은 신고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반성폭력 법·정책과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비판하는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집중 보도, 국회의원의 관련 법 발의, 학자들의 학술논문 발표 등 여러 반응들이 나타난다. 또한 UN과 유럽연합의 지침들도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

---

1)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57쪽.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90쪽.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로는 처음 시도된 본 연구는 총 2,27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3)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97쪽. 이 연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 3년 수행되는 조사로, 2007, 2010, 2013, 2016, 2019년에 이어 6번째의 실태조사이다.

직접 상담하고 지원하는 여성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연대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의 반성폭력 운동은 1990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된 성폭력상담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sup>4)</sup>를 결성하여 연대 활동을 본격화했다. 전성협의 설립목적은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sup>5)</sup> 전성협은 2004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을 발족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시·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감시 활동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반시민들이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도이다.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무시되거나 묻혀버릴 수 있었던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실제 피해자의 권리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법과 제도, 관행,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활동에서 나온 목소리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이를 다시 운동으로 환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민감시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매년 전국의 각 상담소에서 추천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올해의

---

4) 2001년 협의회 발족 당시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독립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되었다.

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관 제3조(목적)의 내용이다.

여성인권보장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명단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공문으로 전달되며, 언론에도 보도 요청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부터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응원 받기도 하고, '걸림돌'로 선정된 수사·재판담당자로부터 다양한 항의를 받기도 한다. 작년에는 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역대 디딤돌·걸림돌 명단을 모두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20년 동안 여성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꾸준한 형사사법 절차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기관들의 인식과 태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출발한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성협 시민감시단의 20년간의 활동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둘째, 국회 및 정부에 2차 피해 없는 수사·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실증적인 근거와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중한 운동자료로 축적하여 현장과 이론의 환류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현장 활동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운동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은 지난 20년간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한 후,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를 분석한다. 이 사례는 쟁점별, 피해유형별, 절차적 문제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004년 시민감시단 출범 당시에는 2차 피해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3년 법무부 용역과제<sup>6)</sup>에서 2차 피해를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차 피해의 법적 규정은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의 3)」에 (1)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 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3)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되

6)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40쪽.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폭력 2차 피해 중 경찰, 검찰, 재판부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절차상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현행 '강간죄'의 규정과 같이 법적 한계로 인한 것까지를 포함한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1) 시민감시단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시민감시단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발표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특별상' 총 30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통계는 매년 시민감시단에서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분류가 다소 애매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선정사례의 숫자를 일부 조정했다.

- 한 사건으로 재판부, 검사, 경찰이 공동 수상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예: 2005년 디딤돌 6번, 2009년 걸림돌 2번, 2012년 디딤돌 11번, 2016년 걸림돌 1번, 2020년 디딤돌 9번).
- 한 사건에 심급이 다른 재판부나 검찰이 공동 선정되었을 경우 각각 분리(예: 2004년 걸림돌 2번, 2009년 걸림돌 1번, 2016년 걸림돌 2번).
- 기자가 걸림돌이나 특별걸림돌로 선정된 경우(예: 2011년 걸림돌 7번, 2012년 특별걸림돌 2번)와 경찰이 특별걸림돌로 선정된 경우(예: 2012년 특별걸림돌 1번, 2019년 특별걸림돌 1번)는 특별상으로 이동.
- 같은 해에 다른 사건으로 중복 수상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예: 2009년 디딤돌 1, 2번, 2020년 걸림돌 4, 5번).

<표 1>에서 보듯이, 지난 20년 동안 총 307건의 디딤돌·걸림돌·특별상이 선정되었다. 이중

디딤돌이 157건이고, 걸림돌은 126건, 특별상은 24건이다.

〈표 1〉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현황(2004~2023)

(단위: 건)

연도	디딤돌					걸림돌				특별상			총계
	판사	검사	경찰	기타	소계	판사	검사	경찰	소계	디딤돌	걸림돌	소계	
2004	3	-	1	-	4	4	4	1	9	-	-	-	13
2005	4	1	2	-	7	5	1	-	6	-	-	-	13
2006	4	-	2	-	6	3	-	1	4	-	-	-	10
2007	3	1	2	1	7	7	-	-	7	-	-	-	14
2008	4	1	2	-	7	5	1	-	6	-	-	-	13
2009	5	1	2	-	8	5	1	-	6	1	-	1	15
2010	2	3	1	-	6	4	1	-	5	2	-	2	13
2011	5	2	-	-	7	4	1	1	6	2	1	3	16
2012	4	6	3	-	13	1	1	-	2	1	2	3	18
2013	2	1	4	-	7	2	3	1	6	2	-	2	15
2014	6	1	3	-	10	5	1	-	6	-	-	-	16
2015	1	3	5	-	9	4	-	1	5	1	-	1	15
2016	1	1	4	-	6	6	1	-	7	-	1	1	14
2017	3	1	2	-	6	2	6	2	10	-	1	1	17
2018	4	1	2	-	7	2	1	-	3	-	-	-	10
2019	8	1	-	-	9	10	5	1	16	-	1	1	26
2020	7	1	3	-	11	7	4	1	12	-	1	1	24
2021	5	-	1	-	6	2	1	-	3	2	1	3	12
2022	5	1	5	-	11	1	-	-	1	2	-	2	14
2023	7	-	3	-	10	3	1	2	6	2	1	3	19
총계	83	26	47	1	157	82	33	11	126	15	9	24	307

디딤돌의 경우, 판사(83건), 경찰(47건), 검사(26건), 기타(1건) 순이고, 걸림돌은 판사(82건), 검사(33건), 경찰(11건) 순이다. 디딤돌과 걸림돌 모두 판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현상은 제대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은 수사 과정에 비해 재판부는 방청이 가능하고, 판결문이 확실하게 남아있어서 상대적으로 추천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통계를 기반으

로 어느 분야가 가장 인권 감수성이 높거나 낮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담당자를 걸림돌로 추천할 경우, 이후 피해자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들도 있다. 2011년부터 도입한 특별상은 지금까지 총 24건으로 디딤돌이 15건, 걸림돌이 9건이며, 이중 언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디딤돌·걸림돌 선정은 2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5건 정도였으나, 2019년에는 26건, 2020년에는 24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8년 #미투의 시기를 거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각 상담소에 상담사례가 증가<sup>7)</sup> 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분석을 위해 모든 디딤돌·걸림돌과 특별상 사례를 경찰, 검찰, 재판부별로 나누어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디딤돌·걸림돌 선정이유가 실제적인지 절차적인지를 분류한 후, 각 사례별 키워드를 코딩하면서 사례들에서 두드러지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쟁점을 뽑아냈다. 주요 쟁점으로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양형, 피해자다움과 진술 신빙성, 역고소, 손해배상 등 5개로 분류했다. 피해유형별로 유의미한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 장애인, 아동·청소년, 친족, 준강간, 디지털 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군 성폭력,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한 사례에서도 여러 키워드가 중복적으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쟁점별 분석과 피해유형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례들이 중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자체가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분류체계가 달라서 일부 중복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절차적으로 현행 법제도 안에서 피해자 권리로 규정된 내용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각 시기별 주요 사건과 법·정책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역동적인 변화 과정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로 남아있는 디딤돌·걸림돌 선정이유 분석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2) 문헌 연구

---

7)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에 158,188건, 2016년에 158,029건이었다가 2018년에 241,343건, 2019년에 276,122건으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이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최협의설, 피해자다움, 역고소 등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다룬 다양한 토론회 및 학술자료를 참고하였다.

### 3) 전성협 활동가 FGI 및 전문가 자문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2일에 전·현직 활동가를 6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FGI는 전성협의 역대 대표단이 었거나, 전·현 시민감시단 실무진들이 참여했고, 활동 당시 시민감시단의 주요 쟁점이나, 활동 내용, 함께한 사람들, 예산 규모, 주요 에피소드 등을 공유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의 적정성, 자료 분석, 그리고 주요 쟁점 정리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11월 27일에 실시했다. 자문회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관련 법·정책 전문가 및 연구진 8명이 참여해 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서면 자문받기도 했다. 수렴된 자문의견은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II.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와 2차 피해 감시활동

### 1.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의 취지와 내용

#### 1) 시민감시단 발족 배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은 2004년 10월에 출발했다. 당시 우리 사회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시행에 이어 성희롱 관련법(1999), 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 등의 법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변화해가고 있었다. 더욱이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어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여성 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 권리도 두텁게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여성 인권단체들에서는 잘못된 통념에 의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2003년부터 공개적인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2004년에는 10여 명의 여성들을 성폭력 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한 유명철이 검거되고 수많은 언론의 “왜 죽였느냐”는 질문에 “보도방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러서”라는 대답이 여과 없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여성 인권단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사회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여성들에게 안전한 밤길을 보장하라는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 등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제도의 마련이 가져온 변화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전성협 차원에서 2003년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원하던 “신부에 의한 유아 성추행 사건”도 결국 불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 어린이들이 경찰에서 했던 첫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서 실시된 2차 진술 녹화는 질문자가 유도신문을 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지역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실시한 3차 진술 녹화는 어린이들이 판에 박힌 듯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일상을 중단한 채

경찰서, 검찰청, 병원을 오가야 했다. 한 피해자의 부모는 생업으로 하던 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시달림을 받았다. 2003년 4월에 첫 상담이 의뢰된 이래 5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가 그해 6월에 전국으로 공동대책위를 확대했다.<sup>8)</sup> 이 사건지원을 하면서 전성협에서는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고소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전성협 제8차 운영위원회(9월 22일)에서 그동안의 개별 상담소 차원을 넘어 전국의 상담소들이 조직적으로 2차 피해에 대응해갈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가기로 하였다.<sup>9)</sup>

2004년 10월 13일에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했다. 당일 모든 참석자들이 성폭력 피해로 희생당한 어린이를 위한 묵념과 헌화를 한 후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에는 활동가 및 의사, 검사, 학자들이 함께하여 각 분야에서 의 문제 현황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을 펼쳐갔다. 이어서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하며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권리 현장”이 채택되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공유 및 이후 활동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감시단장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전성협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사무국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맡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은 법을 적용·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남성중심적이며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폭력에 대한 입법 채택은 물론,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그리고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하고<sup>10)</sup> 전국의 상담소들이 연대하여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 2) 주요 활동 내용

8) 이재희,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며”,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토론회 자료집(2004. 10. 13), 107쪽.

9)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5), 「2005년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2005. 2. 22), 8쪽.

10)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 활동” 내용 중(부록 2 참조).

## (1)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시민감시단의 기본 사업은 각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피해를 감시하는 활동이다. 사건 지원자는 경·검찰에서의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비공개 재판 때에도 1997년 성폭력특별법 개정 시 도입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곁에서 재판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각 절차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감시 역할을 하였다. 시민감시단에서는 이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크리스트<sup>11)</sup>를 마련해 배포하였다.

각 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들은 연말에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로 추천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은 시민감시단의 주요 활동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별히 2005년에 법무부 여성정책과에서 본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검찰청 차원에서의 수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는 성과가 있었다.<sup>12)</sup>

이와 같은 수사·재판과정의 모니터링은 시민감시단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대자 D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혼자 전국의 법원과 수사기관을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뒤를, 때로는 옆을 지키면서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한다...(중략)... 이제는 전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을 감시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대로 넓혀가고자 한다”<sup>13)</sup>고 밝히며 모니터링 결과를 SNS에 올려 공유하고 방청연대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시작된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의 방청연대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는 전국의 피해자와 지원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연대해서 형사사법 절차를 감시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가고 있다.

## (2) 올해의 여성 인권 존중 디딤돌·걸림돌 선정 및 발표

11)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형사절차상 2차피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부록 3 참조)

12) 이미경(2008),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활동 평가(2004~2007)”, 「2008년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2008.2.22), 5-8쪽.

13) D(2022),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피해자에서 생존자, 그리고 감시자가 된 마녀 D의 사법 연대기」, 동녘.

시민감시단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의 각 상담소에서의 형사사법 절차의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한 「올해의 여성인권 보장의 디딤돌·걸림돌」을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추천은 사무국에서 수시로 받고 있으나 주로 연말에 종합적으로 모여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 디딤돌과 걸림돌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디딤돌의 경우,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 피해자 인권 존중의 유의미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경찰, 검찰, 재판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형사사법 절차상 담당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사안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때로는 이행의 맥락이나 정도에 따라서 디딤돌로 선정하기도 했다.

걸림돌은 법에 마련된 피해자 권리보장의 기본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관행이나 관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찰, 검찰, 재판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별상은, 직접적인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줄 정도로 기여를 했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 언론, 기관, 개인들이다.

시민감시단에서는 디딤돌이나 걸림돌의 선정 건수는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으며, 해마다 추천 건수가 유동적이다(부록 1) 참조). 어떤 해에는 디딤돌, 걸림돌이 각 10여 건을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4~5건에 머물기도 한다. 각 지역상담소에서 추천한 사례들은 선정위에서 검토 후 선정하되, 기존 수상 내용과 중복된 유형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의 추천 건 선정률을 보면, 2022년에는 총 19건 추천에 14건 선정, 2023년도 심사에서는 총 24건 추천에 19건 선정으로 비교적 높은 선정률을 보이고 있다.

### (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분석

시민감시단의 초기 활동 계획은 연말의 걸림돌, 디딤돌 심사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수시로 인권침해 사안을 접수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동 대응을 해 가는 것이었다. 첫해에는 시민감시단 발족 이후 3개월간 접수받은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그중 시민감시단에서 지원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현지 방문 조사 및 지역의 지원단체 면담, 피해자와 부모 면담, 진술서 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총분석 사례는 7건으로 특수강간 2건, 강간치상과 카메라 이용 촬영 1건, 13세 미만 성추행 및 사이버 명예훼손

1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3건이었다.

사례 분석 결과, 주요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위협적인 대질 조사과정과 신변안전 조치 소홀, 장시간 조사 및 중복된 질문, 반복적인 진술 요구, 피해자 비난 및 피해자 유책성 발언, 그리고 피해자 불신과 사건에 대한 경시 등이었다.<sup>14)</sup> 그리고 2차 피해의 요인으로 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성의식과 여성관, 법을 적용·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 남성중심성에 뿌리를 둔 시각과 태도를 문제로 분석했다.<sup>15)</sup>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 채택은 물론, 시행 및 적용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수사 담당자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sup>16)</sup>

그러나 아쉽게도 이와 같은 수사 접수 및 분석 발표는 1회에 그쳤다. 이와 같은 활동은 사무국에 전담 간사 1인이 연구 실무를 담당했기에 가능했는데, 2004년 당시 94개 회원단체가 연회비 3만 원씩 내어 운영하는 협의체<sup>17)</sup>로서는 지속적인 재정 마련이 쉽지 않았다. 첫째 시민감시단 활동은 고 최진실 배우의 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시민감시단 공동단장이었던 강지원 변호사가 최배우의 개인 소송 수입료를 “나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라며 한사코 거절하며 기부처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해 준 것이다. 마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민감시단의 사무국을 맡고 있어 이 기금을 전성협으로 연계해 시민감시단 활동의 마중물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반상근 형태의 시민감시단 간사는 예산 고갈로 8개월 반 정도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것으로만 활동이 이어졌다.

전성협은 2024년 시민감시단 발족 20주년을 맞아, 디딤돌·걸림돌·특별상으로 선정된 총 307개의 사례를 분석·연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4)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

14) 권수현(2005),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분석”, 「2005년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2005.2.22), 38-65쪽.

15) 전성협 시민감시단(2005), 위자료집, 63쪽.

16) 전성협 시민감시단(2005), 위자료집, 64쪽.

17) 전성협은 이듬해인 2005년부터 회비 납부액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10만 원(79개소), 7만 원(3개소), 5만 원(31개소), 3만 원(2개소)으로 차등 조정하여 총회비 수입은 약 950만 원 정도였다. (2006년 전성협 총회자료집 36쪽 참조)

시민감시단의 첫 활동은 2004년 10월에 출범 후 두 달 만인 12월부터 시작한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이었다. 이 사건은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1년 동안 집단성폭력 한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로 다뤄졌다. 경찰이 기자 브리핑에서 실수로 상부 보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바람에 언론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고, 수사 경찰이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려놓았다”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44명의 가해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누가 강간을 몇 번 했는지, 누구는 망만 봤는지를 면전에서 골라내라고 하는 등 무려 9가지나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청소년보호 활동해오던 강지원 변호사에게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시민감시단에서도 이 사건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사건지원을 함께하기로 하고 12월 15일에 시민감시단의 공동단장과 사무국장이 함께 울산으로 가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2차 피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해당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방문해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울산지역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사건지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료지원, 학교 전학 등을 직접 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믿고 고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9가지의 2차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강지원 변호사와 전성협 시민감시단에서 지원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sup>18)</sup>를 남기게 되었다.

2006년에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6개의 사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 시민감시단에서 동참하여 인지대 납부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연대활동을 했다. 이 사건은 조사 시간 지연,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현장 조사 소홀과 추가 고소 접수 거부, 진술 녹화 1회 본 삭제 및 3회에 걸친 진술 녹화,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안내 부재 등의 다양한 2차 피해에 대한 소송이었다.<sup>19)</sup> 이 소송에서 법원은 1회 진술 녹화본을 삭제한 경찰의 책임만 인정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 어린이에게 300만 원, 어머니에게 2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의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sup>20)</sup>

---

1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19)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22-124쪽.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

(5) 활동가 워크숍 : 수사절차 이해 및 모니터링 연대 방안<sup>21)</sup>

시민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2022년 전성협 제3차 운영위원회(9/22)와 2023년 전성협 정기총회(1/31)에서는 시민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성협 시민감시단 활동이 디딤돌·걸림돌 추천 및 선정 발표 이외의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추천도 몇 개 상담소에서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의 상담소에서는 참여가 없는 상황이며, 추천되는 사례들도 거의 재판부의 판결에 집중되고 있어 원래 취지인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활동가들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전성협 정책대응팀에서 2021년에 전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sup>22)</sup> 당시 토론자로 초대된 연대자 D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반목 이유를 분석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모니터링 일지를 어떻게 확산할지 고민을 나눴다. 정책대응팀의 토론회 평가 회의에서 “활동가들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를 목격하는 사람이자, 디딤돌·걸림돌을 추천하고 선정하고 발표하는 주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성협을 통해 모니터링 일지 확산 방안을 대표단에 제안했다.<sup>23)</sup>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전성협은 수사절차 이해 및 모니터링 연대 방안을 주제로 2022년과 2023년에 전성협 정기워크숍을 주최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수사절차의 이해가 필요했다. 전성협에서는 사법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자 D를 강사로 전국활동가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첫해인 2022년 6월 20일에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131개소 상담소 중 111개소에서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내용은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절차 알아보기, 형사재판 절차 및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실제 사례 중심 설명하기로 이루어졌다.

---

고 2007나91307 판결.

2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2, 2023), 「제22차 정기총회자료집」, 44쪽, 80-81쪽 ; 「제23차 정기총회자료집」, 83-84쪽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임.

2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2), 「제22차 정기총회자료집」, 52쪽.

23) 활동가 FGI 참여자의 발언 내용임.

2023년 정기워크숍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를 위한 수사·법적 지원 연대의 실천 기술”을 주제로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본과정은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연대자 D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전성협 소속 상담소 136개소 중 134개소 활동가 611명이 참여하였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심화 과정은 6월 20일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좌로 136개소 중 118개 상담소에서 304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활동가들은 “수사·법적 조력자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각각 98.9%(2022년), 98.7%(2023년 기본과정), 89.3%(2023년 심화 과정)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년 동안의 워크숍을 통해 활동가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보와 경로를 풍부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3) 함께하는 사람들

시민감시단 활동은 전국의 각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형사사법 절차를 선택한 피해자를 지원하며 2차 피해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디딤돌과 걸림돌 추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가 이 활동의 주체이다. 다만,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노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역대 심사위원의 명단은 <표 2>와 같다.

**<표 2>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역대 심사위원 명단(참여 연도순)**

이름	소속*	시기
강지원	시민감시단장, 변호사	2004~2020
신윤진	법조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 지원팀	2004~2007
이경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004~현재
이미경	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004~현재
토리	시민감시단 간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8
김정숙	전성협 상임대표, 평택성폭력상담소장	2008~2010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2008~2010/2013

양해경	전성협 상임대표, 용인성폭력상담소장	2008~2011
이윤상	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8~2011
김덕현	변호사	2009~2010
조인섭	변호사	2009~2019
이재희	시민감시단장,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2010~ 2011
문빈	시민감시단 간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2010
이현숙	시민감시단장,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2011~ 2013
정은자	전성협 공동대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2011~2012
이선경	변호사	2012~2015
김미순	시민감시단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2012~2019
조종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2012~2021
장임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현재
황지영	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장	2014~2017
배복주	시민감시단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2015/2018~2019
김해정	전성협 공동대표, 목포여성상담센터 소장	2016~2019
김경숙	시민감시단장,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2021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2019~2021
김혜란	시민감시단장,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2021~현재
권지현	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2022~현재
연대자D	생존자, 사법감시 활동가	2023~현재

\* 소속은 당해 연도의 소속이며,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는 현재 소속임.  
(2004~2007년, 2014년~2019년까지의 심사위원 명단은 기록·보관되지 않음)

시민감시단 사무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걸림돌, 디딤돌 추천 안내를 공지하고, 추천서류를 받아 취합하여 연말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마련해 각 보도기관에 송부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한다. 또한 전성협 총회의 시상식에 수상자들의 참여 요청 및 상패와 꽃다발 준비 등의 실무를 한다. 그리고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운영에 필요시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사무국 운영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사무국 운영현황**

단체	기간	시기	(공동)단장/ 심사위원장	집행부 책임자/담당자
한국성폭력상담소	7년	2004.10~2008.01	강지원, 이미경	(정유석, 오매, 자주)* 권수현, 토리, 임송이
		2008.02~2011.01	이윤상, 강지원, 김덕현**	이선영, 문빈, 이예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1년	2011.02~2012.01	이재희, 강지원	조종신, 이경란
		2012.02~2014.01***	이현숙, 강지원	
		2014.02~2018.01	김미순, 강지원	
		2018.02~2020.01	배복주, 강지원	박윤숙, 이슬, 박진
		2020.02~2021.01	김경숙, 강지원	
2021.02~2022.01	김경숙, 이미경			
전주성폭력상담소	2년	2022.02~현재****	김혜란, 이미경	권지현, 양보름

\* 시민감시단의 출범에 기여한 활동가들

\*\* 2009년에는 공동심사위원장으로 강지원, 김덕현

\*\*\* 2012년부터는 전성협 상임대표가 시민감시단장을 겸하기로 함

\*\*\*\* 2022년부터는 시민감시단 공동단장 제도 도입

시민감시단 사무국 운영은 지금까지 3개 상담소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초기에 사무국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법정지원팀’<sup>24)</sup>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1997)」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사업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보고서 :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2003)」<sup>25)</sup>와 법무부의 연구용역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2003)」<sup>26)</sup> 등을 수행하면서 모니터링을

24)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로 구성된 연구 활동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정지원모임(법지모)’으로 공판 모니터링 및 기록, 성폭력 이슈 관련 스터디, 성폭력 관련 법률지침서 제작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00년대에 이를 재정비해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공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공판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현행제도를 조사해 대안적인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형사 절차상 2차 피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법정지원팀은 도영오, 신윤진, 임유경, 정다운, 정유석, 이경환, 황지영 등이 함께했다.

25)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보고서 :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 (\* 공동연구원: 도영오, 신윤진, 임유경, 정다운, 정유석, 이경환, 황지영)

26)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 (\* 책임연구원: 장필화, 공동연구원: 김정희,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 개 상담소만이 아니라,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연대하여 할 수 있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전성협에 제안했다. 시민감시단 발족 이후 7년 동안 사무국을 맡았다.

이어서 2011년부터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11년 동안 사무국 업무를 맡았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전성협에 의뢰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맡아 수행해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피해자 지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변호인을 연계하면서 의미 있는 걸림돌, 디딤돌 담당자를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이처럼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무료법률지원 사업과 시민감시단 사업을 연결해 사무국 업무를 진행해왔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초기의 몇 배로 확장되면서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다른 상담소로 사무국을 이전할 것을 전성협에 제안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까지 전주성폭력상담소에서 세 번째로 사무국을 맡아서 진행 중이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전성협 공동대표단의 일원이기도 하고, 온라인 시대를 맞아 지역에 위치한다고 해서 소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시민감시단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시민감시단 20주년을 맞아 이번 연구사업의 실무도 맡고 있다.

이처럼 시민감시단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고에 힘입어 20년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 특히 디딤돌·걸림돌 사례들을 추천받고 정리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된 내용을 다듬어 보도자료를 보내고, 시상식 진행 및 사후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고에 힘입어 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

#### 4)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

시민감시단은 <표 4>에서 보듯이 매우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기관의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나듯이 여성 인권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에는 따로 기부금이 있어서 반상근 활동가가 합류해 활동의 내용과 폭을 넓힐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연간 1회 심사비 및 총회에서의 시상식 비용으로 최소금액인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에서 지난 20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2024년에는 특별히 시민감시단 20주년을 맞이하여 전성협 예산에서 500만 원을

---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종신)

배정해 연구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성주재단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700만 원을 지원받아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연구자료의 공유 및 국회의원 대상 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시민감시단 예산

(단위 : 원)

연도	지출	내역
2004 (10월~12월)	3,468,950	- 사건지원 활동비(429,450) - 담당 간사 인건비(2,000,000) - 컴퓨터 구입(1,039,500) * 배우 최진실 님의 특별 후원기금(14,000,000)
2005	8,072,070	국가손해배상 소송 인지대(1,500,000) 밀양 사건지원/해바라기 부모 모임 등(720,070) 담당 간사 인건비(6,500,000)
2006	1,200,000	디딤돌·걸림돌 심사회의 식비, 시상식
2007	1,000,000	디딤돌·걸림돌 심사회의 식비, 시상식
2008	1,000,000	디딤돌·걸림돌 심사회의 식비, 시상식
2009	2,500,000	- 디딤돌·걸림돌 심사회의 식비, 시상식
2010	1,500,000	- 디딤돌·걸림돌 심사회의 식비, 시상식
2011	1,5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2	2,0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3	2,0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4	2,0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5	2,0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6	2,8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 권역 시민감시단 활동비 (600,000)
2017	2,2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8	2,200,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19	404,6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20	2,358,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21	2,383,000	심사회의비, 상패, 꽃다발, 사무비, 간사 활동비
2022	2,419,000	일상 운영비, 권역 시민감시단 활동비(219,000)
2023	2,273,100	일상 운영비, 권역 시민감시단 활동비(73,100)
2024	14,800,000	일상 운영비, 연구비, 토론회 개최비 * 전성협 자체 예산(2,800,000) * 전성협 시민감시단 연구비 특별예산(5,000,000) * 성주재단 공모사업 선정(7,000,000)
합계	60,078,720	

## 5) 시민감시단 활동의 에피소드

시민감시단 활동에는 늘 다양한 이야기와 가슴 뭉클함이 함께 있다. 먼저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의 진정 어린 수상소감은 단연 감동적이다. 수사·재판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면서 “이 상을 계기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은 든든함과 함께 내일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그리고 수상자 가족이나 동료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주는 따뜻한 장면들은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디딤돌상을 받은 한 검사실에 방문해보니 책꽂이의 가장 한가운데 시민감시단 디딤돌 상패가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불상의 범인을 추적·검거하는 것부터 범인의 영상물을 압수하고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 피해 이전의 자기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도움 줄 것을 다짐하게 됐다”(디딤돌 경찰)**

**“여러분의 활동이 우리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 교육을 하고 계신다.”(디딤돌 판사)**

**“제가 받은 상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에요!”(디딤돌 검사)**

시민감시단 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각 기관에서 감시단의 발표 시기나 디딤돌·걸림돌 명단을 문의하기도 한다. 2023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역대 수상자 명단을 요청해 와서 그동안의 자료를 공문으로 송부하기도 했다.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발표 전이면 관계 기관에서 미리 명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곤 한다.. 부언을 붙이기를 자료를 통해 수사 담당자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공식 발표 후에 공문으로 보내드린다고 답했다. 특히 2차 피해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더 우리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다”<sup>27)</sup>**

한편, 걸림돌에 선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에는 걸림돌에 선정된 판사의 지인이 전화해서 “다른 재판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만

---

27) 활동가 FGI 참여자의 공유 내용.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라며 항의한 적도 있었다. 당시 우리 감시단에서는 그 1%에 해당된 피해자에게는 이 재판 결과가 고통과 분노, 사회정의에 대한 불신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했었다. 이 밖에도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는 일도 있었다.

“걸림돌 재판부 직원이 시민감시단 집행부에 전화해 ‘걸림돌’이라는 이름이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자문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재판은 (판사)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명예훼손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화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하시라고 했다.”<sup>28)</sup>

걸림돌로 선정된 한 담당자는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었다”라며 법적 한계를 짚으며 너무 억울해하는 경우<sup>29)</sup>도 있었다. 우리들의 모니터링과 비판이 전혀 메아리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속을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는 순간들도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단순히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향후 성폭력 시민감시단 활동 방향 논의를 위한 물음들

시민감시단 활동은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 사이에서 “시민감시단 활동이 가장 의미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동할 바에야 아예 감시단 활동을 접는 것이 낫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럼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이 활동을 이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활동가들이 이 사업에 대한 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시민감시단 활동의 의미를 활동의 필요성 재점검을 시작으로 활동 방향,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보완, 시민과 상담소 활동가들의 참여 확산 방안, 외부 홍보방식이나 활동의 영향력 확산 방안 등을 촘촘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은 앞으로 전성협 회원들이 시민감시단 운동 방향을 논의해가는데 함께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 물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8) 활동가 FGI 참여자의 회고.

29) 활동가 FGI 참여자의 공유 내용.

### 1) 시민감시단 활동 의미의 재점검

- 시민감시단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 20년 전 시작한 시민감시단 활동이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 전성협 이외 다른 단체에서도 재판부나 대법원 디딤돌 판결 추천이 많아지고, 여성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개인 차원에서도 사법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활동가들의 추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바빠서 그런 것인지, 수사 과정 배석이나 모니터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의 점검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전성협 시민감시단이 국가권력 감시 및 수사·재판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 2)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범주 확산 여부

-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사회·문화 속에서 이미 전성협의 각 상담소 중 가정폭력상담을 병행하는 통합상담소도 있다. 그리고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들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성폭력 사안만을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 범주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 또한 시민감시단에 디딤돌·걸림돌 추천을 전성협 소속 단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면 성매매나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등 다른 현장들을 연결할 부분도 넓어지지 않을까? 최근에는 지원체계도 어린이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 각 종교 내 성폭력 등으로 분화되어 전성협에는 속하지 않아 선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sup>30)</sup>

### 3) 디딤돌·걸림돌 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수사·재판 담당자들을 걸림돌로 선정할 경우 갖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시민감시단의 평가와 피드백이 결과적으로 이후 피해자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

30) 활동가 FGI 참여자의 제안 내용.

있다는 염려 등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4)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수정·보완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모색

- 수사·재판 모니터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 2022년, 2023년에 실시한 전국활동가 워크숍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수사절차 알아보기’, ‘형사재판절차 및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활동가를 위한 수사·법적 지원 연대의 실전 기술’ 등의 주제로 배우고 논의했던 결과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 5) 시민감시단 활동 참여자 확대 방안

- 전국 각 지역의 최일선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있는 전성협 활동가들이 시민감시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상담소 활동가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전성협 시민감시단 창구를 활용해 좀 더 촘촘하게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6) 시민감시단 활동 홍보와 법·정책변화 견인 방안

- 전성협의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을까? 특히 요즘은 개인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SNS 계정을 만들거나 숏츠를 활용하는 등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은 무엇일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 수많은 강사들이 대중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시민감시단의 자료를 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들이 시민감시단의 자료를 가까이 접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경찰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의 내부 스터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자료집을 내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이외에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출판이 효과적일까?

-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으로도 거듭 문제점으로 확인되는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최협의 설 타파, 2차 피해 방지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 7)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 마련 방안

-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말이면 더 바쁘는데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을 추천서 양식에 맞추어 4~5페이지 공들여서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다. 활동가라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사명감도 좋지만 뭔가 참여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sup>31)</sup>는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연간 시민감시단 활동 예산이 약 200만 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활동반경이 그 범주 안에서 설계되고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

31) 활동가 FGI 참여자의 의견.

### III.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 분석

#### A. 쟁점별 분석

##### 1.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 1) 폭행·협박의 최협의설과 그 변화

최협의설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계없이 폭행·협박이 있었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폭행죄나 협박죄(협의설)과 달리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최협의설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32)</sup>

최협의설에서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형태가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강압적·심리적·의사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sup>33)</sup> 이러한 해석은 최협의설에서 다툼의 쟁점이 폭행·협박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행위 및 저항행위의 제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최협의설에서는 상대방의 저항행위가 존재했는지와 저항행위가 제압되었다면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최협의에 해당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이에 따라 강간죄 판례에서는 저항행위가 있었다 내지 저항했으나 제압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이나 합리적인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33) 변종필(2006),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8(2), 149-150쪽.

관점에서 폭행·협박의 내용이 저항행위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된다. 이를 판단할 때 판례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기준에 따라 2005년 이전까지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이전 성력이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범행 전 내지 범행 과정 중 피해자의 도망 시도나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인 구조요청 여부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으며, 피해자가 이전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거나 피해자가 구조요청, 탈출 시도와 같은 저항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협의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sup>34)</sup>

이러한 최협의설에 대해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반성폭력 운동을 주도해온 여성 운동계와 여성학계에서 비판이 전개되었는데, 최협의설이 강간과 일반적인 성관계를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여성의 '동의' 유무가 아니라 여성의 '저항' 정도로 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여성의 경험과 고통을 삭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강간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지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35)</sup> 이러한 문제 제기는 1991년 시작된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법학계를 중심으로 저항이 아닌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개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비동의간음죄 신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sup>36)</sup>

법학계에서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강간죄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비판으로 협의설이 제기되었다. 협의설 주장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37)</sup> 협의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최협의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전개한다. 최협의설로 해석해야 할 규정상 근거가 없고, 최협의설이 피해자의 저항행위를 전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법적 판단에서 배제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34) 장다혜(2009),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담론·전망, 한울아카데미 참조.

35) 박선미(1989),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4, 289-316쪽; 심영희 외(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참조.

36) 최은순(1993),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 8, 95-102쪽;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3, 33-52쪽 등 참조.

37) 박상기(2005), 형법각론, 박영사, 151쪽; 조국(2003), 형사법의 성평형, 박영사, 48쪽; 한인섭(1998),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 10, 113-136쪽; 송승현(2019), 강간죄의 행위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한국정책논집 19(2), 45-53쪽 등 참조.

않는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최협의설이 논리적으로 배치되고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sup>38)</sup>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법조인의 성편향적 사법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법조인, 학자,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대법원 판례 평석문을 자주색 봉투에 담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전국 법원 및 검찰청에 전달되었다. 최협의설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판례평석 자료집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12차 자료집이 제작·전달되었다. 이 운동에서 “최협의설 비판”이 중점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형법은 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항 유무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음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다양한 맥락적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특히 이를 ‘객관성’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선적이다.<sup>39)</sup>

2005년 이후 대법원은 최협의설을 유지하되 종합적 판단에 있어 기준을 변경하는 판례들을 누적하면서, 최협의설 자체를 폐기하지 않았으나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태도를 취해왔다.<sup>40)</sup> 강간죄 이외에 다른 성폭력 범죄에서는 최협의설과 관련되어 협소하게 해석되어 온 판단기준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넓혀지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

38) 변종필(2006),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8(2), 150-2쪽 참조.

39)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2006]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소개글,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2536#!> (최종검색일: 2024.10.5.).

40) 장다혜·이경환(2018),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쪽; 박정남(2023),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 및 제안 — 영미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3(1), 296쪽.

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협소하게 해석해왔던 것을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는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

## 2) 사례 분석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던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은 남성중심적인 법 해석 및 적용과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전성협 시민감시단 역시 디딤돌·걸림돌 선정을 통해 최협의설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반성폭력 운동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2004년 첫 번째 디딤돌·걸림돌 선정에서부터 2023년까지 시민감시단은 최협의설을 변화시켜온 대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부를 디딤돌로 선정하였으며, 해석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최협의설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 (1) 실질적인 저항행위 없는 최협의설 인정

2004디딤2 재판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로, 그동안 최협의설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행위를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인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해왔던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사표시나 저항행위가 없었던 친족 간 강간을 강간죄로 인정한 1심 판결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강간 당시 큰 소리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사실, 강간 이후 가해자가 구해준 방에서 생활한 사실, 남편에게 돌아간 다음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고소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8개월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한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사실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최협의설이 저항행위를 전제조건으로 두는 기준을 제시하는 와중에, 종전 판례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충족하는지 판단기준을 피해자의 저항행위로 삼되, 저항행위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구조요청이나 탈출 시도, 신속한 고소 등이 없는 경우에 저항행위 내지 저항행위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실제 저항을 했는지, 다시 말해 실질적인 저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디딤2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저항행위와 이를 뒷받침할 범행 전후 전형적인 피해자의 저항 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써 최협의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005디딤3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최협의설에서 요구해왔던 실질적인 저항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을 포기하게 되는 강압적·심리적·의사적인 폭력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강간죄 유죄판결을 하였다. 2005디딤3에서는 피해자가 부모이혼으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피해자가 내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점,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심리적 억압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최협의설이 물리적·절대적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을 포기하게 되는 강압적·심리적·의사적인 폭력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항행위의 입증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성적인 자기방어를 포기할 정도의 심리적인 억압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것이 2005디딤2로 선정된 대법원 1부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건 대법원판결<sup>41)</sup>이다. 손님인 가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방에서 강간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방의 방실 밖으로 나간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녀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양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면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에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만한데

---

4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 [공2005.9.1.(233),1469].

그와 같은 상처가 없는 점,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보다 적절하게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점, 공소의 1, 공소의 2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와서 성교가 중단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공소의 1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sup>42)</sup>고 판시하였다.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물리적이거나 절대적인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 증거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구조요청이나 탈출 시도가 없었다는 점, 강간 직후 강간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저항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협의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2005디딤2 재판부는 이러한 최협의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저항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최협의설을 부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sup>43)</sup>

이 대법원판결은 최협의설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저항행위라는 전제를 배제함으로써 최협의설로 인해 협소하게 인정되었던 강간죄 해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5디딤2 재판부의 판결 이후 최협의설을 판단하는 데에 구체적인 저항행위가 어떻게 제압되었는지가 아니라 ‘저항의사’가 어떻게 제압되었는지, 즉,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최협의설 판단의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42) 광주고법 2005. 4. 28. 선고 2005노94 판결.

4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 [공2005.9.1.(233),1469].

판결에서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옷을 벗겨 강간한 사건에서 2005디딤2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이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으로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70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51kg 정도에 불과하여 체격의 차이가 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이 대로변에 있다고 하여도 당시 주변에는 차량이나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수사기록 101쪽) 새벽 2시 30분경의 추운 날씨에 입고 있던 핫팬츠와 팬티가 종아리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리치고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에서는 2005디딤2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듯이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팔로 누르고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고인은 7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50kg의 마른 체격으로서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은 피고인의 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강간 미수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최협의설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이나 탈출 시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항 행위의 입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5디딤2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적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주취 상태, 정신적 질병으로 취약한 심리적 특성 등) 등 객관적인 사정이 신체적·심리적 저항에 대한 억압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저항 의사가 제압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최협의설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태도는 2022디딤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디딤11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제1부 판결로, 원심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나 저항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본 것과 달리, 얼굴을 돌린 피해자의 행위를 거부 의사 표시로 보고 추행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급장교로서 평소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협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저항 의사가 제압된 심리적 억압상태를 판단하였다.<sup>44)</sup>

이와 마찬가지로 2023디딤4 역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저항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협의설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3디딤4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과 범행 이전에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저항행위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여 성관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 (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판단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의 변화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면 최협의설에 대한 종합적 판단 과정에서 저항행위의 존재 여부 내지 저항행위가 억압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전에 성행위를 한 적이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저항행위 내지 저항행위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2005디딤2 판결 이후 저항 의사가 제압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최협의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범행 전후 및 당시의 실제 행위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최협의설의 변화가 나타났다.

2006디딤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의 판결로, 최협의설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동거하고 있는 연인관계에서의 성폭력을 강간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던 가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한 이후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가 다소간 위력을 동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통상 있을 만한 것이라고

---

44) 그러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던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대법원 제1부가 최협의설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것과 달리 별다른 검토 없이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피해자가 저항 의사를 포기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가해자-피해자 간의 권력관계 등 동일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 판단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최협의설 해석 기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2022결림1로 선정되었다.

주장한 것에, 2006디딤4 판결문에서는 2005디딤2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간음한 점, 피해자가 신속하게 고소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강간치상 유죄를 판단하였다.

2005디딤2 판결 이후 최협의설 판단에 있어 저항행위가 제압되는 심리적 억압상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되었다. 2006디딤4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 관계 내지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저항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이후 판례에서도 친밀한 관계라는 점이 성적인 자기방어를 포기할 정도로 심리적 억압상태를 부인하는 근거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 (3) 피해자 저항이 아닌 가해자 행위 중심의 최협의설 판단

최협의설은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저항행위의 입증을 판단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가해자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간과하고 피해자의 범행 전후 또는 범행 당시 행위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사법기관의 편향적인 태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편향적인 태도는 피해자 진술만을 주된 심리 대상으로 삼고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심리를 간과하는 수사 및 재판 실무로 이어지게 된다.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들에서는 피해자의 저항행위나 태도가 아닌 가해자의 폭행·협박, 그리고 가해자 범행 전후 행위에 집중하여 심리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두드러진다.

2008디딤1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소 처분으로, 최협의설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행위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최협의설 적용을 검토하여 강제추행죄 기소 처분을 한 사례이다. 공적으로 아는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가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당시 거부 의사를 “보통 여자들이 하는 내숭”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검찰청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남성이 공적인 관계에서 3~4번 얼굴을 본 관계로 애인 관계로 착각할 만한 정도의 친분도 없는 여성의 거부 의사를 거부가 아닌 내숭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고 보고 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법원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2009디딤7은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2부의 1심 판결문으로 해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동승한 후 갑자기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해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움 요청이나 탈출 시도 등 실질적인 저항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검토한 것 이외에도 범행 전 사정에 대해 피해자 태도 이외에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던 점을 근거로 가해자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모텔에 갔다는 사정을 인정하였다.

#### (4) 2005년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 하급심 판결 및 검찰 처분: 종전 최협의설 유지

2005디딤2 판결 이후 최협의설 판단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결들 중에는 종전 최협의설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저항행위의 존재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들이 나타난다.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을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2010걸림1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판결로, 지적장애인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의부가 강간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위력 간음만을 인정하고 친족 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재판부가 위력만을 인정하고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2005디딤2 판결이 아닌 종합적 판단기준을 판시한 종전 판례<sup>45)</sup>를 인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데에 대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여관으로 유인해서 고립되어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저항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최협의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010걸림3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항소심 판결로, 강간죄 유죄 판결한 원심을

---

4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파기하면서 상담심리전문가의 상담 결과보고서에서 “모친의 동거남에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외상적 재경험, 과각성, 회피증상이 만성화되고 심각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말에 피고인을 만나러 왔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져왔으나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적은 없다는 점, 피고인 업소 종업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최협의설 판단기준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저항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협의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018결립1은 해군 간부 2명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 특별부 항소심 판결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관계 등 저항행위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추행이나 성교행위가 용이하도록 맞춰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최협의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저항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이었으며 거부했을 때에 고압적인 업무태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적 자유를 포기하는 심리적 억압상태로 해석하지 않고 저항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2019결립3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의 강간죄 무죄 판결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최협의설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근거로 범행 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점시에 고기를 던져준 점, 손을 잡는 스킨십이 있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었을 때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 역시 부정하였다. 범행 당시에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사건에 대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 피해자의 태도를 근거로 최협의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9결립8은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심이 피해자의 나이(10세), 피해자를 잡아 누르는 방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충족한다고 보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당한다는 사실은 없고 그냥 놀렸다고 한 진술에 근거하여 저항행위를 억압한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 심리적 억압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 없이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유무만을 판단함으로써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2020걸림5는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의 강간죄 불기소 처분으로, 연인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해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강간 고소를 한 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폭행·협박 정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다고 진술했으나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지 않아서 튕기는 것으로 오해했으며, 2~3분 성관계하던 중에 피해자가 계속 밀쳐서 진심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단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거부 의사 이후에 밀쳐내는 피해자를 내리누르며 성행위를 한 사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그 외의 폭행·협박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의 거부행위로 결국 피의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최협의설을 충족하는 폭행·협박이 없다고 본 것이다.

#### (5)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

강간죄의 최협의설에 대한 판례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폐기되는 변화가 있으며, 시민감시단은 이를 2023디딤10으로 선정하였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를 반영하여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여, 폭행·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죄협의를 폐기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죄협의설 종합판단기준에서의 해석상 변화가 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간죄에서의 판례 변경이 없는 상황이 현재 하급심 판결에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죄협의설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기대한다.

## 2. 양형

### 1)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서 범죄의 종류에 따른 권고 형량의 영역은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 감경 영역의 3단계로 구분되며, 양형인자 중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 영역을 결정한다. 권고 형량 영역을 결정한 뒤에 법관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이때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양형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은 징역형인 때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에 적용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처음 시행되어 총 7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현재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의 5가지 범주에 따라 형량과 양형인자에 차등을 둔다. 범주별로 양형인자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다음 <표 5>는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 성범죄 양형인자와 양형요소(종합)**

구분		감경 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li> <li>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li> <li>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li> </ul>

구분		감경 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강도범</li> <li>•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li> <li>• 윤간</li> <li>• 임신</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li> <li>•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l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li> <li>• 상습범</li> </ul>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동일 기회 수회 간음</li> <li>• 비난 동기</li> <li>•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li> <li>•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li> <li>• 청소년에 대한 범행</li> <li>• 주거침입</li> <li>• 흉기나 위험한 물건 이용</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신뢰 관계 이용</li> <li>•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일반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2022년 6차 수정에서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상당 금액 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과 더불어 양형인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 6>은 주요 양형인자의 의미이다.

**<표 6> 성범죄 주요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	의미
범행에 취약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나이,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피해자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li> <li>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li> <li>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의 결정에서는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한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표 7>에서 보듯이 성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판단 요소는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로 구분되며,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둔다.

<표 7>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적 범행</li> <li>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li> <li>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li> <li>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li> <li>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ul>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복적 범행</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위험한 물건의 사용</li> <li>윤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li> <li>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li> <li>임신</li> <li>중한 상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li> <li>처벌불원</li> </ul>
일반착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li> <li>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우발적 범행</li> <li>자수</li> <li>진지한 반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년 최초 시행되어 2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표 8>의 현재의 양형기준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2차 수정 양형기준이다. 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음 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양형 요소는 범죄 유형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 범위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 유형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 일반양형인자이고,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개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다른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감경 영역을 선택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

〈표 8〉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와 양형요소(종합)

구분		감경 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범행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처벌불원</li> <li>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li>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일반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li> <li>인적 신뢰관계 이용</li> <li>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출처: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다음 〈표 9〉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 중 주요 사항 몇 가지의 판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구성요건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으나 주된 내용은 같다.

**〈표 9〉 디지털 성범죄 주요 양형인자의 정의(종합)**

양형인자	의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p>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 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li> <li>• 유포된 성착취물, 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p>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p>
형사처벌 전력 없음	<p>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p>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p>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그 외의 행위를 한 경우</li> <li>•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출처: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총 4개 범죄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 〈표 10〉은 각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한 것이다.

**〈표 10〉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종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범행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ul>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일반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ul>

출처: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2) 사례 분석

###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널리 사용되는 피고인의 방어 논리 중 하나였다. 2009결립2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심신미약 감경'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8세 아동에 대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여 강간상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피해 결과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형의 가중 사유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 기소검사와 1심 재판부가 걸림돌로 선정된 것은 성폭력 범죄에 주취 감경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에 대한 비판과, 어린 아동에게 야기한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가볍다는 사회적 평가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전국민적 분노는 이후 성폭력 범죄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고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1심 판결 선고로부터 약 1개월 뒤 의결된, 2009년 최초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두어, 가해자가 알코올, 약물 등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된 때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경우에는 감형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1차 수정 양형기준에서 곧바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이 삭제되었고, 그보다 몇 달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sup>46)</sup>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제19조). 또한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면서(제8조) 양형기준에서도 가중 영역 권고형이 ‘7~11년’이었던 것을 ‘11~15년, 무기’로 높이는 수정을 하였다.

이후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 범죄 법정형의 변화는 없었지만,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중 영역은 ‘13년 이상, 무기’로 더욱 상향되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는 데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만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에 두고 있으며, 가해자가 스스로 야기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나 약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

46)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시행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즉,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스스로 만취 상태가 된 때에는 형을 가중하고, 성범죄의 고의는 없었지만 피고인의 특성상 만취 상태가 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2) 우발적 범행 감경

“우발적 범행”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일반금정사유에 해당한다. 양형인자로는 우발성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 가중요소에 포함되나, 성적 욕망 등으로 인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왔고 현재에도 빈번하게 언급되는 사정이다.<sup>47)</sup> 특히 우발성은 술에 취한 상태와 연관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더라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3결립<sup>48)</sup>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 및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권고 영역은 2년 6월~6년이었으나 법원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는데,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노11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30. 선고 2024노57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24. 선고 2024고합2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88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27 판결 외 다수.

4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350 판결.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2008디딤6의 원심<sup>49)</sup>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이 감형 요인이 되었다. 1심 법원은 6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려운 가정 상황,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음주에 의존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측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음주 후 경과 시간,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양형에서는 범행을 스트레스 및 음주와 관련한 ‘순간적인 실수’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2심<sup>50)</sup>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정적 치유 대상이 바로 성충동 그 자체임에도 그러한 충동성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형의 감면 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성범죄 처벌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충동”은 형의 감면 사유로 삼아야 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여 치료적 교정에 만전을 다해야 할 이유라고 보았다. 이 사례는 범행의 우발성이 ‘재범 가능성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다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재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충동적, 우발적 성범죄’를 이유로 한 관용적 처벌 관행의 변화를 요구한 판결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 (3)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감경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양형인자 중에서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참작사유로서 긍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피고인의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가 감형 요인이 된 사례가 나타나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4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57 판결.

50) 대전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87 판결.

2007걸림2 사건은 강제추행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더욱 감형한 2심<sup>51)</sup> 재판부가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2심 재판부는 추행이 의정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회식 자리 차원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10명이 더 있는 자리여서 당초부터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습추행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고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63세로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의 뜻을 피력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였다.

이후 2013년 친고죄는 폐지되었으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형 사유가 된다. 2020걸림2 사건은 고용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 형의 감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걸림돌로 선정된 1심<sup>52)</sup>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책무를 망각한 채 추행 및 간음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뒤늦게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중전과는 있지만 그 이후 상당 기간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5개월간 구속되어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며 75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적용하여 감경 영역의 권고 형량 구간을 적용하였다. 1심 재판부가 걸림돌로 선정된 이후 선고된 2심 판결<sup>53)</sup>의 양형 판단 사유 또한 1심과 같았다.

1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 범죄가 이미 '순종해야 하는 관계',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범죄였고, 피고인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성교와 추행이 피해자가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

51) 서울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6노2703 판결.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7591 판결.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1373 판결.

언론보도에 나타난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종용 정황이 드러났다.<sup>5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공판 도중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또한 권력의 악용 가능성,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 가능성,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양형인지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롭게 진실한 의사에 기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신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여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을 대신한 부모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수용하지 않은 재판부가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다. 2008디딤6에서 2심<sup>55)</sup>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주로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sup>56)</sup>과 합의를 이유로 한 1심의 형의 감경에 대해 비판하였다.

1심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성실한 생활 태도, 범행의 우발성,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이웃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디딤돌로 선정된 2심에서는 합의가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집행유예를 할 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 아동 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책임 있는 의견을 들으려면, 아동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 등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하고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4) 공탁 및 기부 감경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있었다면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하거나

---

54) 이보라, 2019. 7. 17., ‘김준기 성폭행’ 피해자 “합의 하 성관계? 목숨 걸고 아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7170807001>

55) 대전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87 판결.

56) 이 글 ‘(2) 우발적 범행 감경’ 참조

제3의 기관에 기부하는 방법이 감형 목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 걸림들은 합의와 공탁을 들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 사례이다. 2023걸림4 사건은 11~12세 여성 2인에 대하여 성매매 권유,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6명에 대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sup>57)</sup> 판사를 걸림돌로 선정한 것이다. 1심에서 판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 13세 미만 의제강간에 대하여 실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sup>58)</sup>

이 사건에서는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른 ‘기습공탁’ 감형 문제가 제기되었다.<sup>59)</sup>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20년 12월 「공탁법」에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본래 피해자에 대한 형사변제공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sup>60)</sup>

문제는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절차임에도 양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공탁이 더 수월해졌다. 피고인으

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

58) 신송희, 2023. 8. 10.,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초등생 성매매’ 6명 모두 집행유예 ‘올분’, SBS 뉴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208](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2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오인애, 2023. 8. 31., 여성변호사회, 초등학생 성착취 범죄자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 법조신문, <a href=); 조은호, 2023. 8. 29.,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690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6900)

59) 남보라, 2023. 8. 9., “아아 얘기시구나”... 초등생 성 착취 공무원 등 6명 ‘집행유예’ 그친 이유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911090003379>

60) 법원행정처(2022),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1쪽.

로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노력 없이 금전 공탁만으로 형의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6차 수정 양형기준부터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에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탁했다는 사실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는 것이다.<sup>61)</sup>

전성협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sup>62)</sup>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 사실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하여 공탁 감경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sup>63)</sup>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과 언론 등에 의한 ‘기습공탁’ 문제 지적에 따라 2024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때에는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법원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제294조의5).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법원의 의무가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는 남아있다. 위 2023걸림4 사건에서도 여러 피해자 중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원에 엄벌 청원서를 수십 번 제출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판사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형의 감경 이유로 삼았다. 공탁을 감경 판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의 회복과 관련된 차원이라면, 공탁 관련 감경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지만 양형기준은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은 법원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므로, 공탁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해석하여 감경에 반영할 것인지는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걸림돌 판결과 달리, 공탁이 있었더라도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판결들이 디딤돌 사례에 나타났다. 2015디딤9 사건은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탄원과 공탁을 감경에 반영하

61) KBS에서 판결문 988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공탁이 있었던 판결 중 56.4%가 선고일 2주 이내에 공탁이 이루어진 ‘기습공탁’으로 확인되었다. 13%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관, 2023. 11. 20., 판결 988건 최초 분석… 절반 이상 ‘기습공탁’,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1970>

62) 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3),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6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 155, 171-173쪽.

지 않은 판결이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음모론을 내세우며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대부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23명 중 합의되지 않은 22명에 대하여 2심 재판과정에서 총 2,2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진지한 사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탁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 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해왔고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2년 8월~8년 6월)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

2023디딤7은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의 양형에서 공탁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관련 민사 판결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이 있었고, 이에 따른 채무를 형사공탁 방식으로 지불하면서도 피해자가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공탁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1심<sup>64)</sup>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피고인의 반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공탁”한 점을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반면 디딤돌로 선정된 2심<sup>65)</sup> 재판부는 1심의 양형기준 적용을 하나씩 재고찰하면서, 형사합의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형사공탁은 용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피해자는 2심 재판 당시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다.

공탁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양형위원회는 그 정의를 두지 않은 이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인자는 “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②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 요소로” 하는 것이고, “판단기준은 결국 사회 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으로 법관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sup>66)</sup>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64) 대전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1865 판결.

65) 대전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노2835 판결.

66) 양형위원회, 2021. 12. 6.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12/6(월) 제113차 회의 결과, 13쪽.

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불원에는 못 미치되’라는 기준은 피해자가 공탁 등 피고인의 보상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남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의 의미를 금전적 배상으로 축소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사죄와 어떤 형태이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피해의 회복으로 이해한다면,<sup>67)</sup> 일방적인 공탁은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디딤9와 2023디딤7의 두 판례는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시민감시단 등 전성협 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후원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감형 사유로 삼는 양태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2015결림2 사건은 지하철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데 대하여 2심<sup>68)</sup>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후원금 납부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던 사례이다. 1심<sup>69)</sup>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재범 방지 다짐을 하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면서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신용

---

67) 양형위원회에서도 비재산적 범죄에서는 경제적 보상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분리하는 태도를 취한다. 양형위원회, 2021. 12. 6.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12/6(월) 제113차 회의 결과, 11쪽.

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6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3207 판결.

카드로 5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였는데, 후원 종료 시점은 1심 판결 다음 달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회 더 후원금을 납부한 뒤 후원을 중단한 것이다.<sup>70)</sup>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후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판결 후 언론보도<sup>71)</sup>를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전성협에서는 일방적 후원 및 기부에 대한 법원의 감경에 비판을 제기하며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피고인의 일방적 후원 및 기부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sup>72)</sup> 당시 전성협에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 7개월간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제안한 사례는 총 101회에 달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응답한 단 7개 기관에서 확인된 수치이고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 후원 신청이나 공개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집계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의 기부 시도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73)</sup>

수집된 사례 중에서는 후원 이후 급박하게 증빙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 가해자의 변호사가 연락하여 상담소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 후원 이후 감경이 되지 않았다거나 예상보다 적게 감경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환불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었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교육, 상담, 행사 등에 참석할 인증을 요청하는 등 감형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활동을 이용하는 양상이 드러났다.<sup>74)</sup>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가해자 측의 행위를 “심각한 업무방해”<sup>75)</sup>로 경험했다. 이 사례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후원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들면서도 법원에서 감형 사유로 인용되는 점을 가해자 측에서 활용하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70) 이미경(2017),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쪽.

71) 권혜정, 2015. 7. 31.,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289938>

7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7. 9. 14.,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3893>

73) 김미순(2017), 전국성폭력상담소 사례조사결과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8쪽.

74) 김미순(2017), 9-10쪽.

75) 김미순(2017), 10쪽.

이후에도 성폭력 가해자 측의 기부 사례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대학교에,<sup>76)</sup> 피고인의 누나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sup>77)</sup> 기부를 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sup>78)</sup>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sup>79)</sup> 고아원,<sup>80)</sup> 보육원,<sup>81)</sup> 재해구호협회,<sup>82)</sup> 사회봉사단체<sup>83)</sup> 등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성교육 이수, 자원봉사, 장기기증 서약을 한 사실까지<sup>84)</sup>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부를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sup>85)</sup> 기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전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거나,<sup>86)</sup>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기부한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sup>87)</sup> 2015년 기부 감경 사례의 걸림돌 선정은 성폭력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해야 할 사법절차가 가해자에게 너무 쉽게 반성을 인정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기부 감경 요청을 그 자체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함을<sup>88)</sup> 명확히 알리는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피해자 부양 감경

피해자가 앞으로도 피고인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실형을 면제하는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노3457 판결.

77)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9노83 판결.

78)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796 판결.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합367 판결.

80)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고합53 판결.

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3704 판결.

82)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351 판결.

83)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22. 선고 2020노9 판결.

84)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1노738 판결.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노34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796 판결 등.

86)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9노83 판결.

8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3704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22. 선고 2020노9 판결.

8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7. 9. 14.,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3893>

사례들이 있다. 주로 친족 성폭력이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감형이 적용되는 경향이다. 2008걸림1의 재판부는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피해자의 친족 4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9살 때부터 약 8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추행을 한 데 대하여 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sup>89)</sup> 양형 이유를 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친족들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감경 사유들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장애 등으로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해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등에 비추어볼 때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고인들과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들이 고령이나 간질 증상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중 3인의 범행은 수년 전의 일이고 이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범행 등이다.

판결 직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3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어, 가해자들이 “피해 지적장애청소년을 ‘양육’해 온 게 아니라 음식과 집을 제공하면서 8년 동안 ‘성폭력’을 ”가해온 것이며, “지켜져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해체되어야만 하는 폭력적 집단”이고,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들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번 판결이야말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혈연 가족중심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회피의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sup>90)</sup> 시민감시단은 이 사례를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항소심<sup>91)</sup>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부양 가능성 대신 피해자가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하여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들어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친할아버지인 피고인만 87세의 고령이고 허리가 90도로 굽어있고 직립 보행조차 어려워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유지하고, 그 외 3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각기 징역 3년, 징역 1년

89) 청주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고합220 판결.

90) 에이블뉴스, 2008. 12. 3.,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 판결 규탄”: [성명]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등.

91) 대전고등법원 (청주) 2009. 3. 19. 선고 2008노49 판결.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6)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처

불법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이 있는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거나, 법정형이 높더라도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범죄에 비하여 사소화되어 법정형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였음에도 가벼운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불행한 성장 과정이나 콤플렉스, 혼인 등 개인적인 사정까지 감형 이유로 제시되었다.

2019걸림7은 대규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데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 및 2심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sup>92)</sup>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공연히 전시·상영,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등 배포·판매, 공연히 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sup>93)</sup>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 약 2년 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고, 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어린 나이, 범죄 전력 없음,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sup>94)</sup>

낮은 형량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2심<sup>95)</sup> 재판부는, ‘장기간 대규모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 배포, 전시하는 행위가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퍼뜨리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 및 촉진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9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재판 당시 용어이다.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단1640 판결.

94) 다만 당시 영리 목적 판매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재(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낮았다.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 선고 2018노2855 판결.

이용된 아동·청소년음란물 중에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수의 대부분이 몰수, 추징으로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2020결림3은 피고인의 외모 콤플렉스를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sup>96)</sup>이 제기되었던 사건이면서, 물리적 접촉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소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결림들로 선정된 1심<sup>97)</sup>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출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오래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걱정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것이 아니며,<sup>98)</sup> 촬영물을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양형에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15년'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양형기준이 없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외모 콤플렉스, 물리적으로 접촉한 '직접적'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제작과 별개인 유포가 없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여 양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음 해 2심<sup>99)</sup>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단 내용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SNS를 통해 범행하여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재미를 위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는 감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콤플렉스 같은 사정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고, 어리거나 다른

96) 조하나, 2020. 6. 30.,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AYBTZIYHSOC>

97) 대전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273 판결.

9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였다.

99) 대전고등법원 2020. 4. 17. 선고 2019노488 판결.

이유로 판단력이 미약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SNS를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침해와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다고 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피고인 측에서만 한 것이어서 형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유년기 경험과 성장 과정, 콤플렉스, 혼인과 부양가족 등등까지 고려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함에 대한 비판은 법정형 상향 개정과 양형기준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2019년 7월, 2020년 3월의 선고 이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형량 상향 개정이 있었다. 이 시기는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난 시점이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의 2020년 5월 개정<sup>100)</sup>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 목적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였으며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새로 두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2020년 6월 개정<sup>101)</sup>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배포·제공 목적의 광고·소개죄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소지와 더불어 구입, 시청죄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도 이어졌다.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안이 마련되자, 전성협을 포함하여 다수의 단체가 연대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

10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1)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시행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경험하는 양형의 문제와 양형 기준안에 대한 견해를 논의<sup>102)</sup>하는 등 적절한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년 12월 의결되어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온정적 판결에는 여전히 지속적인 감시가 요청되고 있다.

#### (7) 2차 피해 야기 가중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방해하고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지만,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나 2차 피해에 기여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본인의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의 극단이면서 그 자체로서 무고 범죄가 된다. 디딤돌 판결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의 무고 고소를 양형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2017디딤1 사건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2심<sup>103)</sup> 재판부가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이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전과 없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선고형은 준강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하한에 그쳤으나,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점을 반성 없음의 근거로 삼고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서술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2019디딤3은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2차 피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디딤돌로 선정된 2심<sup>104)</sup>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추행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심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신분과 관계에 따른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

---

102)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2020),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103)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노2672 판결.

104)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점,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과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권력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피해자가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 점,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과 이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심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시민감시단은 2심 재판부가 “성폭력 재판 밖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양형에 고려”한 점, “피고인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과 영향력이 건재한 상태에서 고소, 수사, 재판과정 모두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압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2017디딤1, 2019디딤3 판결 당시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와 같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였다가, 2022년 6차 수정에서 이를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확대하여, ①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한 데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또는 ②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와 같이 합의 시도 과정 외에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때 형의 가중 사유로 삼도록 하고 있다.

### 3. 피해자다움과 진술 신빙성

#### 1) ‘피해자다움’의 통념, 강간 신화

성폭력 피해자는 범행 피해 상황에서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울하게만 지낼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즉 ‘피해자다움’(victim stereotype)에 대한 통념은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 사건을 판단하거나 피해자를 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 중 극히 일부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는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닌 허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강간 신화’(rape myth)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2018년 강간 사건에서 최초로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한 대법원판결<sup>105)</sup>에서는 피해자다움의 통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sup>106)</sup>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적용에 있어 최협의설을 계속 완화하여온 재판 실무가 “자칫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여, 성폭력 재판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들이 있는데, 2022년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일부 문항에서 통념과 인식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남성의 통념과 고정관념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sup>107)</sup>

10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0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다움의 통념, 강간 신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와 지적이 있어 왔고,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통념에 대한 Q&A를 자료로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예로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청의 자료가 있다.<sup>108)</sup> ‘팩트 시트<sup>109)</sup>: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도전하기’(Fact Sheet: Challenging misconceptions about sexual offending)라는 자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15가지 통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15가지 통념은 아래와 같다.

1. 강간, 성범죄에 대한 신고는 쉽게 이루어지고, 방어하기는 어렵다.
2. 진짜 피해자는 강간과 성범죄를 즉시 신고할 것이다.
3. 진짜 강간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 저질러진다.
4. 가해자는 범행을 할 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저항하며 싸우며,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
5. 강간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순이나 누락이 없어야 한다.
6. 강간에 대한 허위신고 비율은 높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신고한다.
7. 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뒤 나중에 후회하며 강간을 주장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강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
8.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증인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9. 진짜 강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거나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이다.
10. 진짜 강간 피해자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우울함을 보일 것이다.
11. 성범죄 중 피해자가 보인 생리적 반응, 예를 들어 발기나 오르가즘은 그 사람이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12. 오직 여성만이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13.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 강간이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14. 성범죄 가해자들은 오로지 젊고 매력적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15.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 피해자는 가해자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그들이 너무 괴로워 해서 반드시 어른에게 말할 것이다.

---

107) 여성가족부(202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55-58쪽

108) Fact sheet: Challenging misconceptions about sexual offending  
<https://www.police.vic.gov.au/sites/default/files/2019-01/FINAL-factsheet-for-web-Challenging-Misconceptions.pdf>

109) 대중에 대한 정보전달용의 짧은 문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통념들이며, 실제로 수사, 재판과정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극복한 사례들은 디딤돌로 선정되고, 통념에 의해 부당한 판단을 한 사례들은 걸림돌로 선정되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사례 분석

### (1) 피해자의 음주 관련 편견

2016걸림3 사안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및 ‘첫 사람’ 재판 동행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으로,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보여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해당 재판장은 성폭력 사건들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죠”, “성경험 많은 여성과 적은 여성은 대응 방식이 다르거든요. 성경험 없는 여성이 금방 오케이 하면서 모텔에 쉽게 가지 않거든요”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 이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sup>110)</sup>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32.1%가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sup>111)</sup> 그러나 술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sup>112)</sup> 설령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은 그러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책임

110) JTBC 2016. 9. 29.자 기사,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판사」; 중앙일보 2016. 9. 26.자 기사,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준다”는 성폭력 재판부 판사

111) 여성가족부(202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57쪽

112) Horvath, M., & Brown, J.(2007), Alcohol as dry of choice: Is drug-assisted rape a misnomer?, Psychology, Crime & Law, 13(5), pp.417-429; Wall, L., & Quadara, A.(2014), Under the influence? Considering the role of alcohol and sexual assault in social context, Melbourne: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 (2) 모텔, 저항 여부, 신고 시점 관련 편견

2017결림9는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력을 당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입퇴실하였고, 첫 번째 피해 이후 즉시 퇴실하거나 도움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다. 피해자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제정신인 상태로 출입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방에서 올라와 진행 중인 소송(사건 다음 날이 기일이었음)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법률사무소 직원인 가해자와 만나 조언을 듣는 상황이었으며 시간이 늦어 모텔에서 더 이야기하게 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싫다고 몇 번 얘기 했잖아요”라고 하자 가해자가 “예”라고 하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녹취서가 있는 점, 이후에도 가해자가 여러 차례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은 불기소 이유서에 전혀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모텔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왜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그러했는데, 모텔 측으로서는 모텔에 경찰이 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장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반드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sup>113)</sup>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결림8 사안도 2017결림9와 유사하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에

---

113)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강간 피해경험이 있는 298명의 여성 중 70%는 성폭력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구조요청 등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태인 긴장성 부동화 현상을 상당한 정도로 경험하였으며, 48%는 심각한 정도로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강간 상황에서의 긴장성 부동화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Anna Möller et al., Tonic immobility during sexual assault - a common reaction predic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evere depression.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모텔 안에서 나체 상태였고 뜯긴 콘돔 포장지를 보고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하였으며, 깨어난 가해자에게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온 뒤 신상정보를 모르는 가해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CCTV에 찍히려 노력하고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달라고 하여 초코우유를 마신 뒤 헤어졌다. 이후 숙취 등으로 인해 이틀 뒤 경찰서를 찾아가 모텔, 편의점 등을 수사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모텔 CCTV상 피해자가 만취 상태<sup>114)</sup>였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즉시 외부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 도중 “콘돔이라도 사용해달라”라고 말한 점, ③ 모텔에서 가해자와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산 후 헤어진 점, ④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뒤 신고한 점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잠에서 깬 뒤 본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상황 파악도 못 한 피해자가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와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탓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콘돔 사용을 부탁한 것 역시 이미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질내사정, 임신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에도<sup>115)</sup> 검사는 이를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탁하여 초코우유를 사게 한 것 역시 가해자 신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고 굉장히 현명한 대응이었음에도, 검사는 스스로 설정한 성폭력 통념에 갇혀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뒤 신고를 한 것은 상담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빨리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늦은 신고로 보아 불기소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52.6%가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sup>116)</sup>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폭력 신고가 늦어지게 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피해 경험으로 인한 자책감, 충격, 혼동,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신고

114) CCTV에는 가해자를 포함한 남성 두 명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고 가방도 없이 상체가 꼬꾸라진 상태였다.

115) 실제로 강간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콘돔을 사용해달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직접 콘돔을 착용시켜준 뒤 강간당하였지만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15. 선고 2013고합171 판결(확정)이 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307 판결 사안에서 피해자는 강간당하려던 상황에서 “할 거면 콘돔을 끼고 하자. 콘돔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가해자가 콘돔을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해 탈출하여 강간미수죄가 인정된 바 있다.

116) 여성가족부(202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57쪽

결과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있다.<sup>117)</sup> 2일 만에 신고를 한 것을 늦은 신고로 본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점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 맥락과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 (3) 피해자 반응에 대한 편견

2005결림6의 경우, 검사가 농구선수가 십 대 피해자를 가해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했냐"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이거나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이 사안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감을 보일 것이고, 정상적인 학교·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를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우울감 등 심리적 고통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감정 상태를 외부로 모두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체에 의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쾌활하고 활기 있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법원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18)</sup>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그러한 성폭력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건으로 인한 감정을 억압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해 가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피해자의 방어기체 심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해외 자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는 감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드러낼 수도 있고, 무감각하거나 통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통제된 모습은 자기방어기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충분한 지원과 도움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19)</sup>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117) Cox, P.(2015), Violence against women in Australia: Additional analysis of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Personal Safety Survey, 2012. 노우도, NSW, ANROWS; Long, J.(2006), Explaining counterintuitive victim behavior in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cases, The Voice, 1(4)

118)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60 판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데, 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반응을 전형적인 통념에 기반한 모습에 고정시키고 그에 어긋나면 '진실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진실을 외면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 (4) 통념을 깬 사례들

2019디딤6 사안은 군수가 자신의 비서를 포함한 5명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는 가해자인 군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개인적인 부탁 등을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미투운동의 물결 속에서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늦은 신고, 피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한 점, 때로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들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건의 맥락 및 상황을 종합적이고 섬세하게 잘 고려하면서 판단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예컨대, 가해자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당시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고, 반복된 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부모 등 주변의 일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직한 후에 익명의 투서로 가해자의 추행 등 14개 항목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 면담 과정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투운동의 국면에서 피해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피해를 입을 당시는 피고인을 계속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은)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인데 사건을 키우면 또 보게 될 거다.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

119) Fact Sheet: Challenging misconceptions about sexual offending  
<https://www.police.vic.gov.au/sites/default/files/2019-01/FINAL-factsheet-for-web-Challenging-Misconceptions.pdf>

기간 피해 사실을 감추었던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오랜만에 가해자를 만난 날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와 이후로도 가해자와 가깝게 지내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동네 오빠이기도 하고 군수라서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다'라는 취지로 막힘없이 설명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일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의 지위와 이후 피해자의 행동들(채무 문제 해결 부탁, 부동산 정보 문의, 조카의 취업 청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성희롱 사안에 대한 판결이기는 했지만, 2018년 최초의 성인지감수성 대법원판결<sup>120)</sup>에서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해외 문헌에서도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이, 친구, 가족 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나 자책감, 경제적 자립 능력의 부재, 가해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등 다양한 이유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언급되고 있다.<sup>121)</sup> 2019디딤6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감안하여 판단한 것이며, 이는 항소심 및 대법원<sup>122)</sup>에서도 모두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디딤9 사안<sup>123)</sup> 역시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잘 판단한 경우이다. 이 사건은 시장의 비서에 대한 성희롱 사건인데,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12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21) Long, J.(2006), Explaining counterintuitive victim behavior in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cases, The Voice, 1(4)

122) 광주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2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610 판결

123) 서울행정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62805 판결

피해자가 그동안 (가해자)의 위 각 행위를 묵인한 것은 (가해자)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 업무의 특성상 (가해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위와 같은 (가해자)의 각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O 자치단체장 비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 의식 내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차원에서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받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피해 이후 어둡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지적한 내용이다.

2023디딤8 사안은 피해자가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음악 홀)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다움'에 어긋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쉽지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sup>124)</sup>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 성관계 무렵의 정황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모텔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까지 당연히 용인하였다거나, 간음 행위가 '강제성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악 홀 단골이어서 사장(아는 언니)의 눈치가 보여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건의 경위나 사장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둘 사이의 관계, 코로나19로 인해 새벽 영업을 금지되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일정부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사정이 그

---

124) 한편 가해자는 모텔에서 강요나 억압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텔 종업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모텔 종업원은 위증에 가까울 정도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 112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어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믿지 않기도 하였다.

이후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강조하였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주장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으로 나아갔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25)</sup>

피해자의 직업이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나 이 사건 강간죄의 성부와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방 도우미’가 암시하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성적 이력, 품행과 평판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거나 성관계에 대해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여성에 대하여 정숙과 순결을 요구하여 오던 과거의 성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sup>126)</sup>.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오히려 그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성관계 시도에 앞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에 나아갔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한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유서에는 “재판장이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sup>126)</sup>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에 대한 연구<sup>127)</sup>를 진행하고 증인대기실 설치, 증인지원관 제도 실시 등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23디딤8을 추천한 상담소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고 당일에도 위 판결문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라며 이력이나 품행을 따지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성적 관념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성적

125) 더 나아가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다수 사례를 참조하여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강조하는 변론이 자제되어야 함은 점차 공감을 얻어 가고 있으나 아직 입법 등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 관련 논문을 각주로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재판부가 제시한 논문은, ‘이재석(2016), 성폭력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 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이다.

126) KBS 2011. 6. 10.자 기사, 「성폭력 피해여성, 재판과정서 ‘문제女’ 취급에 자살」

127) 장필화 외(2012),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력이나 행위를 탓하면 안된다. 노래방 도우미를 떠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해자들과 지원자들의 노력으로 법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역고소

##### 1) 역고소의 문제점

2000년을 전후하여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나 지원단체, 지원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역고소가 피해자와 지원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및 각계인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 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28)</sup>

가해자들에 의한 역고소 초기에는, 주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대외적으로 적시한 것을 문제 삼아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가 많았다면, 이후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들에 의한 전략적인 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sup>129)</sup>

이러한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성폭력 사건에는 허위 고소가 많다'라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에 기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즉,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어디에도 무고죄 통계 중 성폭력 관련 무고를 별도로 집계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무고 통계는 아무도 모른 채로 '성폭력 관련 무고가 많다, 증가하고 있다.' 등과 같은 근거 없는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sup>130)</sup>가 대검찰청의 협조

---

128) 연합뉴스 2002. 10. 22.자 뉴스, 「'성폭력 역고소' 대응 공론화」; 동아일보 2002. 7. 10.자 기사, 「"성폭력 역고소 단호대처" 각계인사 공동대책위 구성」

129) 이에 대해서는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 35-45쪽

130)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를 받아 2017년, 2018년의 관련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이에 따르면 2년간 성폭력 범죄 전체 피의자 숫자는 80,677명이고,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 단일범의 전체 피의자 숫자는 1,190명이며,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341건이었다. 같은 기간의 처리 건수로만 비교한 것이어서 편차가 있겠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성폭력 무고 유죄 인정 건수를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숫자로 나눈 비율은 불과 0.42%에 불과하여 굉장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sup>131)</sup> 또한, 2017년 성폭력 무고 피의자 수는 536명인데, 같은 해 사기 무고죄 피의자는 825명, 문서위조죄 무고 피의자는 597명, 횡령·배임 무고 피의자는 645명, 신용업무경매 무고 피의자는 540명 등으로 성폭력 무고 피의자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굉장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32)</sup>

한편, 2017~2018년 성폭력 무고 피의자 중 69.2%(824명)가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 이 중 7.6%(63명)만이 기소되었고 기소된 인원 중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58명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인원은 49명으로서, 기소된 인원 중 5.95%에 해당한다. 즉,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실제로 무고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실제로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는 ‘무고의 무고’ 사안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는 사회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sup>133)</sup> 지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을 청년 공약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이 낮다는 발언을 하여 여성혐오를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sup>134)</sup>

131) 외국에서도 성폭력 허위 고소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어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성폭력 허위 고소는 사람들의 인식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Ferguson, C. E., & Malouff, J. M. (2016), Assessing police classifications of sexual assault reports: A meta-analysis of false reporting r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5(5), 1185-1193; Wall, L., & Tarczon, C. (2013). True or false? The contested terrain of false allegations. Melbourne: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등 참조

132)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1쪽; 다만, 전체 무고 발생 인원수 대비 성폭력무고 인원은 9.08%(536/5904), 기소 인원수로는 14.39%(181/1258), 유죄판결 인원수로는 15.23%(169/1110)로 성폭력 무고죄가 다른 무고에 비해 기소 및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약간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고단계로 비교하더라도 사기 무고 유죄 인원이 166명, 문서위조 무고 유죄 인원이 241명으로 성폭력 무고 유죄 인정 사건만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133) 성폭력 무고에 대한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세희(2022), 성폭력 무고 담론의 구성 - 언론과 온라인 공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 논문

그만큼 무고의 문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만의 문제'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무고 역고소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역고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2018년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역고소 문제도 이슈화되었는데,<sup>135)</sup> 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성폭력 수사 종료까지 역고소 수사 중단을 권고하여 2018. 5. 11.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개정되기도 하였다.<sup>136)</sup>

## 2) 사례 분석

### (1)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공식성 인정, 가해자 역고소 남용 지적

2005디딤1 사건<sup>137)</sup>은 성폭력 사건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안이었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 대학의 교수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대구 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을 출판물<sup>138)</sup>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1항)으로 역고소한

134) 뉴시스 2022. 3. 2.자 기사, 「尹 “성범죄 상향에 무고죄도 맞춰야” vs 沈 “무고죄 2차 가해”: 오마이뉴스 2022. 3. 4.자 기사,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가장 높다” 심상정 발언 ‘대체로 사실’ - 최대 형량 미국·독일·프랑스 2배 수준 ... UN도 성폭력 사건에 무고죄 남용 우려」

135) 허민숙(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한국 여성학 제34권 4호, 69-97쪽 참조

136)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2.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유의 사항  
“무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각 청에 접수된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 ※ 수사중단 :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소환을 비롯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

위와 같은 성폭력 수사매뉴얼 규정에 대하여 무고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매뉴얼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6. 27.자 2018헌마559 결정).

한편,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수사 완료 시까지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방침은 이미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에서 마련한 무고 기소 요건과 동일하다. 일다 2018. 3. 7.자 기사, 「피해자를 침묵시켰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참조

13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38) 대구 여성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건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사건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각각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고 게재된 내용 역시 모욕적인 표현 없이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가 문제 되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에서 피해자 및 지원자의 공익 목적 및 비방의 의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사실, 이와 같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성폭력 가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17디딤2 사건<sup>139)</sup>은 연예인 박OO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담은 질문을 다수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sup>140)</sup>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부적절한 신문을 제지하고 배심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무죄 판결 선고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9디딤8 사건<sup>141)</sup>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합340 판결

140) 허리를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은지 등 질문을 하였으며, 질문 과정에서 강간 이후 여는 피해자가 보이는 양태와 판이하게 달라 의심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해당 검사는 2017결림1 사례로 결림돌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있었던 검사의 부적절한 신문내용을 보도한 기사로, 여성신문 2017. 7. 10.자 기사, 「‘꽃뱀’ 물린 피해자 향해 “상대방 좋아했냐”고 묻는 검사」 참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67>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다. 방송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 그러자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제1심 및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이다.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한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성폭력 무고 역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피해자를 구제하였다는 점 외에도 무고 역고소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역고소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sup>142)</sup>

2020디딤6 사건<sup>143)</sup>의 재판부는, 미투운동 국면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옹호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안의 피해자는 청소년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sup>144)</sup> 이후 미투운동이 진행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피해자는 미투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SNS에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관련 기사 등을 게시하였고, 가해자는 그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였는데, 피해자의 행동은

14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42)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고,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1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39225 판결

144) 2009년의 사건으로서 당시까지만 해도 친고죄가 적용되었다.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이에 관하여 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성범죄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가해자의 역고소를 무고로 인정한 사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에 대해 역고소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성폭력 가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성폭력 사건의 형량에 고려되거나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사건이 되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된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결론임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충분치 않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해 다시 무고 고소까지 하여 다룰 여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가해자의 역고소를 무고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이 디딤돌로 선정된 바 있다.

2017디딤1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올린 시를 좋아하던 중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어 멀티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가해자가 준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의하며 보낸 메시지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하자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제1심<sup>145)</sup>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는 동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잠에서 깨자마자 예기치 못한 성행위를 목격하게 된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나 도움 요청하

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443 판결

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준강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히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sup>146)</sup>

2018디딤1 사건은 시의원이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고소하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검사는 약 8개월 간의 수사를 거쳐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해 무고혐의를 추가하여 강제추행 및 무고로 기소하였다.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sup>147)</sup> 성폭력 사건에서의 무고는 보통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무고만을 떠올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쉬우나, 성폭력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무고 역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에 의한 무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sup>148)</sup>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인지수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스스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기소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무고 인지, 가해자 역고소 인정 사례

2008결림4 사건은 임대 관련 허위 광고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로 인지되어 기소된 사안이다. 피해자는 광고를 보고 가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당하였는데, 살 집이 없어 막막하던 상황이어서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계속 집을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재차 성폭행 피해를

146)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184 판결

147) 경기일보 2018. 11. 8.자 기사, 「인천 정가 최초 미투사건 법원으로...검찰, 무고 적용 초강수」

1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을 7.6%에 지나지 않는다.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1쪽

당하였다. 이후 가해자가 임대할 집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알고 고소했지만, 검사는 첫 피해 이후 곧바로 고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집을 임대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여 무고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3걸림2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심리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친조모에 의해 장애 등록하지 않고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던 상황이었는데,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서웠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나요’, ‘진술인이 폭행, 협박당했다거나 무서웠다면 영상의 화면과 같이 오빠와 다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절차적으로도 피해자의 보호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학교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조사기록에 지장을 찍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2020걸림10 사건<sup>149)</sup>은 직장에서 퇴사한 피해자가 상급자였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준강간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이후 가해자 측 증인이었던 사람이 양심고백을 하여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기자회견 이후 재고소하였으나 재고소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되고, 이후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1심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론을 유지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 증인의 양심고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임에도,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증인의 진술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동일한 내용의 형사

---

14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소31064(본소), 2018가소31804(반소) 판결

사건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에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론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3년간의 심리 끝에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였다.<sup>150)</sup> 대법원은 피해자가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기자회견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비록 그 형식이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였지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임은 물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표현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양하고,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재평가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평가함은 물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장·노동조합 내 또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성폭력 문제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한 표현 방식 역시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합리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참고인의 양심고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혐의를 인지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로 2016결림1, 2017결림4 등이 있으며, 무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2018결림2),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를 언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게 한 내용도 있다(2023결림2).

---

15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 특히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반소 관련 상고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근거로 판단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만약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 5. 손해배상

### 1) 성폭력과 손해배상책임

성폭력 사건은 주로 형사사건으로 문제 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와 가해자에 대해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sup>151)</sup> 그에 따라 2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규칙(2004. 8. 17. 경찰청 훈령 제428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81호), 범죄수사규칙(2006. 12. 26. 경찰청 훈령 제498호)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범죄 피해자 대책실 발족,<sup>152)</sup> 피해자 보호위원회 설치,<sup>153)</sup>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sup>154)</sup> 도입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노력을 하였다.

검찰 역시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1999. 2. 23. 대검예규 제290호), 인권보호수사준칙(2002. 12. 17. 법무부 훈령 제474호) 등을 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담당 검사, 담당관 지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

151)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 과제; 광명달(2006),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동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은주(2006),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주연(2005), 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송명순(200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등

152) 2004. 6. 7. 경찰청 수사국 내에 설치된 것으로 ① 범죄피해자 대책 수립, 기획, 홍보 및 법령 정비, ② 범죄피해자 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③ 경찰종합상담실 및 해피콜 센터 설치 및 운영, ④ 피해자 전담보호관 채용 및 운영, ⑤ 피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⑥ 피해자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창구 등의 역할을 한다.

153) 피해자 보호위원회는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피해자 관련 기능 담당자를 위원으로 한 피해자 지원 협의체이다.

154) 경찰 경력 10년 이상인 경찰관들을 서포터로 선발하여 교육 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돕게 하는 제도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칙,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2차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은 국가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특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제도의 법적 구속력,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한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도 하였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sup>155)</sup>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는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을 받아 처벌되지 않았지만, 민사절차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들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의 판단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들이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2) 사례 분석

### (1)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단 사례

2024년 한 유튜버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밀양 성폭행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디딤돌, 걸림돌 선정 첫해인 2004년의 첫 번째 걸림돌 사례인 2004걸림1이 바로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한 수사관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155)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등).

“밀양 물 흐려놓았다.”<sup>156)</sup>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였으며,<sup>157)</sup> 기자들에게도 인적 사항을 누설하였고,<sup>158)</sup> 범인식별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지목을 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가족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눈깔을 확 파버린다.’, ‘내가 밀양 조폭이다’, ‘너네들 신고해놓고 잘 사나 봐라.’ 등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총 9개의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다. ① 기자들에게 피해 사실 및 피해자 인적 사항 누설, ② 노래방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누설하고 비하 발언, ③ 여성 경찰에 의한 조사요청 목살, ④ 범인식별실 미사용, ⑤ 진술녹화실 미사용, ⑥ 가해자 가족들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 ⑦ 밤샘 조사 실시, ⑧ 피해자조사시 식사와 휴식 시간 미제공, ⑨ 감식실 근무자의 피해자 비하 발언 등이 그것이다.

2006결립4로 선정된 제1심 재판부는 주장 ①, ②만을 인정하여 500~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다. 반면, 2008디딤7로 선정된 항소심 재판부는 위 ①, ②에 더하여 ④, 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1,000~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다. ④ 범인식별실 미사용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69조에 위배된 것인데, 제1심 재판부는 이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 직무 규칙의 목적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직무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더욱 보호가 필요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⑨ 감식실 근무자 발언의 경우 제1심은 수사관계자가 아니어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 또는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당시 감식실이 피해자 대기

156) 피해자와 가족이 감식실에서 대기를 하던 중 감식실 근무자가 한 발언 내용이며, 가족들이 항의하자 감식실 근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말이지 피해자 측에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이후 해당 근무자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157) 노래방 도우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였는데, 도우미 중 한 명이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이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련 경찰들은 감봉 1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158)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경찰서 출입 기자 10여 명에게 배포하였는데, 보도 자료 배포 1시간여 후부터 인터넷 뉴스 등에서 기사가 실리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밀양에 거주하는 000 양 자매’ 등으로 기재되었고, 꿈이어 울산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경북일보 등에 ‘O모(14세, 울산 모 여중 3년) 양 자매’ 등으로 보도되었다.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사건이 기사로 실린 것 같다고 말해 줄 정도로 기사만으로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로 사용되었고 근무자도 피해자임을 알면서 발언을 하였고 징계도 받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다.<sup>159)</sup>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③ 및 ⑤~⑧의 2차 피해가 인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닌 '시혜적 조치'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가 2차 피해를 방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sup>160)</sup>

2011디딤7 사건<sup>161)</sup>은 조OO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부가 디딤들을 수상한 내용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전담검사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영상물 녹화 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 어머니에게 300만 원). 특히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복강 내 장기가 외부로 탈출되고 항문과 여성 외부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조사 시점은 외음부 등의 복원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배변주머니를 단 채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상태였고 심한 복통으로 수면 부족과 탈진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들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성폭력법 등 관련 규정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 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증인 신문 이후 검사가 뒤늦게 가해자의 범행 직후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녹화 씨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5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160) 한국성폭력상담소·최영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08), 아동·청소년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

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09가단480295 판결

피해자 측은 씨디를 미리 제출하였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른 진술 신빙성도 다투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씨디가 좀 더 일찍 제출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sup>162)</sup>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005걸림6의 경우, 검사가 농구선수가 십 대 피해자를 가해한 사건<sup>163)</sup>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했냐", "성관계가 처음이냐?", "(현장검증에서 범행 재연하라고 하며) 올라타라"라는 등의 언행을 하고, 그러한 언행이 문제 되자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자신은 만류했었다고 해명자료를 내어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2)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2004디딤4, 2008디딤4, 2011디딤5).

그 중 2008디딤4 사건<sup>164)</sup>은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었으나 연인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진술, 범행 시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 노래방에서의 피해의 경우 시간 연장이나 주문 과정에서 도망을 가거나 노래방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sup>165)</sup>이 된 사안인데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내용이다.

제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sup>166)</sup>

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4236 판결

163)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126쪽.

1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165) 이후 피해자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166) 노래방에서 자신이 계산을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시간 연장을 위해 방 밖으로 나왔음에도 도망을 가거나 노래방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당할 때 가해자의 지시로 돈을 받아 맥주와 안주를 사 오기도 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맥주를 사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최고위 상사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하던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성 관련 지식수준 낮아 가해자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로부터 더 큰 화 내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애정 표현 등을 나눈 사실이 없고, 가해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를 불륜관계로 주장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였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및 치료비 15,087,155원 외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훨씬 넘는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한 약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다.<sup>167)</sup>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피해자다움의 편견에 빠지지 않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형사사건 결과와 비교할 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재판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 차이에 따라 실제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채용한 법인도 공동피고로 제소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해당 법인은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폭력이 업무의 연장선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가해자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sup>168)</sup>

그 외 2007디딤4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1심<sup>169)</sup>은 성추행 부분만 인정하여 700만 원 배상 판결을 한 반면, 항소심<sup>170)</sup>은 음주강요와 늦은 회식 강요까지 불법행위로 보아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잘못된 직장 내 음주문화와 직장문화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167) 가해자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68) 다만, 법원이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4가단275025 판결

170)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한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 된다.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로 지인데,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가 늦거나,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나이, 경제적 자립, 주변 환경 등의 문제로 고소나 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오픈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sup>171)</sup>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경우 2020년 민법 개정(제766조 제3항)<sup>172)</sup>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일부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 연장, 중단 등 여러 개정논의만 있고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인 상황이다.

2019디딤1판결<sup>173)</sup>의 경우, PTSD 진단 시점을 손해발생일로 보아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 도과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인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sup>174)</sup>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되어 이후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

171) 한국성폭력상담소(2006) 토론회 자료집,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조; 성폭력 공소시효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2010년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정지 규정(제20조 제1항)을 신설하였고, 2012년 개정법에서는 13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며(제21조 제3항), 이후 폐지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어 오고 있다.

172) 민법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7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17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B. 피해유형별 분석

###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1)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변화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에 특별 규정을 신설하면서 친고죄에서 제외하게 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94년이다. 이 법에 장애인 준강간죄가 신설되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게 되었다.<sup>175)</sup> 처음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데 대한 특별 규정으로 둔 것이다. 입법 이후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저항할 수 없는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3년 뒤인 1997년 개정<sup>176)</sup>에서 '정신상의 장애'를 추가하여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은 주로 장애 인권 운동 진영에서 대응하면서 성폭력보다는 장애인 시설 내의 인권 문제나 시설 비리 문제에 더 주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177)</sup> 그러다가 강릉에서 마을 남성 7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먼저 고발된 1명의 가해자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28개 단체가 '정신지체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장애 여성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장애 여성 성폭력에 대한 대응 활동을 펼쳤다.<sup>178)</sup> 이듬해인 2001년에는 한국여성장애

---

175) 법률 제4702호, 1994. 1. 5., 제정, 시행 1994.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76) 법률 제5343호, 1997. 8. 22., 일부개정, 시행 1998.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77) 김은정(1999),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한국 장애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414쪽.

178)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9. 16.,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https://www.sisters.or.kr/activity/total/469>

인연합이 대구, 부산, 전주, 서울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열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이 시작되었다.<sup>179)</sup>

이후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일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가 잊혀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장애 여성 성폭력 범죄의 처벌 실패 문제가 여론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2009년 4월,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는 4월 둘째 주를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으로 선포하여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고,<sup>180)</sup> 다음 해인 2010년, 공주에서는 마을주민 9명이, 대전에서는 청소년 16명이(2011결립1), 청주에서는 교사가 각각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에게 가해한 사건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성협 장애인상담소 권역은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수사, 재판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sup>181)</sup> 같은 시기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가 2009년 발간되고 동명의 영화가 2011년 개봉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성폭력 운동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여론의 주목에 힘입어, 2011년 11월 「성폭력처벌법」 개정<sup>182)</sup>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때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였다.

이 개정에서 기존의 장애인 준강간죄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종래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다가, 2011년 11월 개정에서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

---

179)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9. 16.,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https://www.sisters.or.kr/activity/total/469>

180)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2023. 3. 29. 보도자료, 제15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 행동하지 않으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

181) 김가영, 2010. 8. 18.,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올바르게 수사·판결하라”,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

182)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시행 2011. 11.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장애인 강간, 장애인 유사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 준강간죄의 범위가 다시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2년 12월 18일에는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이 있었고,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성폭력범죄에서도 이에 맞추어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로 수정하였다.<sup>183)</sup> 또한 2011년 개정에서 장애인준강간죄를 ‘장애인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로 변경하였던 것을 다시 이전의 형태와 같이 장애인준강간죄로 변경하면서, 구성요건에 ‘항거 곤란’을 추가하였다. 장애인준강간죄는 과거에는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항거불능’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 문제 되자 구성요건에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성폭력범죄는 벌금 하한을 상향<sup>184)</sup>한 것 외에 주요 구성요건의 수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사례 분석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사례 중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민감시단 활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력이 쟁점이 된 사례가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021년 단 두 해뿐이었다. ‘도가니’ 사건이 알려지며 장애인 성폭력에 여론이 주목하였던 2012년에는 11건의 디딤돌 사례 중 6건이 장애인 성폭력이었다. 선정 사유에서도 구성요건 판단의 측면과 수사, 재판 절차의 측면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장애인 피해자 지원활동과 입법 운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 법률 해석의 변화를 위한 활동과 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활동은 그간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법률 개정(표 11) 참조)과 법원의 판단 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디딤돌, 걸림돌 선정사례들을 수사, 재판의 절차적 측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구성요건 판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83)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시행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4)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표 11〉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의 변화

제·개정일	시행일	조문
1994. 1.5.	1994.4 .1.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強姦) 또는 제298조(強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7. 8.22.	1998.1 .1.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하 같음)
2011. 11.17.	2011.1 1.17.	<p>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li> <li>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li> </ol> <p>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2012. 12.18.	2013.6 .19.	<p>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하 같음)</p> <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하 같음)</p> <p>③ (변경 없음)</p> <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하 같음)</p> <p>⑥~⑦ (변경없음)</p>
2020. 5.19.	2020.5 .19.	<p>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② (변경없음)</p> <p>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⑦ (변경없음)</p>

주: 진한 글씨 및 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이전 법률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임.

(1) 장애인 성폭력 범죄 수사, 재판의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인피해자 사건에서 수사, 재판 절차와 관련된 선정사례들은 대부분 디딤돌 사례였다. 걸림돌로 선정된 사건들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술 조사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점, 고압적이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가 이루어진 점,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적장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진행한 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드러낼 수 있게 지원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수사, 재판 절차에서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9걸림1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위력간음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걸림돌 추천 단체는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질문자가 어려운 용어나 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도록 유도했음을 비판하였다.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법원은 이를 비일관된 진술이라고 보아 신빙성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빙성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 이해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술 특성을 이용하여 일관성 없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 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성폭력처벌법」 개정<sup>185)</sup>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 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는 진술조력인을 수사 과정 및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 피해자 등의 의사소통을

---

185)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시행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증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다가 현재는 19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다. 같은 시기에 피해자 변호사와 증인지원관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지원이 강화된 2013년에도 장애 청소년 사례가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2013걸림2의 피해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 중인 14세 여성 청소년이었는데, 친조모가 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장애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출석 요구를 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문자로 연락하였으며, 피해자의 무고혐의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 지장을 찍도록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2019걸림9는 장애 청소년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미흡했던 사례이다. 의붓아버지의 지적장애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해 진술한 이후 폐쇄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외출하거나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내게 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가 제출되어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는데, 피해자를 지원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모의 동의하에 병원에서 법정 출석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지원단체에서는 병원으로 수사관을 파견한 진술 조사나 화상 증언 등의 방안을 제안했지만, 재판관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 증언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이 동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폭력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고, 법원은 무죄 판결<sup>186)</sup>을 하였다. 재판부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가 피고인의 변호사에 의해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증언 전에 피고인 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모에게 ‘딸에게 미리 말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만을 하고 증인 출석을 위한 병원 외출 신청을 피해자의 모가 하도록 하였다면서, 탄원서의 진위 문제나 피해자가 모와 피고인에 의해 통제된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폭력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증원과 탄원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 판결

1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 판결.

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3걸림1은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주민 13명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전원 불송치 결정된 사례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담당 경찰이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폭력이 문제 된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상담소나 인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되어 성폭력상담소가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추천 단체는 담당 경찰이 편의에 따라 일정 등을 통보하였고, 피해자 조사에서 해바라기센터나 전문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남성 수사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호소하였지만 고려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데 대해 비판하면서, 전반적인 수사 부실,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 유발론에 따른 수사,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규탄이 필요함을 걸림돌 추천 근거로 들었다.

그에 비하여 디딤돌로 추천되어 선정된 사례들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사, 피해자의 장애 등록 지원, 방문 조사,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술 조사, 안정적인 수사 분위기 조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적극 대응, 지원자의 조력 보장, 의료지원 연계, 긴급피난처 연계,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연계,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과 소통하면서 수사 진행,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 등이 추천 사유로 제시되었다.

먼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명료한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진술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여 범행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던 경찰, 검사들이 다수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12디딤2는 강력반 팀장이 다수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 배려심, 피해자 중심의 사건 진행 등을 이유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추천 사건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가 연루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 피해 일시 등을 기억하지 못하여 담당 형사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면 문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다른 지역 내 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멀리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데리러 가고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한 달간 체류한 적도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진료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 가해자 세 명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디딤3은 경찰 단계에서의 미흡한 수사를 검사가 보완하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건 송치 이후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추가 범행까지 밝혀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였던 성인 여성이어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초반에 피해자가 시계를 읽지 못하는 모습, 통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한 모습 등이 녹화되도록 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디답1은 회사 사장과 부부인 직장 상사에 의한 장기간의 반복적인 성폭력이 문제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일시 특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천 단체에서는, 일부 경찰관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정확한 일시 추정이 어려웠으며 자칫하면 당사자 간의 관계나 인건비 등 갈등 정도로 축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답돌로 선정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경찰의 경우 추천 단체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최대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 담당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자 적극적 공감으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천 단체의 상담사실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지능검사 재검 및 소견서 요청, 수집 등을 통하여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디답3의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언어적 표현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력 등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어렵고 숫자 개념이 미약하여 날짜, 횟수, 연령 등에 대해 진술하기 어려웠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지적장애인이어서 보강 증거를 수집하기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디답돌로 선정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조사 이후 사건을 이관받아 피해자 진술 속기록을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속기록에서 반복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이 열린 질문이어서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질문지를 다시 만들고 피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재진술을 하도록 하고, 1차 진술 조사를 담당할 수사관을 배치하도록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1차 진술에서 부족한 진술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소에 기여하였다. 추천 단체는 담당 경찰이 지원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의 사건을 인정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추천 근거로 들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연계한 사례도 여럿 선정되었다. 2022디딤2는 지적장애가 추정되고 경증의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피난처 입소하도록 하고 응급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지원 과정을 점검하였으며, 경찰이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임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하게 되었다. 그 외에 2008디딤2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 과정에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특성, 평소 생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수사 과정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한 점, 피해자와 가족을 동반하여 상담소에 내방함으로써 상담과 치료, 지속적 지원을 도운 점 등이 추천 사유가 되었다. 2008디딤3은 지적장애 및 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이 피해자 친부의 친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인지력이 낮은 피해자의 친부를 협박하여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끝까지 수사하여 기소되도록 한 광역수사대를 디딤돌로 추천, 선정하였다. 2016디딤2 또한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않았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이 상담소와 협력하여 직접 피해자가 치료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상담하고 소견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한 점이 추천 사유 중 일부로 포함되었다.

다음은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하거나 지원자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 조력을 지원한 사례이다. 2020디딤3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수사팀은 CCTV와 목격자가 없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탐문 수사, 인근 CCTV 모두 확인, 잠복 수사 후 가해자를 검거하여 긴급 구속하였고,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녹화에서 수어 통역사, 수어 중개통역사, 신뢰관계인, 진술 조력인을 동석하도록 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였으며, 사건 접수 후 성폭력상담소 및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재피해 방지,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거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수사 진행 과정 안내 등을 통해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 점이 추천 근거가 되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활용되어 디딤돌을 수상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소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청각 장애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다(2012디딤11). 이 사건은 적절한 절차와 법 해석으로 경찰, 검사, 재판부 모두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사건이 화제가 되며 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부상하자 광주 지방경찰청은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임에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수사를 재개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어 실행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시민감시단은 선정이유에서 피추천인들이 최초 고소 시점인 2006년경에는 장애인, 아동 등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 증거조사 시스템이 불충분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장애 관련 전문가의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 수사 환경이 변화한 점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유의미하게 보았다.

또한 공판 검사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기억력에 제약이 있는, 청각 장애 및 지적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게 되자, 대면 증인 신문 대신 영상녹화물을 통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증인 신문을 하게 된 이후에는 대책위 및 사건지원 변호인단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장애 특성,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하여 재판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비공개심리, 피고인 퇴정, 중계 장치를 이용한 증인 신문 등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피해자 증인 보호 조치를 시도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증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통한 이중 동시통역으로 증인 신문에서의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시민감시단의 디딤돌 선정은 이러한 노력들이 피해자들의 진술 증명력을 높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조사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측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들로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드나드는 것을 인식하고 비상벨 설치(2006디딤3), 같은 동네에 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자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분리(2012디딤1), 수시로 순찰 실시(2013디딤7),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경고(2023디딤1) 등의 대응을 한 경찰들이 디딤돌을 수상하였다.

## (2)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지적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피해 일시, 장소, 선후 관계, 피해 상황 등을 인식하고 회상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에서 진술 능력을 의심받는다.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아동 진술의 특성, 즉 피압시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 기억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있었던 일을 진술한 것인지 외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고려하도록 한다. 법원에서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① 일관성, ② 구체성 및 명확성, ③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④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⑤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⑥ 무고 가능성을 주로 고려한다.<sup>187)</sup> 일관성은 일부 진술에 비일관성이 나타나더라도 범행 방법, 내용, 당시 정황 등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의 세부적 묘사가 있거나 정형화된 사항 이상의 정보가 드러날 때 구체성 및 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up>188)</sup>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정형적인 내용 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장소, 방법 등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사자, 보호자, 지원자 등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걸림돌 사례에서 나타난다.

먼저 아동의 진술 특성을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적용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오염 가능성 등을 문제 삼은 사례들이다. 2016걸림4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에 대한 위력 간음이 문제 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항고하여 기소한 뒤 1심<sup>189)</sup>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법원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질문자에 의한 피압시성,

187) 김정혜(2015), 장애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6-275쪽.

188) 김정혜(2015), 247쪽.

1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30. 선고 2015고합320 판결.

상상과 현실의 혼동 가능성, 기억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지난 후 진술이 있었는지, 사실이 아닌 정보 제공이나 반복적 신문, 특정 답변 유도, 암시적 질문 등의 진술 오염 가능성이 없는지, 면담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하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 명확성, 세부 내용의 묘사 정도, 특징적 부분에 대한 묘사 유무,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sup>190)</sup>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 횟수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내용은 믿을 수 없으며,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신고 경위도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추천 단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지적장애의 특성상 장기기억이나 숫자, 셈에 취약하고 선후 관계를 기억하고 진술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 장기간 부모의 안정적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생활한 피해자가 친부인 가해자에 대하여 느끼는 양가감정 등을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각되었다. 항소심<sup>191)</sup>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미숙한 성인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횟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능력에 비해 피해 상황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험칙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증인의 증언에 반하며, 신고 경위가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다는, 1심과 같은 이유였다.

2008결립2는 재활작업장에서 재활 교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작업팀 소속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에 대해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례이다. 1심<sup>192)</sup>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을 아동의 진술에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아동의 경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 등이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사항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 등은 별로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일정부분에서는 일반인과

19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191)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3276 판결.

192)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고합278 판결.

별로 다르지 아니한 인지능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진술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재판부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피해 시간과 장소였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대낮에, 큰길가 또는 공개된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옷을 벗고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사회 통념상 은폐된 장소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가능한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오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에서 상담소 소장이 질문을 하고 검찰주사보는 단순히 진술을 조서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영상녹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1심 재판부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성폭력이 캄캄한 밤에 은밀한 골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방된 공간이든 밀폐된 공간이든 상황만 되면 일어날 수 있으며 단시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판결문의 논리가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비판하였고, ‘연애’, ‘사랑’ 등의 표현을 지적장애 피해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통상적인 용법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였다면서 항소하였고, 피해자를 지원하였던 추천 단체는 이후 항소심에서도 진정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항소심<sup>193)</sup>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sup>194)</sup>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2009디딤6).

위 사례에서 피해 시간과 장소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요소에 해당한다. 여러 사례에서 피해장소나 범행 방법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걸림2 또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차량 내부에서의 추행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시민감시단은 실형을 선고한 1심<sup>195)</sup>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sup>196)</sup>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전기사이자 시설장의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유사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유죄를 선고한 1심에서는

193)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노3336 판결.

19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838 판결.

195) 대전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2고단3890 판결.

196) 대전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노3204 판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고와 언어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추행을 당한 부위, 경위에 관한 핵심적 정보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정 반응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된 것으로 보기에는 생생하고 독특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점에서 추행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범행 일시 특징이 어렵고 월 단위로 특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며, 범행 장소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까지 도착하여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선탱이 되지 않아 내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범행 장소 또한 피해자의 집 근처가 맞는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전국 7,000여 명의 서명, 전성협의 법원 규탄 기자회견, 지원기관 탄원서 등을 상고심<sup>197)</sup> 단계에서 제출하였지만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다움’의 통념을 드러낸 판결들도 걸림돌 사례에서 나타났다. 2009걸림1은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이 문제 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나란히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가출하여 지하철역 인근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집으로 끌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고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sup>198)</sup> 법원은 성교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위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고인의 집에 끌려갈 때 양손을 잡았는지 팔을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강제로 끌려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행 이후 식사를 같이했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들었고, 피해자가 다소 말이 어눌하긴 해도 자신의 기존 주장에 부합하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는 반면 이전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듯한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는 등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남긴 메모가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9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228 판결.

1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9. 25. 선고 2009고합83 판결.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sup>199)</sup>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두 재판부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피해자 행동의 비합리성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능력과 신빙성을 증명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2016걸림5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머물렀으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있어 실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가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걸림돌이 돌아간 사례이다.<sup>200)</sup>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를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려 피고인과 멀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혼날 것만 걱정하여 부모님에게도,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무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지만 “계속된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병으로 인한 고통에 비해 경미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 피해가 처한 상황의 특성과 시각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합리성과 경험칙’만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불신하였다.

‘의사 표현을 잘하는’ 신체적 장애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고 본 사례도 있었다. 2019걸림10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물리치료사로부터 치료 도중에 추행을 당한 데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잘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왜 치료 도중에 추행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지, 공개된 장소인 치료실에서 어떻게 그런 추행이 가능한지를 의심하였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상 물리치료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신에게 필수적 의료를 제공하는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19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2725 판결.

2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합186 판결.

가 피해 상황에서 비언어 장애인과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을 비판하였다.

2019결립11은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거나 과거 딸에 대한 범행의 가해자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례이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지적장애인의 피해 경험을 당사자의 언어에 기반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살아온 과정, 사회적 경험과 관계 방식, 장애 및 진술 특성, 평소의 의사소통 방식, 진술 당시 심리상태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하게 듣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노력 없이 서로 다른 피해 사실의 진술이 비슷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두 허위라고 단정 짓는 태도는 '지적장애 피해자를 의사소통 및 사건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편견의 작동'이라며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항고하였으나 최종 기각되었다.

이상의 걸림돌 사례들에 비하여 디딤돌 사례들은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어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성이나 고유성이 발견된다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진술 조사 방법의 적절성이나 진술 내용의 경험칙 부합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장애 특성, 장애와 관련된 진술 특성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8디딤4는 항소심<sup>201)</sup> 판결 재판부가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로, 법원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일상적인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고, 범행 시각, 장소, 피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어 답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표한 것을 보아 무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장애 특성상 일시 특정을 위해서는 다소간 폐쇄적인 질문이 불가피하고, 유도신문에 의한 답변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자의 특정에 의하여 '거실'로 특정된 것일 뿐 피해자는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sup>202)</sup>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23디딤6은 지적장애가 있는 실습생에 대한 복지관 바리스타 강사의 위력간음죄를 인정

---

201) 부산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173 판결.

20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293 판결.

한 1심 법원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가 복지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 일시를 정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판결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종종 기각하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진술 내용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추천 단체는 그동안 장애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보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더 흔하였던 반면, 이 판결은 명시적이지 않은 감정 표현이나 상황에 대한 내심의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맥락을 유의미하게 판단 근거로 채택하였으며,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여성 성폭력의 특성, 일상 대화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비밀상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단답형의 단편적인 발화가 많을 수 있는 점 등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였다는 점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

추천 단체는 최근 들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판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판결은 좋아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부에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들며 교제하던 사이이거나 호감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호감이 있었더라도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호감을 인지하는 능력도 미흡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을 받아들여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데 대하여, 다른 판결문보다도 더욱 면밀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분석한 점을 강조하였다.

2009디딤6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2008결림2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신빙성 판단을 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볼 때 허위진술의 이유가 없으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의 진술에서 비밀관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상 과정에서 혼동이나 착오가 있었을 수 있고 추행 당시 들은 말, 추행 부위,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범행이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굳이 은폐된 장소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통행이 적거나 한적한 도로, 주차장 등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원심이 '피해자는 피해 일시와 피해 사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 등을 별로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정한 부분에서는 일반

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지능력을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지적 능력과 인지력이 낮아 시간, 장소 개념이 희박하고, 언어 구사력 부족으로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축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종종 상대의 질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디딤돌 사례들은 비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장애인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장애 특성과 관련된 비일관성인지를 살피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에 비일관성이 있더라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면 신빙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신빙성은 더 높게 평가된다.

2014디딤5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된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과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원장이 시설 생활인 4명에 대하여 가해한 사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문제 되었다.<sup>203)</sup>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같은 해에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1심 법원은 위 2016결립4에서 채택한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마찬가지로 전제한 다음, 진술의 비일관성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진으로 피고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하여 범행을 묘사하는 등 범행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다.<sup>204)</sup>

203) 전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23 판결.

204)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2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고기

2010디딤4 또한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에 비밀관성이 나타나더라도 신빙성과 증명력 판단에서 진술 내용 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 항소심 법원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1심<sup>205)</sup>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타인의 영향을 받은 진술일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의 영향 가능성, 피해자 스스로 진술의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답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증에 부족함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항소심<sup>206)</sup>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그 진술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고 경험 범위 내에서의 일상생활 외에 새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 장소나 시간, 횟수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은 분명히 알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sup>207)</sup>

추천 단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특성과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놓인 사회·심리적 관계,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며, 이번

---

각으로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 27. 선고 2014노16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2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고단2807 판결.

2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노1241 판결.

207)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합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거친 후 항소심과 유사한 이유를 들어 유죄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6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76 판결.

판결이 지적장애 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벌을 가능하게 한 판결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 (3)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판단

1997년 장애인준강간죄에 정신적인 장애가 포함되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정신적 장애로 저항할 수 없음' 요건의 해석은 매우 협소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해석을 가져와,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또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다.<sup>208)</sup>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항거불능의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러한 판결들은 원치 않는 성폭력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이 위축되어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이나,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거부하였다는 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사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혼자서 등교나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나, 성경험이 있거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등의 사정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무죄 판결들이 연달아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2004년에는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sup>209)</sup> 재판부(2004결림5)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를 선고한 다른 사건 1심<sup>210)</sup> 재판부(2004결림4)가 나란히 걸림돌에 이름을 올렸고, 두 판결은 무죄 판단의 근거도 비슷했다. 먼저 2004결림5 사건은 1심<sup>211)</sup>, 2심<sup>212)</sup>에서 유죄로

---

20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209) 부산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425 판결.

210) 울산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3고합275 판결.

2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10. 31. 선고 2003고합36 판결.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sup>213)</sup>에서 장애인준강간이 아닌 심신미약자간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판결이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평소 겁이 많아 큰소리를 치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신체 조절 능력도 있었고, 피고인이 때려서 무서워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면서,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심신미약일 뿐 항거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미약자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았다.<sup>214)</sup> 추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적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데 대한 법원의 이해 부족을 비판하였다.

2004결립4의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들어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13세일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피해를 입고, 성폭력의 결과 피해자가 임신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장애인준강간죄에 적용하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준강간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 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기는 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걸어서 등하교를 할 만큼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성교육을 받아 강간과 생리, 낙태의 의미를 알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폭행, 협박을 사용한 적이 없고 평소에 피해자를 혼낸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하였다.

1심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 판결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항소심<sup>215)</sup>에서도 같은 대법원 판결(2003도5322 판결)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다음, 원심

212) 부산고등법원 2004. 2. 9. 선고 2003노894 판결.

21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214) 다만 사건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죄가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되기 이전이었고,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간음죄는 친고죄였다.

215)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에서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보았던 사실관계들 외에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경위와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사회적 성숙도에서는 동료 학생들과 비슷하여 일반 학급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학비 면제를 위해 특수반에 진학한 것이라는 점 등을 추가하여 무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를 용인하는 데 대한 비판은 몇 년 뒤 대법원 판단기준의 변화로 이어졌다. 2007디딤1은 2004결림4의 상고심으로서, 1심과 2심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디딤들로 선정된 대법원 재판부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해석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즉 피해자가 장애 자체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저항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야 하고,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나 주변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위 대법원판결은 ‘장애로 항거불능’의 협소했던 판단기준을 확장하고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저항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0디딤5는 위 2005도 2994 판결을 인용한 하급심 법원 재판부에 디딤돌이 돌아간 사례이다. 추천 단체는 이 사건 재판부가 장애 자체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반 환경 탓에 반항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항거불능으로 보아야 함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성폭력범죄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극단의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저항을 강요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시각과 장애 특성에 대한 무지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소 지능이 떨어질 뿐 지적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거나 '성적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위 2005도2994 판결의 판단기준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질환, 지적 능력이나 일상생활 능력,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럿이 자는 병실에서 간음한 사정과 범행 발각 경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거부 또는 저항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다.<sup>216)</sup>

법원이 고려한 사항들은 피해자가 10년 이상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47~49 정도의 지능, 만성화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인격 퇴행,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일상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라고 회신했지만 법정 증언 시에는 평소 의존 보호 관계에 있던 보호사인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보호사로서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폭행,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럿이 자고 있는 병실 안에서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간호조무사에게 발각되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이었다. 단지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 2005도2994 판결 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은 계속되었다. 2009년 걸림돌로 선정된 1심<sup>217)</sup> 재판부(2009걸림3)에서는 2005도2994 판결과 더불어 「형법」상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기준을 가져온 2003도5322 판결을 동시에 판단기준으로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장애가 "성관계의 의미를 모를 정도의 고도의 장애"에 해당해야 장애인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장애로 항거불능 임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기만 하면 대체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협박, 위계,

---

216) 대구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167 판결.  
217) 수원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고합351 판결.

위력의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묻지 않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관계의 의미를 모를 정도의 고도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신체 건강하고 지적장애 3급 수준이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성관계의 결과도 알며, 성관계 여부 및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보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2013년, 대법원은 위 2005도2994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장애인준강간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면서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요구하게 된다.<sup>218)</sup> 이 판결은 1심<sup>219)</sup>과 2심<sup>220)</sup>의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sup>221)</sup>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성행위, 임신,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 제안을 여러 번 완곡하게 거절하였고, 자취하며 특별한 보호자 없이 대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2012도12714 판결이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걸림돌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2012도12714 판결은 장애인준강간죄 사건에 다수 참조되면서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어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다.

다만 2018디딤4는 2012도12714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를 인정하였는데, 이 사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으로도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경우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

2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2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2011년 3월 범행으로 같은 해 11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이다.

220)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2노1914 판결.

221)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1282 판결.

못하고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아내의 반찬가게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일당으로 5,000~1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대법원판결뿐 아니라 법 개정 또한 '장애로 항거불능'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2011년 11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형법」상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장애인준강간죄에 적용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전에는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을 해석함에 있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해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비판되었고 그로 인해 위 2005도2994 판결에서 장애 자체의 정도 외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면, 2011년 개정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아예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2016결립5는 이 조항이 적용된 무죄 판결 사례이다.<sup>222)</sup> 2012년 10월의 범행에 대하여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앞이 뚜렷하게 보일 뿐 사물이나 색 등을 구별할 수 있고, 혼자 택시를 탈 수 있고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성관계의 의미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거부 표현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표현·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애인 준강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례는 시각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가 비일상적 상황인 성적 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2012년 12월,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를 범한 것'을 삭제하고 예전과 같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수정되었으며, 같은 개정에서 항거불능에 '항거 곤란'을 추가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대의 법 개정으로 장애인성폭력범죄의 처벌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 장애

---

2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합186 판결.

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중에서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만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특히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장애인 준강간죄로 기소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었다. 그 외에 적용이 가능한 심신미약자간음죄(「형법」 제302조)는 당시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 기각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장애인성폭력범죄의 판단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2011~2012년 시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 피감독장애인간음 등의 범죄가 추가되면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자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기소 조항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입증되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덜했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에도 '항거불능' 외에 '항거 곤란'이 추가되면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었다.

'항거 곤란'이 추가된 개정 이후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하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죄가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같은 조 다른 항의 장애인 강간, 장애인강제추행이나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등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이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다.<sup>223)</sup> 장애인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시민감시단이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 목록을 보면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판단보다도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쟁점이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도 장애인성폭력범죄의 '장애'를 협소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2023년에 선고된 2021고합321 판결<sup>224)</sup>은 위 2022년 대법원판결(2020도13672 판결)의 판단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장애가 제5항 장애인 위계·위력간음죄에서 요하는 장애보다 더 심한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223)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224) 광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고합321 판결.

하여 장애인준강간죄의 장애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어 법원은 제5항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장애’는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4항에서의 “항거불능”은 반항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항거 곤란”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장애인 위계·위력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장애인준강간죄는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를 요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 (4) ‘위력’의 판단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사례 중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이 쟁점이 된 사건은 드문 편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히 ‘위력’을 물리력의 행사로 좁게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판결했다는 이유에서 디딤돌이 되었다.

먼저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심신미약자간음죄(「형법」 제302조)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은 없어서 위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sup>225)</sup>에서, 항소심 법원이 ‘위력’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2010디딤4). 항소심<sup>226)</sup> 법원은 심신미약자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2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고단2807 판결.

2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노1241 판결.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227)</sup>는, ‘위력’ 해석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비록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피고인의 지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추천 단체는 많은 사례에서 ‘위력’이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관계로 인한 권력적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고 유형의 폭행·협박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1심 판결 또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던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성폭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하여 지적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였음을 의미 있게 보았다.

2023디답6은 피감독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죄의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처럼 법적 권한도 없는 단순 사회복지요원에 불과하여 복지관에 소속된 ‘종사자’라도 볼 수도 없고, 단지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장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적, 사실적 권한이나 재량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교육생으로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불렀다. 법원은 법 조항상 “장애인 시설에서의 직책, 보수 지급 유무,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라면 제7항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종사자가 업무상 접촉하게 되는 장애인은 ‘보호, 감독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228)</sup> 또한 ‘위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를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는 교육생으로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호칭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상대방의 행동의 의미나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한 점, 성교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무섭고 불안했고 원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한 점, 첫 성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22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2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고합358 판결.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약 6년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추천 단체는 위력을 물리적 유형력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고 '중사자' 기준에 대해서도 협소한 해석을 하지 않은 점을, 이 사건 재판부를 디딤돌로 추천하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형법」과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어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외에도 2008년 시행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가해자에 대한 부가 처분을 담은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내용과 법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근거 및 내용**

피해 유형	법명	죄명	형량
강간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살인, 치사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강간 등 살인, 치사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성보호법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 유형	법명	죄명	형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성폭력 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 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5년 이하 징역
		제297조 및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3년 이하 유기징역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제1항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강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 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 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준 유사 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297조, 297조의2, 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 유형	법명	죄명	형량
준강제 추행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준 유사성 행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제4항 준강간,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등 간음, 추행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5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가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 등 가능, 추행	예에 따라 처벌
성희롱	아동 복지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17조 제2 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원 이 하의 벌금

형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sup>229)</sup>.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처벌 규정과 특례 조항은 그 시기별 특정 사건을 둘러싼 강도 높은 처벌정책과 부가 처분, 아동 대상 특별 보호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개정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의 변화에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229) 2011년 성폭력처벌법 및 2012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2020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실효성은 늘 문제가 되어왔으며, 어떤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피해로 규정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말 시기까지는 중대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특별대책들이 마련되어왔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인식하에 양벌규정도 상향되어왔다.

그러나 높은 처벌 수위는 실질적인 처벌의 확실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유죄 입증을 강화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 신빙성의 문제와 진술 증거에 대한 탄핵 방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영상진술 녹화영상물 증거인정 위헌 결정(2021결림3)은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과정의 미비와 이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의 충돌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6항에 대해 위헌 6대 합헌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sup>230)</sup>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6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 증거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시단 디딤돌 걸림돌 사례들은 위와 같은 법 제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유죄 증명 책임의 강화에 따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 2) 사례 분석

### (1)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한 강한 처벌

2008디딤6은 6세의 아동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3년 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선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으나 상당 시간 대거나 자신의 입을 맞추

---

230)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판결.

는 추행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단순 추행죄에 해당하나, 그 죄질을 보면 비록 삽입에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 또는 손가락을 삽입하는 특수한 강제추행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에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이전으로 해당 행위에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1심 재판과정에서의 부모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인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사회와의 일정 시간 격리하도록 실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이 유인되어 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사건<sup>231)</sup>이 발생하여 아동 대상 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높았다.

2011디딤6 판결은 처음 만난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강간한 사건에서 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이다. 해당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장면에 대한 세세한 심문을 진행한 피고인 측에 의해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추가로 겪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는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증거능력의 인정이라는 재판 실무의 문제를 낳았다. 물적증거나 증인이 전무한 성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결국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한 유무죄판결의 쟁점이 된 것이다.

## (2)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 진술 신빙성 부정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2006걸림1은 2003년 3월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진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민사소송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은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만 3세 정도였으며,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원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대책위원회<sup>232)</sup>를 구성하여 사건지

231)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또는 가해자의 이름을 딴 정성현 사건으로 불린다. 2007년 12월 25일 안양에서 당시 만10세, 만 8세의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되었다가 2008년 3월 손상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가해자인 정성현은 귀가하던 초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원을 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쟁점은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이 법정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였다. 특히,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 피해 아동 중 일부는 성기 부위 열상 진단을 받았고, 심리평가와 정신의학과 소견상 신체적 상해에 따른 두려움, 성적 추행 경험에 따른 불쾌감과 거부감 등의 경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검찰청 진술 분석에서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진술에 의문점이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에 걸맞은 객관적 상황이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춰 진술만으로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의학적 소견 관련, 외상의 경우에는 초기 진찰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점과 이미 많은 검사로 아동이 진술을 회피하고 양육자가 보완적인 검사를 받아 소견서가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어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동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러한 인식은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인 경우, 양육자에 의한 종용 내지는 두려움으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2006걸림2는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이 학교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모의 강압적인 추궁을 받고 혼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즉흥적인 생각에서 교감을 지목함으로써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의 진술 능력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들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이 양육자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여 있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고, 가해자를 교감 선생님이로 지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아동, 장애라는 중첩적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위치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

232) 2003년 5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후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 포함 12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된 공동대책위로 구성되었다. 공대위는 경찰과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고, 대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변호인단 구성,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사이버 서명운동,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카페, 가해자 및 가해자 소속 교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 3. 친족에 의한 피해

#### 1) 친족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강간 및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비친고죄로 신설되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친족에 의한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sup>233)</sup>은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존속이나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대법원은 “성폭력 방지법은 존속 또는 친족이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의 연장자가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며, 법률상의 존속이거나 아니면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 양자의 양부 등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면서 법정 혈족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가 아니라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sup>234)</sup>고 판단했다. 이후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sup>235)</sup>과 2촌 이내의 인척<sup>236)</sup>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였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 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포함<sup>237)</sup>되며, 가해자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 형성되는 인척 또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sup>238)</sup>한다. 이후 2010년 성폭력 처벌법 제정으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의 범위 또한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sup>239)</sup>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동법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23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46 판결

234) 한겨레신문,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성폭력법 처벌 대상 아니다”, 임법기자, 1996.2.25.

235) 4촌 이내의 혈족은 친부모, 의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친형제, 친자매, 조부모, 이모, 외삼촌, 백숙부, 고모, 증조부모, 이종, 외사촌, 중형제, 고종, 고조부모를 말한다.

236) 2촌 이내의 인척은 형부, 제부, 의형제를 말한다.

237)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23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239) 4촌 이내의 인척은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혈족 및 인척, 동거하는 친족까지 확대되었다(〈표 13〉 참조).

〈표 13〉 성폭력 처벌법상 친족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내용

법률안	죄명	형량	친족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702호 (1994. 4. 1 시행)	제7조 친족에 의한 강간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343호 (1998.1.1 시행)	제7조 친족에 의한 강간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 4. 15 시행)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친족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형벌 규정에 대해서 2015년 친형의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 대한 위헌 청구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친족 관계라는 특별한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법관에 의한 양형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친족 성폭력의 가중처벌을 합헌으로 판단<sup>240)</sup>하였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연령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부여된 원가족에 대한 법적 고소의 부담, 비가해 가족들의 생계 문제 등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관계 등의 고려 때문에 고소에 이르기에는 여러 어려움

240)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453 결정.

이 존재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한 입소 아동·청소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sup>241)</sup>, 피해 당시 나이는 10세 이하가 36.4%로 가장 많고,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13세 이하 나이가 전체의 78.5%로 피해 당시 아동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13세 이하에 입소한 비율은 25.6%(10세 이하는 5.4%)에 그쳐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대응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결과,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5.2%가 피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결과, 친족 성폭력 상담 중 57.9%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9년 친족 성폭력을 다룬 모 방송사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당 방송국 앞 등에서 긴급 액션을 하면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자발적인 모임(공폐단단)<sup>242)</sup>이 구성되어 매달 마지막째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당사자들의 말하기도 이어졌다. 이러한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에 지원단체가 함께 연대하면서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회기 때마다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내지는 15년 연장하거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지난 20년간 시민감시단에서 선정한 사례 중에는 피해가 아동기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행한 수사기관을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가 많았다.

241) 허민숙(2024), 감춰진 피해자들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42) 공폐단단(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인 단단한 모임)은 2019년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부성애의 두 얼굴’(1193회)>에서 친족 성폭력을 ‘충격적’인 ‘소재’로만 삼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 ‘이미지’로만 타자화하는 시선에 분노하며 결성되었다. 이후 공폐단단은 매마토 시위(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며 평범하지 않은 가족에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사례 분석

### (1)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디딤돌로 선정된 친족 성폭력 피해의 경우 절차상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 수사기관이 다수 선정되었다. 재판부가 선정된 2013 디딤3의 경우에도, 재판·절차상 판사가 친부에 의한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과도한 증인 신문 사항에 대한 생략을 요청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제지하는 등의 소송지휘권을 발휘한 사례였다.

2007디딤3은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이 직접 방문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친족 성폭력 사례를 지역상담소와 협업하여 도시지역에 현장 출동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가해자를 검거하여 구속기소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3디딤6은 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처 양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보다는 신뢰하는 학교 상담교사가 피해 사실 신고를 돕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도록 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친족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절차상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디딤2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로 지역경찰서에 성폭력 피해가 신고 접수되어 광역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사건이 인계되었다. 그러나 광역경찰청에 사건이 인계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출석 불응으로 피의자신문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를 알게 된 지역경찰서에서 피의자 검거반을 자체 편성하여 타 지역 잠복 탐문, 차량 동선 등의 수사로 검거에 이르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실무 지침상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광역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진행하게 되어있어 광역수사대가 전문성은 있으나 지역의 경우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수사가 늦어지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가해 가족의 회유에 피해 사실 반복이나 고소 취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2) '사실적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의 일관성',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디딤돌로 선정된 바 있다. 2006디딤5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판결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 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sup>243)</sup>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되어 친족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점이 되었다.

2012디딤10은 13년간 친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친부의 1심 무죄선고를 뒤집고 7년 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sup>244)</sup>가 선정된 사례이다. 2심 재판부는 현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장기간 피해를 겪고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성폭력 피해라고 인지하게 된 과정에 관해 서술하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09년 우연히 '난 싫다'고 말해요'라는 성교육 지침서를 읽고서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이**

24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244) 대구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120 판결.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게 되었고, 이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경찰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중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친아버지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어릴 때의 인식과 이후 그 인식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기보다 피해자를 달래면서, 때로는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다. 나중에 남편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른 남자들과 하면 헤픈 여자라고 소문이 날 수 있다. 피고인은 정관 수술을 해서 임신도 안된다. 피고인은 가족이니까 안전하고 끝까지 피해자를 지켜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경험해 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접촉이 잘못된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는 데 매우 큰 장애를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례와 법리는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겪지 않은 일이라면 꾸며서 말할 수 없는 특정된 피해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죄판결을 이끄는 데 기준점이 되었다.

### (3)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처벌불원 배제하고 친족 성폭력 특수성 고려

지난 20년간, 친족 성폭력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의 유의미한 변화를 꼽으라면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가해 가족들로부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2020디딤4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고소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시작된 비가해 가족들로부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를 선정한 사례이다. 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피해

자의 엄마가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상고심에서는 친족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sup>245)</sup>

친부로부터 강간 피해를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탄원서를 양형상 특별감경 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대법원 판례<sup>246)</sup>도 위의 판결을 인용하며 판시하였다.

#### (4)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

그러나 오히려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오래된 편견 중의 하나는 친족 성폭력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태도이다. 믿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게 만들고 피해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2012결림1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제기하여 유죄 입증의 역할을 해야 할 공판 검사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약 4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성인이 되어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 측에 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 카카오톡, 카드나 편지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지원단체 활동가와 법률 조력인을 마주친 공판 검사는 피해자에게 “너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귀는 거 맞지? 카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말해

24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24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56, 2020전도74 판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당시 함께 동석한 지원단체 활동가와 법률 조력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검사실에 항의 공문을 보내 공판 검사는 교체되었으나, 공판 검사가 친족 성폭력 특수성을 간과하고 더 나아가 친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17결립6는 외국 국적의 처제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한 형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최협의의 폭행·협박 여부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피해자는 친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아빠, 오빠와 함께 입국하였다가 결혼식 4일 전 집에서 형부에게 강제추행을 겪고 강간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다른 방에서 피해자의 아빠와 오빠가 자고 있었으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몸부림을 쳤다거나 겁이 나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누워있었다거나 이후 울다 잠이 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신에게 닥친 절박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에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 또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247</sup>. 결혼을 앞둔 친언니의 이후 삶에 대한 걱정과 성폭력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질 다른 가족들을 고려하여 강하게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었다.

#### (5) 친족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과 친족 관계 내 ‘위력 간음’ 처벌 공백 문제

친족 성폭력의 법체계 변화로 친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왔으나, 사실혼 관계의 친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이를 친족 성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들이 걸림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결립3은 피해자의 모친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

247) 제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합63 판결.

어머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피고인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후 함께 거주를 이전하며 한방에서 지냈는데, 재판부는 함께 일하는 일부 종업원들도 부부 사이로 생각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함께 가족 행사에 동석하고, 이혼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모친의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나 동거남으로 행세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뿐이라는 법정 진술을 살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sup>248)</sup>.

한편,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로부터의 강간 피해가 발생한 친족 성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의율한 판결도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2010걸림1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수차례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으로 일부만 인정한 재판부를 선정한 것<sup>249)</sup>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기소된 강간 피해 8회 중 단 1회만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협의설에 근거한 강간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만 18세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가출 5년 만에 친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돌아온 피해자를 할머니가 싫어한다며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음에도 친족 성폭력으로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를 판단하였다. 이 사례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성폭력에 대한 법규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의 판단기준은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 협박 유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 내지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는 친족 성폭력은 「청소년성보호법」위력 간음으로 판단한 한계가 있다.

---

248) 광주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76 판결.

249) 대전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고합92 판결.

## 4. 준강간

### 1) 준강간 처벌 규정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교행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또한 각각 유사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형법」 제299조). 대법원은 준강간죄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고,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sup>250)</sup>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처벌 규정을 따로 두는 점을 볼 때, 심신상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다.<sup>251)</sup>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 약물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 깊이 잠이 들어 대응할 수 없는 상태 등을 이용한 일방적인 성교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본다.

### 2) 사례 분석

#### (1) ‘저항했으면 항거불능 아님’

결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을 먼저 살펴본다. 2015결림3은 강간으로 기소하면서 준강간으로 예비기소하여 1심에서 준강간의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결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추천 단체는

---

25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25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등.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피고인이 적극 이용하여 간음한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비판하였다.

1심<sup>252)</sup>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 능력 및 조절 능력,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았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꿈을 꾸는 줄 알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의사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면서 준강간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 경위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를 진술이 다소 불일치할 뿐 신빙성을 좌우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해 직후 피해자가 일행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았다.

반면 2심<sup>253)</sup> 고등법원에서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넘는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소리 지르고 저항한 점을 진술하는 등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직후 피해자가 일행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겁을 먹은 상태였고 사건의 경위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112에 신고한 점을 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몰랐을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후 행동도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sup>254)</sup>에서는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범행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원치 않는 성교였음을 주장하였고 두 법원이 주목한 지점은 달랐다. 준강간의 유죄를 선고한 1심은 준강간에 대한 판단에서도 성교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판단에 포함하였다면, 2심은 오로지 준강간죄의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원치 않은 성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도 성립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교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

252) 부산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합526 판결.

253) 부산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노357 판결.

25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6722 판결.

## (2) 성적 의미로 해석되는 피해자의 행동

2017걸림7은 준강간에 대한 불기소 사례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의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피의자가 성교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기억나지 않고, 피의자가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한 것이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교했으며 모텔에서 나올 때도 손을 잡고 나오는 등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더불어,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노래방, 계단, 모텔 등에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 구토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껴안고 키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의자와 손을 잡고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외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신체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항거불능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목을 껴안고 스킨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진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검사를 걸림돌로 추천한 단체는, CCTV에 비춰진 피해자의 행동을 검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주목하였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목을 감싸 안은 행동,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등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추천 단체는 이처럼 술을 마신 여성의 신체접촉 행위를 성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가해자를 유혹했다거나 가해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이었다고 봄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하였다.

### (3) '가장 보통의 준강간'

2017결림8에서는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 의한 준강간 피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 결림돌로 선정되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교 거부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에도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약 4시간 30분가량 머물렀으며, 피의자가 잠이 깬 후 성교하였고 피해자는 성교 직전 피의자에게 콘돔을 사용해달라고 말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사고 귀가하였고, 범행 이틀 뒤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을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항고 이유서에는, 피해자는 피의자가 클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미 만취 상태로 성교나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피의자는 성교 목적으로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장 성교할 생각도 없으면서 의식이 없으며 생리대까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길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사용한 콘돔이 버려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검사가 추정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모텔에 머물렀고 그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도중 옷을 입고 잠이 들었던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교 시도를 거부하였으나 피의자가 강제로 성교를 시도하여 콘돔이라도 사용하라고 말한 것이라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꺼내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다 제지당했다는 점,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름을 비롯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여 정보를 남기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편의점에 가서 결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검사들이 결림돌로 선정된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준강간미수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이 있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깨지 않아서 시체와 성교하는 것 같아 중단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준강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있었던 재판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가

각각 2020년, 2023년 걸림돌로 선정되면서 같은 사건에서 총 3차례의 걸림돌이 나왔다.

항소심<sup>255)</sup>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친구들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하는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러한 대화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강간이라 주장하는, 잠에서 깬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교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도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2020년 7월, 163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준강간 사건의 현실과 법의 괴리, ‘피해자다움’ 통념이 수사와 재판에 적용되는 문제를 비판하였다.<sup>256)</sup> 뒤이어 85개 상담소의 750개 준강간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의견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6,488명의 연서명 탄원서, 상담소 활동가 및 피해자와 집단상담을 함께 했던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sup>257)</sup> 그러나 대법원은 몇 년 동안 판결을 미루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를 확정했다.<sup>258)</sup> 대법원판결 이후 공대위에서는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술이나 약물에 의한 준강간 사건을 다루는 수사 및 사법기관의 편견 및 통념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다.<sup>259)</sup>

---

255)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1837 판결.

256) 사단법인 평화의 샘, 2020. 7. 7., [기자회견문]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https://peacewell.org/기자회견문-피해자의-시간은-여전히-2017년-5월-5일이다>.

257)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22. 3. 2.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https://peacewell.org/wp-content/uploads/2022/03/사후-기자회견보도자료\\_220302.pdf](https://peacewell.org/wp-content/uploads/2022/03/사후-기자회견보도자료_220302.pdf).

2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363 판결.

259)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23),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4)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결림돌 판결들에 비하면 2016디딤6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동안 추행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자백하여, '심신상실' 해당 여부의 다툼은 덜 한 편이었다. 이 사건은 준강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로 재정신청을 하자 죄명을 변경하여 준유사강간으로 공소제기 명령을 한 고등법원을 디딤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성교였다고 주장했고, 처음 피해자 옆에 누울 때는 성교의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옷속으로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범행 이후 피의자의 집에서 라면을 먹거나 피의자에게 이모티콘을 담은 문자를 보낸 고소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 협박이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데 불응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합의 성교 여부가 모호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의자가 인정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피해자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 명령을 한 것이다.

이후 사건이 공소 제기되어 1심<sup>260)</sup>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준유사강간의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2017디딤5).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사건 직후 성교했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끓여준 라면을 먹고 피고인의 차로 귀가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지만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당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고, 며칠 후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5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딸을 둔 유부남이었던 점,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건 직후의 성교는 피해자의 호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범행

---

260)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합691 판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노424 판결.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성폭행으로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거리 등으로 인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혼자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낸 문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며 이모티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보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 재판부를 디딤돌로 추천하였던 단체는 준강간 사건의 재판에서 대개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피해자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점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하여 준유사강간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를 성교에 대한 합의 의사가 아닌 폭행, 협박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1심 법원이 준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근거 중에는 사건 직후 성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교에 나아갔으며, 피해자는 술이 덜 깨어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교하게 되었고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점 등을 보면 서로 호감을 갖고 성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끝내 기소되지 못한,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교행위가, 성폭력범죄로 명명되지 못하고 단지 다른 범행의 증거로만 참조되었음을 보여준다.

##### (5) '패싱아웃'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항거불능 인정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는지와 같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를 질문하는데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거부를 성폭력이 아니라 '항거불능 아님'의 근거로 해석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요구하는 판결들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 동의하였으면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을 제기하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의 방어 전략이 적극 활용되고,<sup>261)</sup> 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준강간 재판에

대한 비판도 적극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2021년에는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확대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2021디딤6은 1심<sup>262)</sup> 법원이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법리를 정립한 대법원 재판부를 디딤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2심<sup>263)</sup> 법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심에서 대법원<sup>264)</sup>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 “패싱아웃(passing out)”을 구별하여 후자를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의식의 상실에 달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재판부는 블랙아웃은 혈중알코올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편적이거나 전면적인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더라도 기억 형성의 실패만이 야기된 경우이므로 인지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 상실로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261) 박아름(2017),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의 판결 동향,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한국성폭력상담소, 14쪽.

2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675 판결.

263)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26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이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느 순간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여 심신상실 등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고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후 파기환송심<sup>265)</sup>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심의 실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법원판결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준강간도, 강간도 인정되지 못하였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권오결(2021)에서는 이 판결을 “실질적으로 비동의간음죄를 기초로 하여 준강간죄의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sup>266)</sup> 대법원 재판부를 디딤돌로 추천한 단체는 그간 음주로 인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은 배제한 채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기억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면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가 이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으로 단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 판결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유죄 선고를 한 점을 유의미한 지점으로 평가하였다.

265) 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노822 판결.

266) 권오결(2021), 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66, 163쪽.

(6) '정상적 상태였다면 동의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021디딤4 또한 2021디딤6의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면서 준강간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디딤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 상담소에 상담하고 사건을 신고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와 진료를 받았다. 군청 공무원이었던 가해자는 며칠 뒤 직위해제 되었으나 군수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일탈로 설명되었다. 이에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면담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공판 진행 과정에서 1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디딤돌로 선정된 1심<sup>267)</sup>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단순한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속옷을 벗거나 이에 동의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사실을 이성적 호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인의 일방적, 자의적인 해석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애정 행위였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5. 디지털 성폭력

### 1) 디지털 성폭력 법제화 과정 및 보호법익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범정부 정책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기존 성폭력 개념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스토킹, 신상정보 및 성적 이미지 유출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디지털 장비 및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넘어 형태와 방법을 달리한 신체를 대상

---

26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합15 판결.

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sup>268)</sup>

디지털 성폭력 중 가장 먼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행위는 일방적인 성적 표현 또는 이미지의 전달 행위였는데,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제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 속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신설되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의 범죄 속성이 고려되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공연음란죄보다는 높은 법정형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2020년 개정<sup>269)</sup>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로서의 속성을 가진 이른바 ‘몰카’ 범죄가 등장함에 따라, 1998년 개정<sup>270)</sup>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화하였으나, 이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포로 인한 피해가 다양화되면서 처벌의 흠결이 발견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개정되었다. 촬영행위만을 규정하여 유포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개정<sup>271)</sup>을 통해 촬영 이외에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영리 목적의 유포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나 섹스팅 이미지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불법 촬영이 아닌 동의한 촬영물에 대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문제 되어, 2012년 개정<sup>272)</sup>을 통해 촬영물의 유포행위로 반포·판매·임대 이외에 ‘제

---

268)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5-52 쪽 참조.

2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5. 19.]

2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593호, 1998. 12. 28., 일부개정, 시행 1998. 12. 28.]

2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9호, 2006. 10. 27., 일부개정, 시행 2006. 10. 27.]

2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시행 2013. 6. 19.]

공'이 추가되었으며, 촬영 당시에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행위를 비동의 촬영 및 유포행위보다는 법정형을 낮추어 신설하였다. 그 이후에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 아닌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나 1차적인 촬영물이 아니라 촬영물을 재촬영하나 이를 복제한 복제물인 경우 등 처벌의 흠결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2018년 개정<sup>273)</sup>을 통해 제1항을 비동의 촬영행위로, 제2항을 비동의 유포행위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신체로 확장하고, 제2항의 비동의 유포행위의 대상을 촬영물에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확장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성착취로서의 속성이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되면서 2020년에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에 대한 처벌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디지털 성폭력 범죄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합성물이 더욱 정교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sup>274)</sup> 이를 통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등을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과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디지털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범죄화하였다.<sup>275)</sup>

가장 최근 개정은 편집물 등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의 정비인데,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촉발된 개정이다.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이 2020년 신설되었으나 법정형이 다른 디지털 성폭력에 비해 낮고 제작 및 유포행위 이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 공백이 문제 되면서 <표 14>와 같이 2024년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소지 등 처벌 규정과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의2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2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8. 12. 18.]

2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시행 2020. 6. 25]

2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5. 19.]

〈표 14〉 디지털 성범죄 개정 사항

2006년 개정 (구 제14조의2)	2012년 (제14조)	2018년 (제14조)	2020년 (제14조 내지 15조)	2024년 (제14조의2, 1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 유포행위 추가(반포, 판매, 임대, 전시 및 상영)</li> <li>•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행위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촬영물의 반의사 유포행위 추가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촬영물의 유포행위 추가</li> <li>• 촬영물의 복제물에 대한 유포행위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신설</li> <li>• 상습범 기중처벌</li> <li>•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신설</li> <li>•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신설</li> <li>• 허위영상물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li> </ul>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익에 대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성품속의 보호로 제시해왔다. 우선 판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276)</sup>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비동의 촬영행위에 해당하는 제1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합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277)</sup> 그러나 합의된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까지 포함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포함하게 된다.<sup>278)</sup>

이에 따르면, 사생활과 관련된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국한되지 않는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전

27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27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278)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한 성폭속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이다.<sup>279)</sup> 이때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신체적 성폭력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차이가 있는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성적 자유를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판시하였다.<sup>280)</sup>

## 2) 사례 분석

### (1)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소한 법 해석 및 양형

디지털 성폭력 역시 신체적인 침해를 동반하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침해법익에 대한 이해 없이 규범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규정된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축소 해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해당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에 비추어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 범죄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종합판단이라는 기준은 법관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다.

2008걸림5는 지하철 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단독재판부이다. 1심 판결문<sup>281)</sup>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동안 법원은 성기 부위,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만이 집중적

279)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28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2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5. 선고 2007고정1585 판결.

으로 촬영되거나 옷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음화반포죄에서의 음란물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기 및 노출에 초점을 두는 태도이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이고, 건전한 성풍속 침해인 음화반포죄에서의 음란물 판단기준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식이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범죄이다. 시민감시단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이 상업적 포르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으로써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음란성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를 걸림돌로 판단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협소한 해석의 문제는 2019걸림5<sup>282)</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레깅스 판결’로 알려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2019년 시민감시단에 의해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해당 재판부는 버스 하차를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였는데,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그 근거로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일 뿐이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으며,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한 것을 보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촬영된 이미지의 음란성에 초점을 둔 해석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역시 성적 대상화로 인한 피해임에도 이를 왜곡하여 성적 수치심에 대한 협소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민감시단은 젊은 여성의 일상(복)마저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의 축소 해석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디지털기 및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물의

---

28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606 판결.

편집과 합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협소하게 하고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정조 침해 정도로 보는 넓은 관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소한 법 해석의 태도는 촬영 대상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2019결립4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 단독재판부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로 제기된 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촬영 당시 바로 삭제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후 동영상 삭제 시도를 한 바 있다는 점(피해자는 한 차례 동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곳에 복제해두었다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에서 묵시적 거부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의사에 반해"라는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언론사에 연락하여 유포 시도를 했으며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유포나 제보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의 역시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양형 판단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민감시단은 판결문상 양형의 문제를 걸림돌로 선정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2020결립3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로, 13세인 피해 아동에 대해 온라인 그루밍을 지속하며 성적 동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물을 받아낸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및 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죄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이며, 해당 행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협박으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였다든 점에서 신체적인 통합성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과 그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리한 양형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행위의 불법성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의 작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 (2) 디지털 성폭력 속성에 대한 이해 없는 형사절차 진행과 2차 피해

2017년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각 부처와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내에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 촬영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시민감시단에 의해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행위가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 내지 영상물이기 때문에 피해 촬영물이 주된 증거자료가 되는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타인이 피해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형사절차 자체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증거조사에 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 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디지털 성폭력 피해영상물 시청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2019걸림5 재판부는 피해 촬영물을 갈무리한 사진을 사건자료로 판결문에 그대로 실어, 피해 촬영물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기록으로 남겼다. 시민감시단은 해당 재판부를 2019년 걸림돌로 선정하여 디지털 성폭력 형사절차 중 2차 피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일부 법관들 역시 디지털 성폭력 사건 판결문 교부 시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여,<sup>283)</sup> 사법부 독립성 원칙에 따라 특정 판결에

---

283) 한겨레, “레깅스 불법 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2019. 11. 4.,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5593.html>. (최종검색일: 2024. 11. 20.)

대해 다른 법관의 논평을 자제하는 법원의 관행에 벗어나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2차 피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후 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피해 촬영물 사진을 삭제하였다.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역시 2019년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다. 2019걸림12인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유포된 피해영상물을 제출하자 증거 영상 확인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시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몇 번이나 했냐?", "지금 이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어떤 영상이 맞는 거냐?"를 물어보며 영상을 앞뒤로 돌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증거 영상 확인 시 피해자가 여자 경찰관 동행 요청을 하였으나 여자 경찰관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인을 위한 피해 촬영물 시청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로 증거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피해영상물의 시청 자체가 피해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입증, 판단하는 기존의 절차를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민감시단이 걸림돌로 선정한 2019걸림4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을 남긴 사례이다. 2019걸림4 재판부는 증거가 된 피해 촬영물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물 상 내용을 근거로 협박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자 양형심리를 위해 비공개재판으로 피해 촬영물을 재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으로 재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사실에서 해당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sup>284)</sup>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후 비판이 제기되어 해당 판사에 대해 자격 박탈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으며,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sup>285)</sup>

비록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심리의 필요성으로 재판정

284) 중앙일보,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 영상 꼭 봐야했나...법정선 무슨 일이, 2020. 4. 8.(수정 2024. 9. 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1098?sid=102>. (최종검색일: 2024. 11. 22.)

285) 프레시안, "오덕식 판사, 옷 벗어라"-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 2019. 11. 2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7744>. (최종검색일: 2024. 11. 20.)

에서의 피해 촬영물 재생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피해 촬영물 재생 자체가 또 다른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결정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2019결림4에서의 피해 촬영물 재생이 피고인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해당 주장이 양형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재생으로 인한 2차 피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86)</sup> 시민감시단의 결림돌 선정은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피해 촬영물 재생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을 결정하더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에 기반한 형사절차 진행 격려

디지털 성폭력 속성과 피해에 대한 몰이해 속에 축소되는 처벌 관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결과 2020~21년 이후부터는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민감시단에서 이러한 성과를 디딤돌로 선정하게 되었다.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수사기관으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범죄를 인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사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디딤2는 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피해자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 온라인 그루밍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포착하고 촬영물이용협박·강요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사팀은 상담소로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과 피해 특성에 대해 전달받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 과정을 상담소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였다.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에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가해자 및 주거지 등 수사를 진행하여 영상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2021디딤1은 대구강북경찰서 수사관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가장하여 포털사이트에 건강 상담을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신체적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을 한 가해자 사건을 담당하면서, 온라인 그루밍으로

---

286) 중앙일보,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 영상 꼭 봐야 했다…법정선 무슨 일이, 2020. 4. 8.(수정 2024. 9. 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1098?sid=102>. (최종검색일: 2024. 11. 22.) 참조.

인해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건 진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가해자를 검거하고 전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례들은 온라인 그루밍이나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과 피해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드러내기 어려운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과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의 확장 속에서 법 해석 영역에서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sup>287)</sup>와 담당 재판부가 2021디딤5로 선정되었다. 앞선 2019걸림5에서 다른 이른바 ‘레깅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sup>288)</sup>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하였는데, 이 판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중략)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

28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28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606 판결.

지 않는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촬영한 것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고 노출된 신체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레깅스는 일상복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은 판단기준이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되거나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방식,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신만을 촬영한 행위가 심미감 충족을 위한 촬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에 의해 신체 부분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촬영물의 고정성, 연속성, 확대 등 변경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해당 영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원심에서 피해자가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불쾌감을 느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법의 언어로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감시단은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 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에서 관련 규정 해석의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의 의미를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여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를 디딤돌로 선정 하였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사에 반하여”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sup>289)</sup>와 재판부가 2023디딤9로 선정되었다. 2023디딤9에서 다룬 사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남녀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 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가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건으로, 원심<sup>290)</sup>은 촬영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

28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등은 유포행위를 할 당시에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이때 “의사에 반하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촬영물 내용을 통해 추정될 수 있는 요소들과 촬영물을 취득하거나 반포등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촬영물의 원본인 동영상 내용 확인 결과 여성의 동의 없이 남성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물일 뿐만 아니라 촬영 대상자의 얼굴 및 신체적 특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그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촬영물의 반포에 대해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민감시단은 피해 촬영물의 소비를 의미하는 이른바 ‘한국 야동’이라는 범주 속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영상이나 밍이 된 짤방 등 2차 가공물이 여전히 소비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판결이 ‘의사에

반하여'라는 기준을 “동의 없음”으로 제시함으로써 2차 가공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포 및 소비 행위를 범죄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재판부를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법제화 과정 및 처벌 규정

1996년 5월, 자신과 자신의 딸을 지속해서 폭행해 온 사위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70대 할머니 사건<sup>291)</sup>으로 전국적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이 확산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그냥 되돌아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의무화를 명시하는 법 마련의 거센 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과거 및 현재의 배우자를 가정 구성원에 포함하고 있으나 연인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sup>292)</sup>.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경우, 데이트폭력,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주로 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또는 대학생들의 데이트 관계 속에서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

291) ‘폭행 사위 살해 혐의 이 할머니 정상참작 석방’, KBS 뉴스, 1996. 7. 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63632> (최종검색일: 2024. 11. 20)  
29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어왔는데 미국연방 법전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로맨틱하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정의<sup>293)</sup>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이나 정도에 비해 '데이트'라는 표현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소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대체하는 용어<sup>294)</sup>로 2023년 초 대검찰청의 보도자료 이후 정부 기관 및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라는 의미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sup>295)</sup>으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는 친밀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젠더폭력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아내폭력, 아내강간,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그 구체 사례로 분석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신체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물리적인 폭력,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도 드러나고 있다. 법률혼 관계나 동거를 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여성 폭력의 맥락 하에서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을 다루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형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 폭력 피해 양태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최초 발의부터 제정까지 22년이 걸렸다. 그러나 협소한 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과 2차 피해를 유발하는데 악용될 반의사불벌죄 조항,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의 내용으로 법 제정부터 개정 운동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된 이후인 2022년 9월, 직장 동료로부터 겪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신고하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전남 신당역에서 목숨을 잃은 '신당역 여성 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 2021년 11월, 전 데이트 상대에게 스토킹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보복살인을 당한 '오피스텔 살해 사건' 사건 까지 발생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오피스텔 살해

---

293)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94) 대검, '교제 폭력' 엄단... "중대 상해·보복, 구속 원칙", 연합뉴스, 2023. 3. 8.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139100004>(최종검색일: 2024. 11. 20)

295)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살해 사건 이전 스토킹으로 5번이나 경찰신고를 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결국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지급된 스마트 위치가 오작동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후 2023년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다루는 법안의 부재로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의 공백이 있다는 입법 요구는 지속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과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별도법안 신설, 두 가지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발의된 각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범죄로 가정폭력 정의 규정 개정,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처벌의 필요성을 근거로 처벌 조항 산입,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강압적 통제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는 다양한 법규에 근거하여 법적 진행 과정이 이어지면서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들로 디딤돌과 걸림돌이 선정되었다.

## 2) 사례 분석

### (1)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아내 성폭력 인정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인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기초하여 동거의무와 충실의무가 부여되므로, 부부는 성을 매개로 한 특수한 관계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부부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한 특수한 관계’의 실체는 해석론적인 부분으로 혼인 관계에서의 성행위의 요구와 이에 대한 수긍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는 가부장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4디답1은 아내 강제추행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 그간 부부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법 해석을 뒤집고 강간죄의 대상에 아내를 포섭하였다.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각각 환영 논평을 내고 부부간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존중하고,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남편으로부터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점을 짚었다.

2009디답2<sup>296)</sup>는 부부 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 혼인 관계의 특수성과 배우자의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두어 아내 강간을 죄로써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상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라고 인정하였다. 당시 여성단체는 UN 등 국제사회에서의 아내 강간 처벌 권고를 반영하고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사실혼 관계의 강간 인정에 대해 최 협의설의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2006디답1은 사실혼 관계 내 강간을 인정한 판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치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사실 직전, 상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력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성폭력이 인정된 진일보한 판결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실상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가 유지되고 있는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었는지 여부가 부부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성폭력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판단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 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위의 2009디답2사례 역시, 가해자가 칼과 가스 분사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

296)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점에서 사실혼관계와 부부관계에서 강간이 인정된 사례들은 모두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사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강제된 동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이해와 무지

2013디딤4는 3년이 지난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끈질기게 수사하여 기소에 이른 건으로 적극 수사한 수사기관(형사)에 대한 디딤돌이 선정된 사례이다. 3년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남자친구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로부터의 집단 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가 결별하였으며 피해로부터 3년이 지나 지역상담소를 통해 상담하였다. 그러나 3년 전 사건에 대한 증거도, 증인도 없었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양가감정으로 피해 이후 피해자의 대처나 태도를 문제 삼아 피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적극 수사로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편견에 기반을 두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여 처벌하기까지에 이른 사안도 있었다. 2016걸림1은 두 번째 데이트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였다가 강간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를 지원한 상담소에서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강간' 사건으로 피해자가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체력적으로 우세한 가해자가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밀한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적 요구는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강제된 동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전후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반해 동의를 내린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는 친밀한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강제된 동의에 기반한 다양한 성적 폭력과 학대적 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sup>297)</sup>. 특히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

297)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로부터의 폭력 전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두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고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상황은 제도적, 인식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3) '외도 때문에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냐' 아내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 불인정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살해한 여성 중, 30%가량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의 경우 평균 형량이 9년 이상이었다<sup>298)</sup>. 2004년 남편 살인으로 청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 249명의 재소자 중 남편으로부터 피학대 경험이 82.9%였고, 남편살해 여성의 88.5%는 초범이었다<sup>299)</sup>. 보수적인 사법 체계 내에서 가정폭력과 성 학대를 겪은 여성이 살인이라는 시도로 이를 중단하려 했다는 정당방위 논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살해에 이른 경우, 특별히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법제도 개선 운동으로 2009년 양형위원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에 이른 경우 다른 유형보다 낮은 권고 형량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선고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2009년에 시행된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 제1유형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①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③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15>와 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상,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겪다가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인의 경우,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으로 구분되어 양형이 정해진다.

---

298) 이명숙(2005),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제도적 검토,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토론문

299) 김영희·박광배·이재희(2004), 여성 살인범의 특징, 범죄 이유, 그리고 재할 가능성 : 치료적 사법 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 면담 연구, 법무부 보고서.

〈표 15〉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이상
5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이상

출처: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17결림2은 2017년 발생한 아내에 의한 배우자 살인사건을 기소한 검찰로, 피해자(아내)는 외도사실이 알려진 이후 남편으로부터 감금, 폭행, 성폭력, 카메라 이용 촬영과 유포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극심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 영양 상태 및 수면 부족과 극도의 공포심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겪고 잠든 상태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겪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외도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은 아니냐”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했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에서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여성 범죄자에 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 살인범의 판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살해 동기라는 점을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도나 금전적 목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여성 범죄자들은 다른 살해 범죄자들에 비해 판결 시기에 상관없이 더 무거운 선고를 받았다.<sup>300)</sup>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외도를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범행동기 여부에 있어 더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 7. 군 성폭력

300) Kim, B. Gerber, J., Kim, Y., & Hassett, M. R. (2018). Female-Perpetrated Homicide in South Korea: A Homicide Typology. *Deviant Behavior*, 39(8),

## 1) 군 성폭력 사건의 특성,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군 성폭력 문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와 헌병대, 군검찰, 군사법원 등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계관계가 가장 엄격한 군조직의 특성상 피해자의 거절이나 저항이 쉽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다른 피해(폭행, 가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와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지리적·문화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남성 간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sup>301)</sup>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발생 및 처리 통계도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군사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서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그에 따라 디딤돌·걸림돌 선정 대상으로 고려된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노소령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한 2014년 및 그 이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디딤돌·걸림돌 선정이 된 사례들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군판사가 아닌 일반 지휘관이 재판장을 맡는 심판관 제도, 지휘관이 재량으로 판결에 따른 형량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관 확인 제도,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온정적 판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sup>302)</sup> 이에 따라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2005~2006년에 활동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관할관의 형량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1심)의 폐지를 권고하고 추진하였으나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2014년 노소령 사건 이후 19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에서는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2016년에 이르러서야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하고, 2021년 공군 성추행 사건(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폭력 범죄 및 군 사망

301) 이미정 외(2021),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외(2004),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302) 이계수 등(200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계수 등(2015),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관련 범죄는 민간의 일반법원으로 이양되도록 하고 관할관 확인 제도,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사례 분석

### (1) 적극적 판단 사례, 균형법상 추행죄 위헌성 인정 사례

2014디딤6 사건<sup>303)</sup>은 대학의 같은 과 동기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준강간을 한 사안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자원입대를 하여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한 동기 사이였을 뿐 이전까지 이성적인 교감이 없던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및 모텔에 가게 된 경우,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법원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인데 피해자 및 지원자 입장에서 전문성이 의심스러웠던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굉장히 자세한 사실관계까지 고려하여 신빙성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디딤들로 선정되었다.

2014디딤7 사건의 경우 헌병대 수사관이 디딤들로 선정된 사례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하사)의 군대 선임인 가해자(하사)에게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시켜 준 자리에서 친구가 먼저 일어난 이후 가해자에게 끌려가 강간을 당한 사건인데, 수사를 철저하게 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수사·재판 과정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며 피해자 방청 시 군사법원까지 동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이 고려되어 디딤들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민간이든 군이든 수사기관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야 하는 내용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모범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

303)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9 판결

사례이다.

2022디답8 사건<sup>304)</sup>은 군 성폭력 사건이 아닌 균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었던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sup>305)</sup>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는 대법원판결 별개 의견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대위 1명의 동성 간 성행위를 입건하여 조사하던 중 동성애자인 상대 군인의 정보를 취득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수십 명의 군인 등을 상대로 그들의 과거 행위를 수사한 후 십여 명의 군인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록상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사 대상 군인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현행 규정 이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런 문제 없이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을 파헤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군기의 확립과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균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기능을 하여 왔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은 균형법상 추행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의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균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나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

304)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305)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총 23명의 현역 군인(간부 18명, 병사 5명)을 균형법상 추행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 중 9명이 기소되었다. 9명 중 4명은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고, 4명은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명은 전역 후 기소되어 민간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추정되었다가 대법원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기소된 14명 중 11명은 기소유예, 2명은 무혐의,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다. '균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2),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23쪽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23년 헌법재판소는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네 번째 합한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3. 10. 26.자 2017헌가16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판결을 의식하여 균형법상 추행죄가 위력에 의한 경우, 자발적 의사 합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의사의 합치는 있었지만 사적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남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혐오적 시선을 드러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생활관이나 샤워실 등 생활공간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지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고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헌법재판소는 네 차례의 결정을 통해 균형법상 추행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만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설령 어떤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법률 규정이나 징계를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균형법상 추행죄를 존치하려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2)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처리 사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온정적 판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5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2014년 군사법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비율이 11%로 일반법원 형사사건 파기 환송률 4.8%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sup>306)</sup> 2021년에는 대법원이 부하 여군을 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는데,<sup>307)</sup>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이 부하에게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손을 잡고 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308)</sup>

한편, 군사법원의 선고유예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 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군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법원의 1.36%보다 8배가 높았다.<sup>309)</sup>

2014결립6 사건<sup>310)</sup> 역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안이다. 병장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병을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제92조의3)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무거운 범행이었다. 그럼에도 군사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2014결립3<sup>311)</sup> 2사건은 노소령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이다.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직속상관의 폭언과 성관계 요구,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자살하고 그 유서가 국정감사 때 공개되어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이었으나, 군사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학교 선배이자 병과 선배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고 훈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가해자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나 피해자가 느낀 것은 다를 수 있어 상하 간 소통의 문제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보았을 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306) 아시아투데이 2015. 4. 14.자 기사, 「김용남 의원 대정부질문 “군사법원 폐지해야”」

30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308) 고등군사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31 판결; 경향신문 2021. 6. 16.자 기사, 「장교 추행에 군사법원 “자연스런 신체접촉”...대법 “추행 맞아”」

309) 경향신문 2017. 12. 21.자 기사, 「군사법정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선고유예’ 비중 일반법정의 8배」

310)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보통군사법원 2014. 5. 16. 선고 2014고4 판결

311)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9 판결

학교 선배이자 병과 선배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고 훈계하고자 하는 생각 또한 하급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한 동기로도 보이는바 ... 동기에 있어서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기대 수준과 요구가 높아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있으나 이를 통해 직무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 ... 상하간 소통의 문제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책상 개인이 아닌 부서, 부서가 아닌 부대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 그것이 부서의 일이라면 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인정은 ... 그 부위 및 정도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었다.<sup>312)</sup> 이 과정에서 군사법원의 경우 일반법원과는 달리 성범죄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4걸림4 사건은 역시 노소령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보통군사법원 판결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서에 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성관계 요구 사실도 농담이라는 취지이지 실제 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하다고 옹호하였다.<sup>313)</sup> 유사한 사례로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부대 관계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고모부에게 한 여성이 부대를 찾아와 천도제를 제안하면서 “피해자 영혼이 ‘아빠, 나는 잘 있으니깐 노소령을 풀어주세요. 놔주세요. 더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sup>314)</sup> 부대 관계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군의 인식을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노소령 성추행 사건은 이후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다.<sup>315)</sup> 가해자인 노소령은 보통군사법원 판결 선고 이후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

312) KBS 2014. 3. 21.자 기사, 「‘자살 여대위’ 강제추행 인정하고도 집행유예 선고」; 채널A 2014. 3. 20.자 기사, 「女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성추행 상관 ‘집행유예’ 논란」

313) 군인권센터 2014. 11. 5.자 보도자료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8>

314) 이투데이 2014. 3. 25.자 기사, 「‘오대위 자살사건’ 부대 측, 유족에 황당한 선처 종용... “아빠, 노소령 괴롭히지 마세요”」

315) 연합뉴스 2015. 7. 16.자 기사, 「女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성추행 소령 징역 2년 확정」

기각되기도 하였다.<sup>316)</sup> 한편, 언론 브리핑을 하였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3) 부당한 무죄 판결 사례

2018결림1, 2022디답11, 2022결림1 사건은 모두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으로 선정된 내용이다.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B인 함장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1회의 강간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결림1).<sup>317)</sup> 이는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의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2022년 3월 31일,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선고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으나(2022디답11),<sup>318)</sup>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이라는 반쪽짜리 판결이 내려졌다(2022결림1).<sup>319)</sup>

2022결림1 사건에서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판단을 하면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몇 줄 분량의 언급 외에 실질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선고되는 2022디답11 사건과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해당 사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성 언급이 본래 사건에 대한 판단보다 훨씬 더 많아서 더 이상하게 보일 뿐이다. 또한 원칙론과는 달리 2022디답11 사건과 2022결림1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결림1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2022디답11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의 범행 경위에 해당하는 2022결림1 사건의 결론이 다르다는 점은

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32941 판결

317)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2018노195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77 판결

31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31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2022결림1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sup>320)</sup>

2014결림6 사건<sup>321)</sup>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 사건으로 대령이 운전병을 4차례 강제추행한 내용이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가해자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가해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 이후 1심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담당 주치의는 피해자의 증상이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대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해진단서를 믿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였는데,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부대의 명예를 위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사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에 대해 다소 석연치 않거나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외부에 판결문이나 통계 등이 잘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용기로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군대 내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는 모든 군 성폭력 사건이 민간의 일반법원에서 처리되게 되었으나, 일반법원에서의 판단이 반드시 군사법원의 판단보다 낫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의 감시와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 8.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

320) 2022결림1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내용으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자료집(202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참조.

32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 1)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시민감시단이 주목한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은 성별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위계 구조에 의해 형성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 전반을 의미하며, 사적 영역 이외에도 직장이나 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포함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공적인 관계인 가해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평등권에 대한 침해도 경험하게 된다. 직장이나 학교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성적인 폭력은 피해자의 활동 영역을 적대적인 환경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평등하게 노동 또는 교육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적 관계의 가해자가 성별, 지위나 연령 등으로 피해자에 비해 권력적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더 큰 침해를 받게 된다.

시민감시단이 심사의 대상으로 삼은 공적 영역에서의 성폭력 관련 사법절차는 크게 성희롱 구제 절차와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에 대한 형사절차로 나뉜다. 지난 20년간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구제 절차 관련 사례는 주로 2011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1~22년 등 비교적 최근 사례도 존재하는 등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 사례는 미투운동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성폭력이 성희롱 구제 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여성주의적 인식이 확산된 사회변화에 조용하여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투운동'이라는 운동으로 평가되며, 이때 주된 쟁점이 된 공적인 권력관계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권력형 성폭력'으로 명명되었다.

### (1) 평등권 침해로서 성희롱

공적 영역에서의 성폭력이 평등권 침해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된

법 제도가 성희롱 법리 및 구제 절차이다. 성희롱 법리가 먼저 발전한 미국에서는 노동 영역에서 차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harassment(괴롭힘)가 성별 위계 구조 속에서 여성에게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격, 비하, 조롱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괴롭힘의 의미로 sexual harassment로 명명하였다.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직접적인 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용환경을 형성하게 되어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임을 강조하였다.<sup>322)</sup> 우리의 경우, 성희롱은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994년 판결<sup>323)</sup>을 통해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희롱이 “성적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환경 하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었다.<sup>324)</sup> 성희롱 행위를 다루는 법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 1995년부터 다양한 입법안들이 제안되었으며,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서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구제 절차를 구축하는 안부터 기존의 업무·고용 기타 보호감독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 처벌규정에 성적 언동(성적 표현이나 행동 등 성적 괴롭힘 행위)을 추가하여 형사 범죄화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sup>325)</sup>에서 국가·지자체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책임을 규정하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sup>326)</sup>에 성희롱의 사용자책임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sup>327)</sup>을 신설하여 성희롱 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되었다. 이후 2005년 차별시정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대상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되었다.<sup>328)</sup>

성희롱 정의는 수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 책임 주체와 피해자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성희롱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

322) 이에 대한 논의는 Catharine. A. MacKinnon(1979), The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A case of Sex Discrimination,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32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

32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325) 법률 제5136호, 1995. 12. 30. 제정, 시행 1996. 7. 1.

326) 법률 제5933호, 1999. 2. 8. 일부개정, 시행 1999. 2. 8.

327) 법률 제5934호, 1999. 2. 8. 제정, 시행 1999. 7. 1.

328)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7651호, 2005. 7. 29., 일부개정, 시행 2005. 7. 29]]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로 규정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직급체계 상 상급자와 같이 지위상의 우위뿐만 아니라 집단이 가해자인 수적 우위, 성별, 학벌, 지역, 나이 등 그 사회의 위계적 질서로 인해 인적 속성에 따른 우위를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가해자가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는 없다.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해자에 의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거부 또는 저항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주된 요소로 삼지 않는다. 업무상 관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일탈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며, 이때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는 등 포괄적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sup>329)</sup>

둘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sup>330)</sup>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는지를 고려하는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기준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희롱 성립기준으로 거부 내지 저항 의사의 표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 대해 행위 당시 가해자에게 표현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32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참조.

330)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않다.

## (2)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응

앞서 살펴본 성희롱 법제도 이외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는 형사절차이다. 공적 영역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폭행·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 처벌 규정으로 이러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 위력등에 대한 간음죄(제303조)를 두었으며,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죄(제11조)를 신설하였다.

“위력”은 직접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하는 유형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331)</sup> 이러한 판단기준은 권력적 우위를 가진 가해자의 성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행위 당시 거부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직장 내 직제 내지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 등 실제 업무나 고용 등과 같은 공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332)</sup>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남편<sup>333)</sup>이나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채용 과정에 관여하는 채용권자<sup>334)</sup> 역시 보호·

33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33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2) 사례 분석

### (1) 성적 언동에 대한 협소한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

성희롱 법 제도가 여성에 대해 성적 대상화 하거나 여성에게 성적인 성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을 괴롭히고 적대적인 노동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성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언동을 오로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법 해석의 태도가 존재한다. 시민감시단은 성희롱의 성적 언동에 대한 협소한 법적 해석을 걸림돌로 선정함으로써, 성희롱 법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등학교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성인 교사에게 남성인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차별위원회가 이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녀차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처분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감시단은 2심 법원(2005결림1)과 대법원(2007결림1)을 각각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술 따르기 강요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교감의 행위가 유희이나 주흥을 위해 술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사에 대한 답례로 술을 따르라고 한 것이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희롱 법리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차별받는 집단의 관점인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 반영되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성희롱 법리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인 2005결림1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333)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334)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이에 대한 상고심인 2007결림1은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면서 성희롱 법리에 따라 행위자의 성적 의도나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인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원심인 2005결림1과 마찬가지로 여성 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교감의 의도가 성적 의도가 아니었으며, 회식 자리에 있었던 여성 교사 일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실상 성희롱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사들을 지목하여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위치 지우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직장 술자리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성희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자 노동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35)</sup>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결국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을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 질서로 설정함으로써 차별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관점을 배제하고 오히려 남성의 관점을 옹호하는 태도를 법적 기준으로 삼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 (2) 성희롱 행위를 사소하게 판단하는 법적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

2007년에는 성희롱 법리에 따라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의 해고취소 처분이 이어져, 법원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감시단은 법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취소판결들을 걸림돌로 선정함으로써, 성희롱 행위를 사소하게 판단하는 법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7결림4 재판부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하고 볼에 키스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여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규정에 의해 징계해고를 한 건에 대해, 해당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이고 동급

---

335)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 보수적 판결로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 2007. 6. 15.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보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행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2007결립5 재판부는 교사가 수학여행 중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성희롱 및 체벌행위를 한 것으로 해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자가 성적 의도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김에 과도하게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도가 지나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노골적인 굴욕감이 아닌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으로서 다소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007결립6 재판부는 지점장인 행위자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적 성폭력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나 회식 자리에서의 성폭력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애정 표시로 보이는 점, 일부 여성 직원들은 격려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 점,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경우로 고의가 없어 해고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성희롱이 성차별이며 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우발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성희롱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성희롱 방지를 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민감시단은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법 해석을 통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훼손하는 법원의 판결을 걸림돌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 (3) 평등권 침해인 성희롱 판단기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성희롱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하여 정립한

법 해석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06디딤6은 한국 까르푸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까르푸 면목점 성희롱 사건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부이다. 상사인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6명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한국 까르푸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구제 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증거불충분 내지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것은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이 고용주 또는 상사로서 피해자들의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성적 언동 역시 추행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성적인 신체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매우 협소하게 한 것이다. 2006디딤6 재판부는 회식에서 가해자의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처분에 대해 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시민감시단은 2006디딤6 재판부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소한 판단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가해자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적 언동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성인지, 인권 감수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는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2018년 이후이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성희롱 판단기준에 있어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성인지 관점이 법 해석 및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

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sup>336)</sup>

시민감시단이 디딤돌로 선정한 2021디딤3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하여 성희롱 사실에 대한 증거 판단을 함으로써,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처분이 된 피해자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sup>337)</sup>을 한 재판부이다. 해당 사건은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한 신체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인권센터로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희롱 무고로 피해자를 해고한 권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및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2021디딤3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해고의 근거가 된 성희롱 무고가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회식 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약 3주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행위자를 무고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이며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피해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022디딤9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소극적이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권력관계의 열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둘러싼 차별구조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성희롱 판단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망자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2022디딤9 재판부는 성희롱 감수성 법리를 인용하면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 내지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성희롱 후에도

33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2018상,909].

337)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생일 축하하는 손 편지를 쓰고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행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권력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피해자의 행위는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부인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시민감시단은 공적 영역에서 권력관계 하에 발생하는 성희롱의 특성과 평등권 침해행위로서 성희롱 법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을 이유로 성희롱 성립을 부인하지 않고, 차별받는 피해자 집단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성희롱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에 대해 디딤돌로 선정하고 격려하고 있다.

#### (4)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대응

시민감시단이 선정한 디딤돌·걸림돌 사례 중 공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례는 미투운동 이후인 2018년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미투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성폭력 사건들의 주요한 특징은 친밀한 관계 내지 가족 등의 사적 관계나 낮은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직장, 조직 등 공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지배력을 활용한 성폭력,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미투운동은 성희롱 법제의 발전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성희롱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제도적인 공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직장 등 조직 내 성희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고 후 2차 피해의 두려움이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절차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가해자가 성희롱 방지의 최종 책임자로서 절대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경우나 피해자가 비정규직 등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예술계, 정치계 등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공적인 권력관계로 인한 영향력이 작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구제 절차의 제도화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 미투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피해자들은 결국 업무상 위력 간음의 성폭력 법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시민감시단은 형사절차가 공적인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5) 권력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는 법 적용 문제 제기

공적인 권력관계 내에서의 성폭력은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권력적으로 우위를 가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의 행사가 동원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들은 행위 발생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내하거나 가해자와의 공적 관계에서는 자신의 불쾌감이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러한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권력형 성폭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시민감시단은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가해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태도를 판단하고 있는 검사와 재판부들을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2018결림1 재판부는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들에게 강간치상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특정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연인관계로 판단한 점,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행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록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는 일관되나 강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기혼자인 상급자들(소령, 대령)과 피해 당시 20대 초반인 피해자(중위) 간의 절대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권력관계 내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도 7년간 대응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사건으로, 군검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7년 만에 기소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으나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당시 말과 행동,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들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018결림1 재판부는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태도에 초점을 두어 성폭력 피해를 부인한 것이다.

2018결림3 재판부 역시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업무상 위력 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도지사’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도지사와 수행비서 관계에서의 위력은 존재하나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 이후에도 평소처럼 업무를 본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등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재판부들도 존재한다. 2019걸림2 재판부는 '군수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고소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었던 신체 부위에 대해 오른쪽, 왼쪽을 헛갈리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명시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은 권력형 성폭력 피해의 호소를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하고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9걸림16은 2013년까지 최소 7년 이상 지속된 사회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부로, 2013년 사건이 처음 알려진 당시 가해자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사기 및 알선수재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성폭력 관련 혐의는 면소 및 공소 기각하였다. 2019걸림16 재판부는 권력관계 하에서 장기간 성폭력 및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한 점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준 대가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는 불신을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2019걸림15는 2019걸림16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으로, 해당 사건이 검찰 내 고위인사의 가해 행위라는 점에서 부실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수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양태의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피고인에 따라 법률적용을 달리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다.

공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부 재판부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행위 당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절대적인 위계적 권력관계 하에서 장기간 피해받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가해자에 대해 무고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사법절차를 운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이렇게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성폭력 법률을 해석, 적용하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 및 재판부를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6)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법 적용 사례

미투운동으로 공론화된 사건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 해석을 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은 이를 디딤돌로 선정하고 권력형 성폭력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2019디딤3은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 걸림돌로 선정된 2018걸림3 재판부와 달리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기초로 업무상 위력간음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원심에서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019디딤3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위력의 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이 있었는지 등 자유의사가 제압된 사정은 위력 간음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이후에 보인 태도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적 영역의 권력관계 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차별에 대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2019디딤5는 업무상 위력간음 및 추행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한 대법원판결로, 2019디딤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사정이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심 및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가해자의 대사라는 지위가 피해자들에게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인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0디딤7 역시 과장의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에 대해 1심 및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업무상 위력 성폭력의 기준을 다시 강조하였다. 소규모이며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회사의 분위기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장난식으로 대응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가해자가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을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대해서도 권력관계의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19디딤2는 유명 연극 연출가에 의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1심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피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지 1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9디딤2 재판부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가해자가 유명연출가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용상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비록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 해당 영역의 특성을 함께 판단한 것이다.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의 폭행·협박에 대한 해석을 넓힐 수 있다. 2018디딤7 재판부는 유명 연극 연출가에 의한 상습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부로 가해자와 피해자들 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하에 사실 판단 및 법 해석을 하였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추행 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확대하여 해석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챌 겨를 없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를 폭행·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법 해석 하에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적 자유 침해행위로 판단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권력관계 내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들이 디딤들로 선정되었다. 2019디딤6 재판부는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군수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 점,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년 내지 8년 이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해 비일관적이며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피해 사실 자체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다. 2021디딤2

재판부 역시 수년 전 발생한 직장 내 위력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 (7)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사례

시민감시단은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였다. 2018디딤1은 시의원에 의한 공공기관 직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에 대해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등 이차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이다. 검찰은 성폭력으로 고소된 피의자가 고소인인 피해자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것에 무고 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역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무고 고소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사건 수사 이후로 연기시키는 것을 넘어,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무고 고소에 대해 무고인지로 대응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의 고소 남용으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2019디딤4는 유력 정치인이자 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비공개심리 요청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 활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시민감시단은 미투운동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에 대해서도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2018디딤3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군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관들로, 피해자들의 미투를 언론에서 접하고 권력관계를 이용한 상습추행 사건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수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 일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참고인 수사와 통신자료 확보, 거짓말탐지기 활용 등으로 보강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C. 절차적 문제 분석

###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고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① 진술 청취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②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③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④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⑤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피해자등을 위한 조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조항에 위헌결정<sup>338)</sup>을 함에 따라 2023년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에서도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며,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성폭

338)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력피해자보호규칙」 제2조).

## 2) 성폭력 범죄 전담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은 전담부에서 실시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각기 성폭력 범죄 전담 경찰, 전담검사,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재판하도록 하며, 전담 경찰 및 검사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8조). 전담 경찰 및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인적 지원

### (1) 신뢰관계인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때에도 같다. 이때 조사 또는 신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강간 등 살인·치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제외한 범죄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이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동석하게 해서 안 된다.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도 중계시설에 동석한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

### (2)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등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2013년 '법률 조력인'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도입되어,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여러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었다.

검사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적용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해당하거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경찰, 검사는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등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공판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6조, 제8조). 또한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4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변호사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에서는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의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지방검찰청은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 조사, 국선변호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국선

변호사를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피해자 등은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재판장은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해당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피해자 보호규칙」 제10조). 검사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3) 증인지원관

각급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어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32조). 증인지원관을 두는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이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13조). 증인지원관은 ① 재판의 진행 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②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③ 증인지원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④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⑤ 기타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증인이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때에는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15조).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직무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증인지원관은 부임 1년 이내에 증인의 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 및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증인지원관 직무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14조).

### (4) 진술조력인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하여 2013년부터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 검사, 법원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3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제외한다. 경찰, 검사, 법원은 해당 피해자의 조사나 신문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진술조력인도 중계시설에 동석한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26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①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의 방식, ②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③ 기타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의 증대·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23조).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 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 4) 개인정보 보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의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가명 조서 작성을 하게 되었다. 조서나 기타 서류 작성 시 피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원 관리 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범죄신고자법」 제7조). 공판 과정에서 판사가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의 일부나 전부 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범죄신고자법」 제11조). 「범죄신고자법」은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복 우려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한다. 피해자 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한 경우 증인 소환장은 검사에게 송달한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범죄신고자법」 제11조).

#### 5)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녹화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특히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등의 진술 횡수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경감하는 방안이 되어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요건이 강화되어 법이 개정되었다.

경찰,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 전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조사과정이 영상녹화 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 2에 따라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영상녹화물과 다른 증거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 6)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이 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 이는 성폭력뿐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증인 신문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로는 법정 외 공간에서의 증언, 차폐시설 설치,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비공개심리 등이 가능하다. 각 조치들은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 등 증인이 피고인 등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거나 재판이 공개되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을 위한 조치 등으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

먼저 증인은 법정 외의 공간에서 증언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법정 밖에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거나 건강 상태 등 기타 사정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일부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을 하거나 차폐시설(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증인 신문 결정을 할 때 함께 하여야 하나 증인 신문 도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중계시설이나 차폐시설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성폭력피해자보호규칙」 제26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차폐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 신문을 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 증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성폭력처벌법」은 강간, 추행 등 일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 또한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와 증인 출석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3). 증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장소에 증계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계시설이나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 신문을 할 때 증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과 가족이 증인 보호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 비공개심리를 결정한 때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증계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심리를 비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으로 소환받았을 때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 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 7) 신변안전조치

성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이 피고인이나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등과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2조, 제2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제7조, 「범죄신고자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에는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강력범죄법」 제13조의2).

## 2. 절차적 문제 사례 분석

### 1) 걸림돌 사례 분석

수사 재판 절차 과정에서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는 총 37건으로, 검찰 14건, 경찰 10건,

재판부 13건으로 총 37건이다. <표 16>과 같이, 걸림돌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분류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미이행으로 14건(37.8%)이고, 미온적인 피해자 조치 실행 5건(13.5%),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로 부실 수사를 한 사례가 4건(10.8%), 원사건이 진행 중 임에도 역고소 사안을 수사하거나 무고인지 기소한 사례가 3건(8.1%), 그 외 범행을 재연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가 7건(18.9%)이었다.

**<표 16> 절차적 문제 걸림돌 사례 세부 분류**

분류 내용	사례 수(건, %)			
	경찰	검찰	재판부	합계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미이행	2	7	5	14 (37.8%)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3	-	2	5 (13.5%)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	-	3	1	4 (10.8%)
공판절차 상 공개주의 거부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문제	-	-	4	4 (10.8%)
무고인지 기소와 역고소 수사	1	2	-	3 (8.1%)
다양한 2차 피해 문제	4	2	1	7 (18.9%)
총계	10 (27%)	14 (37.8%)	13 (35.1%)	37 (100.0%)

(1)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미이행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적용하며 활용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많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중요 증거자료를 누락하거나(2017걸림3) 경찰의 수사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사 일정을 통보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사례(2023결립1)가 있었다.

비단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마련된 제도뿐만은 아니라, 수사 와 재판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수사하고 이를 현출된 증거로서 범죄의 증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로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11결립5의 경우,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강간 피해였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2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항의 하는 피해자에게 검찰은 피의자 보석은 판사 직권이라며 재판 절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검찰 측 증인 이름도 모를 정도로 미온적인 태도로 공판절차에 참여해 결국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결립돌로 선정되었다.

(2) '가해자 옆좌석에, 가해자를 대면하도록, 주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도록', 미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2015결립1은 성폭력으로 치료감호소 수감 중이었던 가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탈주하여 추가적인 성폭력을 가하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부실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청이 선정된 사례이다. 탈주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상점에 들어가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한 이후, 뉴스 보도로 공개수배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압박감에 112에 자수하였다. 114 9회, 112 2회, 경찰서 형사과 4회, 타 경찰서 형사과 1회, 지방경찰청 11회, 치료감호소 1회, 치료감호소 직원 휴대전화 1회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가 자수 의사를 전달하는 동안 피해자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찰 측의 대응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이후 경찰서에 가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한 피해자를 가해자 옆 좌석으로 이동시키기도 했고, 조사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기 전 피해자를 외부 공간의 흡연실 벤치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당시 탈주범의 자수 소식에 경찰청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014년 6월 17일 제정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현장출동 시 유의사항)<sup>339)</sup>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

339)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현장출동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 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

에서 성폭력 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는 또 있다. 2020걸림9는 피해자가 추행 피해로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가해자를 대면토록 한 경찰을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와 폭언, 폭행을 일삼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가하였고, 경찰신고와 동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여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가 재차 방문하여 민원 창구가 아닌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공간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신변 보호 중이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가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불러내어 대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현장출동 시 유의사항) 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 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경찰 출동 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담고 있다. 2017걸림5는 10대인 딸과 친구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추행 및 유사 강간을 한 사례에서 경찰이 피해자들의 학교에 제복을 입고 경찰차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한 경찰이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불러내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학교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 강간당했냐” 물으며 피해 사실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에서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도, 실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신원을 노출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2010걸림2는 의무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 전 비공개재판과 영상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퇴정도 영상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물어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뒤늦게 피고인 퇴정을 하면서 신뢰 관계에 있는 모와 지원단체

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한다.

- ③ 경찰관은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분리조치 후 체포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활동가도 함께 퇴장하도록 하였다.

2014결립2는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의 직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었는 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해자 측에서 온 참관인이 있느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하여, 당시 법정에서 온 가해자 측 다수에게 피해자의 모와 지원단체 활동가의 신분을 노출하게 하였다. 공판을 마치고 나서는 지원기관 활동가와 피해자의 모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겪기도 하였다.

2013결립4은 피해자 증인 신문에 앞서 사전에 비공개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로스쿨 실무 수습과정이라며 방청석에 로스쿨 학생들이 앉아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진술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소리,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 신원을 그대로 노출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부분도 결립돌 선정의 이유였다. 이와 같은 수사 재판 절차상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의 미숙지와 불이행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가해자와 대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받거나 진술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무력하게 만든다.

### (3) ‘그게 말이 되나요’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

수사 재판과정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로부터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에 근거하여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결립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4결립3은 6세 아동이 의부로부터 장기간 강간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의학적 소견으로 성폭력 피해의 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운동도 좋아하고 승마도 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성폭력으로 인한 의학적 소견을 달리 판단하였다. 게다가 외국 유학 생활에서 보호자로서 필요한 가해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몇 전에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게다가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한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을 직접 법정 출두하게 하여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받았던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령 제961호 「인권 보호 수사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sup>340)</sup> 및 제11조<sup>341)</sup>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공정한수사)1항은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규칙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편견과 피해자다움에 근거하여 편향적인 태도로 수사하거나 판단한 검찰이 걸림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걸림2는 중학생 2학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학교 선배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학교 선배이며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한 수사 검사가 선정된 사례이다. 당시 피해자는 심리평가 상 지적장애에 해당하였으나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장애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 이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지능검사 후 지적장애로 등록하였다. 검찰 수사 시 담당 수사 검사는 가해자의 가방에 축구화가 들어있었고, 손에는 축구공이 있어서 겁이 났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게 말이 되나요’라고 되묻고, ‘무서웠다면 영상의 화면과 같이 오빠와 다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며 피해자다움을 근거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2020걸림6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요즘 여자들은 이런 거 하자도 아니다, 남자가 성범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아느냐’라고 다그치고, ‘당신도 성인인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어른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라며 증거 불충분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자체를 의심하는 말투와 내용, 가해자의 삶을 염려하는 발언 등 예단과 편견에 깃대여 편향된 수사를 받아 검찰 수사관에 대한 이 같은 2차 피해에 대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했다.

#### (4)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공판절차 상 공개주의 거부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문제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340)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341)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오용한 재판부가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2013걸림4은 준강간 피해자의 증인 진술에 지원단체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재판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가 선정된 사례이다. 재판부는 성인이 왜 신뢰관계인이 필요하냐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불허하였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에 왜 여성단체가 개입하느냐’며 수사 재판 절차상 보장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2020걸림11은 대학교수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1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2가 있는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진술 시 피해자 측이 요청한 피고인 퇴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도 증인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2는 항소심에도 증인 진술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피고인 퇴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가 법정 안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석에 착석하였으며, 당시 공판 검사가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차폐막으로 가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1이 증인 진술을 할 때는 재판 방청연대로 지원단체 소속 많은 시민이 함께했는데, 이를 의식하여 피고인 측에 비공개재판을 할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비공개재판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남아 증인 진술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 측에게 비공개재판 의사를 묻고 지원단체의 방청을 막아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로는 2015걸림5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우려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만 방청 가능하다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던 지원단체를 퇴정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은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판 절차상 기본원칙인 공개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의거, 공판정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이고,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에도 피고인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에 의한 증인 신문 비공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재판부의 조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 미이행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 권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재판관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5)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인지 기소와 역고소 수사

수사기관에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에 따라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 제 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2008결립4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의심하여 무고로 인지 기소한 검사를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임대할 집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거주할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에 대해서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에 가해자가 임대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폭력으로 고소한 피해자는 오히려 검찰에서 무고로 인지되어 기소되었다. 수사 검사는 가해자가 임대할 집이 있다고 허위 광고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거짓말'로 표현했으나, 피해자가 고소한 동기가 실제 피해 때문이 아니라, 금전적 문제에 대한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고 무고로 기소하였다.

2023결립2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를 언급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게 하여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묻고, 피해자가 없었다고 하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고소를 취하게 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조서에 피해자에게 무고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누락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 아닌데도 고소하고 조사를 받은 것처럼 작성해 오히려 가해자 측 공격의 빌미가 되도록 하였다.

#### (6) 범행 장면 재연, 합의 종용, 추가적인 성폭력까지 다양한 2차 피해 문제

수사 재판 절차상에서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인한 사례도 다수였다. 2004결립1은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의 경찰이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는 20년이 흐른 현재에도 회자 될 만큼 심각한 2차 피해 사례로 꼽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밀양 물 흐려놓았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유발하거나 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노출하였다. 2011년 6월 6일은 채팅으로 만난 외국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을 본 경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을 가해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와 차에 태우고 비디오방으로 데려간 뒤, 음란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후 사직서를 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규정<sup>342)</sup>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2005년 6월 6일은 성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10대 청소년에게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현장검증 시 범행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검찰이 선정된 사례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검증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피고인 측의 진술에 맞는 상황을 재연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올라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담당 검사 및 부장검사를 고소하였으며, 지휘감독자인 지청장과 국가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담당 형사가 합의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 
- 342)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 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013걸림6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경찰이 합의서를 들고 피해자의 모를 찾아와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해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이전부터 가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데, 피해자나 피해자 모에게 합의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작성하게 했고, 이를 알게 된 지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해왔으며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여 직권남용으로 해당 경찰의 징계처분과 소속 관서에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받게 하였다.

## 2) 디딤돌 사례 분석

수사 재판 절차과정에서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는 총 79건으로, 경찰 45건, 검찰 20건, 재판부 13건, 기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표 17>에서 보듯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 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과정으로 선정된 경우가 34건(43%)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수사와 지원단체와의 연계 확보 등 피해자 지원에 앞선 사례가 24건(30.4%)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경찰의 경우 적극 수사 또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제도를 활용하는 수사 과정에 대해 디딤돌 선정사례가 8건(10.1%)이었고 재판부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송지휘권을 발휘한 재판부가 다수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하여 기소한 재판부 또는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확인하여 추가 수사를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인 수사기관과 검찰이 선정된 사례도 디딤돌로 4건(5.1%) 선정되었다.

〈표 17〉 절차적 문제 디딤돌 사례 세부 분류

분류내용	사례 수(건, 비율)				
	경찰	검찰	재판부	기타	합계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 활용	4	4	1	-	9 (11.4%)
피해자 특성 이해와 지원단체와의 연계 방안 확보 노력	16	5	3	-	24 (30.4%)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과정	24	7	2	1	34 (43%)
적용범죄에 대한 넓은 해석과 공소 유지	1	3	-	-	4 (5.1%)
소송지휘권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1	7	-	8 (10.1%)
총계	45 (57%)	20 (25.3%)	13 (16.5%)	1 (1.3%)	79 (100%)

(1)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활용

2005디딤5는 경찰 피해자 인권 수사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서 내에 진술 녹화실을 신속 설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여성청소년계장을 선정한 사례이다. 형사소송절차 상 보장되어있는 피해자 참여 방안을 적극 활용한 검찰이 선정된 사례도 있다. 2009디딤3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시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술할 수 있는 절차<sup>343)</sup>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343)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변명에 부당한 영장 기각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19디딤4는 언론과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권력형 성폭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단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의 이해관계로 여러 차례 기피되고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선정되었다. 해당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종결까지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 증인 진술 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고인을 퇴정 조치하여 별실에서 중계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듣게 한 점 등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를 준수한 점이 인정되어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20디딤3은 청각 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례였는데, 관할 경찰청 담당 수사팀은 곧바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상담소와 연계하고, 진술시 수어 통역사, 진술 조력인,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마련되어 있는 피해자 권리보장제도를 활용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sup>344)</sup>이 2007년 8월 신설되었다. 2009디딤4는 이

- 
-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344)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 2년 만에 최초로 청구하여 결정되게 한 검사를 선정한 사례인데, 이 사례 이후 검찰 내에서 친족 성폭력의 경우, 친권상실 청구 조항이 적극적으로 인용되며 권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2) 피해자 특성 이해와 지원단체와의 연계 방안 확보 노력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경찰, 검찰, 재판부 고루 추천되어 선정되었다. 경찰의 경우에는 장애인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진술하고 사건 전반에 걸쳐 성폭력상 담소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단체에 적극 연계해 준 사례(2008디딤2, 2012디딤1, 2012디딤2, 2022디딤4, 2023디딤1, 2023디딤3)가 눈에 띈다. 2012디딤6의 경우 검사가 지원단체에 먼저 연락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제안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여, 피해자 신변 보호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검찰이 선정된 사례이다. 2012디딤7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피해 시기를 특정하는 진술이 번복되자 재조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수사하여 유년기에 겪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검찰이 선정된 사례이다.

2013디딤6은 친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경찰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학교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피해자의 신고 사실이 피의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가해자를 구속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한 경찰이 선정된 사례이다. 단순히 사건을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심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지원한 이와 같은 사례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혐의점을 밝히는 수사뿐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과정 일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외에도 그루밍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2021디딤1 사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한 2022디딤1 사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카메라이용

촬영 및 유포 관련, 피해자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2015디딤4 사례 등도 피해 특성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관의 수사가 실질적인 범죄의 구체 사실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3)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과정

위의 표 결과와 같이 수사 재판 절차상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분류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례였다.

2004디딤3, 2007디딤7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고 치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 검거에 힘쓴 경찰을 디딤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방경찰청이 헬기로 출동하여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사례와 해외 주재 NGO 단체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지 조사를 통해 가해자 성희롱 인정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 사례, 전국 최초 성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현 사건과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분석과 전문적 수사로 2년 동안 연쇄 성폭력범 96명을 검거한 사례도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3년 전 사건에도 피해자 진술에 근거한 적극적인 수사로 자백받은 사례, 공소시효 도과 피해에도 추가적인 수사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례, 광역수사대로 인계되었으나 피의자 검거에 진척이 없자 관할서에서 직접 검거반을 구성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 인지 수사한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진행하여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도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카메라 이용 촬영물 협박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잠복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사례, DNA 대조로 18년 전 사건의 피의자를 끝내 검거한 사례, 피해자와 함께 일일이 사건 현장을 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한 사례 등 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본인 일처럼 나서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심리적 위안과 치유에 도움이 되어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언론에 공개된 권력형 성폭력 사안을 보고 바로 인지수사를 한 사례, 주요 증인이 피고인 측에 회유되지 않도록 매일 경찰을 파견하여 상황을 주시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펼친 사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4) 적용범죄에 대한 넓은 해석과 공소 유지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적용범죄를 폭넓게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하여 기소한 수사기관과 공소를 유지한 검찰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는 법의 적용과 처벌이 단순히 법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려는 수사관의 태도나 의지가 실질적인 법 해석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8디딤3은 여러 건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을 유지하여 검찰로 송치한 지방경찰청 수사팀이 선정된 사례이다. 해당 수사팀은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가 자신과 친구 관계인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와 합의하고 종용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만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은 비친고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며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또한 만1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만17세인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 부모가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소년 대상 집단 강간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친고죄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2015디딤8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부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고 출산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석방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종용한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디딤돌로 선정한 사례이다. 피해자는 의부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고 출산하게 되었고, 피해자 모는 피해자로부터 의부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 사실을 들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동거하도록 해 본인의 보호 감독하에 있어야 할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또한 만 16세이던 피해자가 강간 피해로 인해 출산하고 의부를 고소하여 구속되자, 피고인을 석방할 목적으로 모의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 하도록 종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및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경종을 울리는 검찰의 대처도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18디딤1은 시의원이 지역 내 복지법인의 직원을 강제추행 사안이었는데, 시의원은 본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역고소하며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이에 당시 수사 검사는 무분별한 무고가 되려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라고 보아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를 함께 기소하였

다.

(5) 소송지휘권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제도가 재판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달려있기도 한다. 2012디딤8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국가고시 학원에서 알게 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로, 시험 이후 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이후였다. 당시 피해자는 기억을 잃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문자를 보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가 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증인 진술시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유감이라 표현하고, 영상증거물을 시청할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과도한 증인 신문을 제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소송 지휘하였다. 증인 진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위로하고,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탁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으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12디딤9는 직장 동료로부터의 기습추행 피해였는데 약식기소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인 신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고,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신문은 즉시 제지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부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용서를 구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진실 규명이 없는 용서는 없으니 피고인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힘을 쏟으라 말해 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과정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 자체로 피해에 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2017디딤2 유명연예인에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 사안으로, 당시 무고죄로 기소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검찰 측의 통념과 편견에 근거한 심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편견을 배제하고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여 공정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한 재판부가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이다. 당시 배심원은 2시간 넘는 평결 끝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여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전성협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피고인들의 악의적인 무고와 명예훼손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2023디딤5은 외할아버지가 손녀 다수를 성폭력 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는 순화하여 표현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질문을 미리 검토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소송지휘를 하여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듣고 있다는 신뢰감 있는 반응과 신중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다소 무겁고 부담스러운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증거를 충분히 살피는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법관의 역량과 능력이 성편향적이지 않은 인식과 관점, 그것이 반영된 재판과정의 태도로 표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D. 특별상 선정의 의미

### 1. 특별상 선정이유

특별상은 형사사범 절차 담당자 외 성폭력 사건의 대응과 대처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초기의 시민감시단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에 기여하거나 2차 피해를 준 담당자들만을 주목하였다. 시민감시단 활동 5년을 지나면서 일선 성폭력상담소들에서 사건지원 과정에 경찰·검찰·재판부 외에 피해자 주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지원들이 피해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특별상으로 선정하자는 제안들이 나왔다. 시민감시단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2009년도 디딤돌·걸림돌 심사과정부터 특별상 제도를 마련하였다.

〈표 18〉 역대 특별상 선정 현황

(단위: 건)

유형	합계	특별 디딤돌	특별 걸림돌
보도기관, 언론인(기자, PD, 작가 등)	10	6	4
단체 활동가, 장애인 시설의 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	5	-
경찰	2	-	2
대학	2	-	2
법원	2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
교사	1	1	-
이웃(시민)	1	1	-
합계	24	15	9

특별상은 주로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이 추천·선정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감시단에서는 〈표 18〉과

같이 총 24 사례의 특별상을 시상하였는데, 이중 특별 디딤돌은 16건이고 특별걸림돌이 8건이다.

## 2. 특별상 선정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 1) 언론보도의 기여와 2차 피해의 양면

시민감시단 특별상의 41.6%는 보도기관이나 기자, PD, 작가 등 언론보도 관련이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에서 언론보도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해왔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슈화를 넘어 법제도 마련까지의 여정에 언론은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반면, 선정적 사건 보도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보도 내용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해온 측면도 상당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2018년에 제정한 <성폭력피해자 권리 헌장><sup>345)</sup>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언론보도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도 과정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질 권리,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인터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 심층보도를 통한 이슈화와 관련 법·정책 건인

본 특별상의 디딤돌로 선정된 언론보도의 특징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심층보도를 한 기자들의 노력을 들 수 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주장함으로써 친고죄 폐지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되었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심층기사를 작성해 성폭력 관련 사회 담론의 방향 설정에 기여한 기자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2012특별디딤1). 1988년 창간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신문사 기자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성폭력 관련 보도물이 27건으로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345)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부록 5> 참조)

위한 기사를 작성하여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2013특별디딤2)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성직자의 여신도 성폭력 미수사건의 고소과정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자(2010특별디딤2),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도한 방송은 준강간 모의 실행 피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불법몰카촬영물 유포 피해자들이 관련 대책 부재로 인해 겪는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다뤄 성폭력 보도에서의 공중파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취해야 할 모범을 제시한 언론(2015특별디딤1)도 있다.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및 보도, 관내 중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성추행 건에서 2차 피해 발생상황을 기사화,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건 기사화 및 시·도의원에게 관심과 실제적 도움요청 등 지역 사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한 기자(2021특별디딤2)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단체 내 성폭력 사건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감과 지지를 하고 심층보도를 통해 공론화 및 사건대책위가 결성되는 계기를 만들고 2차 가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기자(2022특별디딤1)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2) 피해자의 신변노출, 선정적 보도 등으로 2차 피해 야기

가해자 가족에게 전달받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재판기록에 기반해 피해자의 이름과 연령, 대학과 학과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시하여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공격 댓글로 2차 피해 유발한 기자(2011특별걸림1)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의 전형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흥미 위주로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피해자의 집과 범행 장소, 피해자 부모의 직업과 수입 정도 등을 노출뿐만 아니라 집 내부로 들어가 내부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고 피해 아동의 일기장까지 공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 발생의 원인을 돌리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보도진들을 특별걸림돌로 선정하였다(2012특별걸림1).

형부에 의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 편의 소설처럼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관음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2016특별걸림1)와 준강간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방송사들(2017특별걸림1)도 특별걸림들로 선정하였다.

## 2) 장애인 시설의 직원 및 단체활동가의 아주 특별한 용기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는 피해를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아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내부 직원이나 자원활동가들의 고발이 없이는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에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 시설의 직원들이 특별상으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용기내어 제보한 청각장애인 교사는 학부모와 외부에 사건을 알려내고 피해 학생들의 수어 통역하였다(2011특별디딤1). 해당 교사는 이 일로 학교에서 해직 처리되었다. 그리고 가족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립원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려낸 7명의 직원은 법인 직원의 신분에서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발한 경우이다(2013특별디딤1).

장애인부모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 사회복지사(2010특별디딤1)가 있다.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주민 13명이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사건 인지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 발굴하여 연계한 활동가(2023특별디딤2)도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가 98세 이용자에게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에 대해 요양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피해 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증거 부족으로 반려되자 증거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여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2021특별디딤1).

## 3) 경찰의 낮은 인권 감수성 및 범의자와의 조직적인 유착관계

시민감시단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만이 아니라, 112 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경찰관

의 비리 및 범죄자와의 유착관계가 빚은 심각한 문제 등 2건을 특별결립돌로 선정하였다.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되어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구조 요청했으나 "단순폭행인 줄 알았다"라며 뒤늦은 현장 탐문 수사를 한 경찰,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 전화를 받은 후 범행 현장에 전화해 동거남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처리하며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라고 한 경찰에 대해 특별결립돌로 선정하였다(2012특별결립1).

버닝썬 클럽 내 발생한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눈감아준 경찰들은 오히려 경찰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클럽의 뒤를 봐주고 고위직 경찰이 재력가들과 유착된 비리가 있었던 경찰들도 특별결립돌로 선정했다(2019특별결립1). 이 사건은 경찰과 재계, 연예계 인물들과 친분이 확인됨에도 대가성 밝히지 못하였고, 관련 경찰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처분, 7명은 경고·주의를 주는 정도의 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 4) 대학의 피해자 구제에 능력 대응 및 대학 자율권을 앞세운 가해자 옹호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 및 대처 과정에서 대학이 규정에 따라 사건의 조사와 심의, 징계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관행들에 대해 시민감시단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두 개 대학을 특별결립돌로 선정했다.

교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학생 추행 사건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학 내에서는 1심 선고 이후 교수에게 징계 요청하는 등 능력 대응했고, 그마저 2심 선고 후로 징계 의결을 연기한 대학이다(2020특별결립1).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을 불안함과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대학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의무를 방기한 경우이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가 직원을 강제 추행 해 피해자가 이를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기각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허위신고로 징계(피해자는 해고, 목격자는 정직 3개월, 수습 기간 중이던 해당 직원은 채용취소)했다(2021특별결립1). 피해자는 대학의 이러한 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교육부에서도 특별감사 실시해 인권센터 교수 등에게 중징계 통보했으나 오히려 대학 내 자율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이다.

## 5) 지침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요원하게 한 법원행정

피해자가 신청한 판결문 발급조차 재판부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요원하게 한 경우가 있어 특별걸림돌로 선정하였다(2023특별걸림1). 해당 법원에서는 형사과의 지침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우편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고 반박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판결문 발급 허가조치로 인해 피해자에게 시간적, 비용적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법 접근 기회를 어렵게 한 것이다.

## 6)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결정 및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노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새로운 흐름 및 기대를 갖게 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별 디딤돌로 선정된 법원 내 젠더문제에 관심 있는 판사들의 모임인 '젠더법연구회'이다(2011특별디딤2). 종래 여성판사들의 친목 모임인 여성 법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여성 법관의 리더십, 성폭력, CEDAW 등 젠더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법관들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젠더감수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법원의 문화를 바꾸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sup>346)</sup>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치상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므로 이해하라, 피고인 가족도 힘들어한다"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재판 중 발언도 인권침해로 인정하여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2023특별디딤1).

## 7)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한 시민들

시민감시단의 첫 특별상은 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는데 졸업한 제자에게 지속적인

---

346) 2021년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도 새롭게 조직되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1091P)』 책자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연락하던 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설득해 상담소로 연계한 사례이다(2009특별디딤1). 해당 선생님은 재판에도 증인 출석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였다. 만약 피해자에게 이 선생님이 없었다면 가해자 처벌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피해는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해자를 지원한 상담소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선생님에 대한 특별상 수상을 추천하여 시민감시단 특별상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된 사례이다.

일반시민이 특별상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2022특별디딤2). 지적장애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입는 상황을 인지한 부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자 오히려 가해자에 의해 역고소 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위협에 빠진 이웃에 대한 용기 있는 시민의 행동에 시민감시단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 시민들의 특별한 용기와 실천을 밝혀내어 알리고자 한다.

## IV. 결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을 결성하여 지난 20년 동안 여성 인권 존중의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7건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민감시단이 선정한 디딤돌·걸림돌의 내용을 쟁점별, 피해유형별, 절차적 문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쟁점별 분석에서 도출된 과제

첫째, 최협의설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저항행위 존재 여부를 강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기준이 되어 왔다. 최협의설은 피해자가 저항행위를 하지 못했거나 저항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강간죄 성립이 부인되어, 결국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강간인지 합의된 성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이 전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문제점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시민감시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을 변화시키는 수사와 재판 실무에 대해 디딤돌로 선정하고, 최협의설에 기초하여 협소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시민감시단 활동은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최협의설의 변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실질적 저항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던 최협의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저항행위를 입증하지 못해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들을 디딤돌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최협의설을 폐기하진 않았지만 최협의설의 적용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가 디딤돌로 선정된 이래 실제 저항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범행 당시 사정으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협의설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도록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던 태도 역시 변화하였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와 범행 당시 및 전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저항행위 입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행·협박 내용과 범행 전후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수사 및 재판 실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의 최협의설 폐기와 달리 강간죄에서는 여전히 최협의설 법리가 유지되고 있어, 기소 처분이나 하급심 판단에서 여전히 최협의설을 피해자의 저항행위 입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사례들을 걸림돌로 선정하여, 대법원 판례 변화를 반영한 수사 및 재판 실무의 정착을 촉구하였다.

강간 등 성폭력 재판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왜곡하는 폭행·협박의 최협의설 법리는 완화되고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최협의설 법리가 폐기되었다. 그러나 법리의 변화만으로 성폭력 재판의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최협의설을 폐기함으로써 폭행·협박과 위력과의 차등적인 관계 설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 해석의 변화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입법적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 범죄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주로 걸림돌 사례를 분석하였다.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어서, 우발적 범행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공탁해서,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수강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자원봉사를 해서, 피해자를 부양해야 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감형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더욱 관용적인 양형 관행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 범죄의 온정적 처벌 관행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비롯하여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과 기준의 변화를 이끌었다. 2009년 “성범죄 양형기준”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이 있었고 판단기준은 더 상세해졌다. 또한 양형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되고 ‘기습공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행해지기도 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처단형을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양형기준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양형인자 및 양형인자의 정의가 잘 준수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들이 법관의 재량으로 부당한 정상참작 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향후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절성과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 관대한 처벌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요구된다.

셋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장벽이 된다. 20년의 세월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어떤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는 지에 따라 통념이 작동하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무 현장에서는 느끼게 된다. 국민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백래쉬와 같이 오히려 더 강화된 여성혐오나 통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과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그 맥락과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거나 ‘유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왜곡되어 비판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다움의 통념이나 강간 신화를 비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어떤 주장도 무비판적으로 모두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통념과 편견에 의해 갇힌 사고를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이 가능성에는 당연히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을 열어둔 채 더 신중한 판단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개별 사건들에서의 상담소 등 지원단체들의 노력, 비판적 판례평석 및 토론회, 디딤돌·걸림돌 선정과 같은 여러 노력들이 통념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고소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무고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무고의 문제는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겁박하여 성폭력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역고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가해자의 무고는 사회적으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 사건의 경우(15.6%)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 사건의 검찰 인지 비율(27.7%)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sup>347)</sup> 이것이 '성폭력 범죄는 허위 고소가 많다'라는 편견에 기반한 적극 수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무고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계에 기반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그 이후로도 성폭력 관련 무고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통념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개선 및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수사기관에 의해 야기된 2차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단순히 시혜적 조치가 아닌 법적인 의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디딤돌에 선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결론과는 달리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민사책임을 통해서나마 정의를 일부 실현하고 피해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의 판단을 비교할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사건 판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또는 중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2. 피해유형별 쟁점과 과제

---

347)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5-126쪽

첫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시민감시단의 핵심적 요구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수사, 재판이었다.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들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장애 자체가 얼마나 심한지를 중심에 두거나 비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를 믿지 못하거나, 진술 조사과정에서 의사 소통상의 특성이나 필요 등을 반영하지 않아 증명력 있는 피해 진술을 수집하는 데 실패하였다.

반대로 디딤돌 사례들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질문 방법과 전문가 참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진술 조사환경을 조성하거나, 피해자 지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거나, 장애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지원체계를 연계하거나,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비일관성이 나타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과 진술 사이의 간격, 진술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증명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성폭력을 수월하게 하는 장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태도 등을 보이며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끼치는 영향을 진술 조사와 구성요건 판단에 반영하라는 시민감시단의 요구는 법률 개정과 수사 관행 및 법원 판단기준의 변화를 견인하였다. 그럼에도 장애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범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둘째, 아동 대상 성폭력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그간 어떤 다른 범죄보다 강력 처벌이 내려지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일반 예방' 효과와 심각한 정신, 성격, 인지 혹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가급적 오래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막는 '특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sup>348)</sup>고 보고 강력한 처벌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정책은 되려 정상참작과 작량 감경에 의해 감형되거나,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제대로 된 처벌로

---

348) 표창원(2010).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강력한 처벌에는 그에 걸맞은 피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했고, 피해자는 선별되었으며,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로 판단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무고에 대한 처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은 처벌이 강조된 만큼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선별과 검열 역시 강화되고 있다<sup>349)</sup>는 것을 반증한다.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명성이 강조되어왔다. ‘반인륜적인 비극’, ‘영혼의 살인’,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과잉된 병리화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피해자를 더 취약하거나 무력한 위치로 상정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원단체에서는 무력한, 치명적이라는 성폭력 편견과 통념,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조력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셋째,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수사·재판 감시 결과, 신속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구속기소 하여 피해자와 조기에 분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디딤돌로 다수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 증거에 대해 친족에 의한 피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이후 하급심 판결 등에서 주요 기준점이 되었다. 특히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나 협박으로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를 세심히 살피는 등 ‘가족관계’ 내의 다른 역동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수사 재판과정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위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더 나은 판결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판결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친족 성폭력 편견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판결들이나 친족 범위에 대해 좁은 해석과 경제권을 가진 가족 내 가해자의 위치에서 행사되는 위력을 살피지 못한 판결들은 앞으로 친족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

349) 추지현(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20권제3호, 66페이지  
검찰 발표 자료 2014년 5월 12일 의정부지검,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 더 이상 안돼요!’ <https://www.spo.go.kr/site/uijeongbu/ex/board/View.do>

재판부에서 변화한 시각과 판결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친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과 기소, 판결에 이르는 법적 해결 과정의 첫 문을 여는 공소시효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특성이 사라지고,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 일부 범죄에 대해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친족 성폭력 피해가 시간이 경과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처벌해야 하는 특성이 사라져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할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등 향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준강간의 상황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이 성폭력의 증거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타났으며,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경우만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 법체계에서 '정상적 판단 능력의 부재', '반항의 절대적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라는 준강간죄의 협소한 기준이 처벌이 불가능한 영역을 양산하였다. 걸림돌 선정사례에서 추천 단체들은 술이나 약물이 연루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아 준강간의 피해자가 더 많이 의심을 받고, 피해자는 성폭력 상황에 대해 아예 설명할 수 없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데 비해 명확한 가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받는 현실을 비판함. 또한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했지만 있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판단하고자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폭력이 있었는지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하려 하는 문제를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의식 상실과 기억 형성의 실패를 구별해야 하고,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수면, 알코올, 약물 등으로 정상적 판단,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했다.<sup>350)</sup> 그러나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사이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수면, 알코올, 약물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가해자가 이용하고 그로 인해 폭행, 협박이 없이도 일방적인 성교가 가능했지만 준강간에도, 강간에도 해당할 수 없는 문제는 폭행, 협박을 기반으로 구성된 성폭

350)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력 범죄를 동의 의사 기준으로 재판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래 소위 신종성폭력으로 분류되어 처벌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성폭력에 대해 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형사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음란성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법 해석이 나타난다.

시민감시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때 음란물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기 및 노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법 해석 사례들을 걸림돌로 선정해왔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이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절차 진행에서 피해 촬영물을 다룰 때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에 노출시키는 태도에 대해서도 걸림돌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성폭력을 다루는 법 해석과 형사절차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폭력의 착취적 성격과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보호법익의 의미와 반의사에 대한 해석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규정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의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적 대상화'의 의미가 인격을 부인하고 사물화하는 태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음란성 여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침해가 개인적 법익침해가 되는 기준을 특정 행위들을 각각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는 입법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판례를 통해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의미인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라는 보호법익 침해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섯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트 관계 또는 부부관계 등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이, 이전에도 성적 관계가 있었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구성요건에서 이미 탈락하거나 오히려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로 해석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해 기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2년 4,765건의 강간 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료에 따르면<sup>351)</sup>,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가해자 관계가 전연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262건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 상황은 강요(80건, 30.5%) > 회유(38건, 14.5%)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의 성적 요구는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맥락에서의 '강제된 동의'로 드러나고 있으며<sup>352)</sup>, 성폭력 범죄의 판단기준이 폭행협박에 그쳐있는 현실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폭력이 제대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의 「2023년 분노의 게이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sup>353)</sup>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이며, 살인미수 등을 포함한 피해자 수는 449명에 이른다. 여성 살해 피해자 138명 중 79명은 전/현 배우자 관계의 남성에게, 49명은 전/현 데이트 관계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통계도 처벌 법안도 공백 상태에 있다.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보호법익, 처벌 규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성에 착목하여 피해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구성되어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에 이르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시에 필요하다 하겠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를 정의하고 이를 다루는 법체계 신설은 그간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는 방식과 별도의 법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안 발의가 진행되었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로 인식하여 처벌의 내용을 담은 입법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일곱째, 군 성폭력은 사건 처리 과정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모든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군수사기관,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더 이상 문제 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법원이든 민간의 일반법원이든 군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351) 나무(2023),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현실 돌아보기,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제 토론회 자료집>

352)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3) 최선혜(2024),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서 처리되는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적 접근이 여전히 요구된다.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반법원에서 군 내부의 위계적 관계나 부대 특성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 감시, 비판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차별로서의 성폭력 문제를 살펴보았다. 공적 영역에서 권력관계 내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는 성희롱 구제 절차와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있다. 공적인 권력관계 내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차별적 구조와 그에 중첩된 지위나 연령 등에 따른 권력구조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이 법 해석 및 법 적용과정에서 요구된다.

시민감시단은 성희롱 법제도 도입 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성인지 관점 없이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고려하여 성적 언동에 대해 판단하거나 징계양정을 경미하게 조정하는 태도에 대해 걸림돌로 선정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권 침해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축되는 등 성희롱 관련 법 해석은 어느 정도 안착화되었으나,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 등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영역에서는 공적인 권력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성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의 속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적인 권력관계 내에서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소극적이거나 비밀관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태도들이 나타났다.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걸림돌로 선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관계의 맥락과 차별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수사와 재판 실무에 대해서는 디딤돌로 선정하여 격려해왔다. 업무상 위력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권력관계 내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질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대해 혼란이 존재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구조 등 성폭력이 일어난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속에 피해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로서의 성적 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sup>354)</sup>에서 성인지 관점에 대해 판시하면서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마치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피해자의 진술은 무조건 증명력을 인정하라는 요구인 것처럼 왜곡되어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성별 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념화가 아직 사회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이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로서의 성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성운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헌법 제30조에 근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재판 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형사소송법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 운용상의 문제<sup>355)</sup>도 지적되고 있다.

사례 분석과 같이, 절차적 문제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충실히 실행하여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들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송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나, 개별 법령에 흩어져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판부의 재량 내지는 수사기관에서의 방어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를 소송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절차적 문제의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 살핀다면, 형사소송 절차상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

3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공2024상.430]

355) 지원단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을 하고 국선번호인 지정 안내받지 않아 초기 진술조서 때는 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수사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도 사건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경험한다.

등으로 소송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등이 그 내용일 수 있다.

기타 특별상 선정 사례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담당자들 이외에 언론을 비롯한 피해자 주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지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별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은 심층보도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짚어내어 이슈화하고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련 법과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신변을 노출하거나 선정적 보도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언론의 양면성이 재확인되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감추어졌던 인권침해 상황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지원한 내부 직원들, 이웃에 사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한 시민들은 변화를 위한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및 실천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앞으로 다양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수사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전국의 지원단체들은 현재 시행 중인 수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제도적 역할을 했는지 모니터링 해왔다. 때로는 부족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법제도 개선 활동의 바탕이 되는 사례도 만나고 때로는 제도가 안착되어 실질적인 권리보장 행사의 틀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마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재판 절차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2차 피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의 쟁점들을 짚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년의 시간 속에서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의 눈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모아 자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실천이 바쁜 일상에서 흩어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현장과 이론의 환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 향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각 쟁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간죄’ 개정이나 공소시효 폐지, 양형, 역고소 문제와 관련한 입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사법 절차를 담당하는 각 경찰이나 검찰,

법원 담당자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감시단이 선정한 디딤돌·걸림돌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담당자들이 실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안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성폭력 관련 법률과 법 해석, 형사사법 절차 및 관행의 개선에 전성협 시민감시단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리한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여성 인권 운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실천적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곽명달(2006),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동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2),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군인권센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2. 6. 13)
- 권오걸(2021), 준강간죄에 대한 입법례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66.
- 권인숙 외(2004),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순(2017), 전국성폭력상담소 사례조사결과 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그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
- 김영희 · 박광배 · 이재희(2004), 여성살인범의 특징,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 치료적 사법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보고서.
- 김은정(1999),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 한국 장애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 김정혜(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 · 김정혜 · 고현승 · 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무(2023), 폭행 · 협박없는 성폭력 현실 훑어보기,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제 토론회 자료집, 강간죄개정연대회의(2023. 7. 25).
- 박상기(2005), 형법각론, 박영사,
- 박선미(1989),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4, 289-316.
- 박아름(2017),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의 판결 동향,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9. 19).
- 박정난(2023),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 및 제안 : 영미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

- 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3(1), 291-323.
- 법원행정처(2022),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 변종필(2006),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8(2), 147-168.
- 성세희(2022), 성폭력 무고 담론의 구성 - 언론과 온라인 공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 논문.
- 송명순(200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송승현(2019), 강간죄의 행위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한국정책논집 19(2), 45-53.
- 심영희 외(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 오인애, 2023. 8. 31. 여성변호사회, 초등학생 성착취 범죄자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은주(2006),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주연(2005), 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계수 등(200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_\_\_\_\_(2015),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명숙(2005),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토론회
- 이미경(2008),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활동평가(2004~2007), 2008년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2008.2.22.).
- \_\_\_\_\_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17),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이미정 외(2021),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재희(2004),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지원하며,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토론회 자료집(2004. 10. 13).
- 장다혜(2009), 성폭력 법담론 :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에 맞서다 : 사례·담론·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한올아카데미.
-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장다혜·이경환(2018),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필화 외(2012),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5), 2005년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2005. 2. 22).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2004), 형사절차상 2차피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2~4), 제22차~24차 정기총회자료집.
- 조국(2003),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 최선혜(2024),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외 6개 단체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외 4인(2024. 9. 11).
- 최은순(1993),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 8, 95-102 ;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3.
- 추지현(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20권 제3호.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2020),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 표창원(2010).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 정책들에 대한 검토,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 \_\_\_\_\_ (2006),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23),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 한국성폭력상담소·최영희 국회의원(2008), 아동·청소년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
-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 : 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2007. 6. 1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연구.
-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3, 33-52.
- \_\_\_\_\_ (1998),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 10, 113-136.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202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 자료집(2022. 7. 5)
- 허민숙(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한국여성학 제34권 4호.
- \_\_\_\_\_ (2024), 감춰진 피해자들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D(2022),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피해자에서 생존자, 그리고 감시자가 된 마녀 D의 사법 연대기, 동녘.

## 2. 외국 문헌

- Cox, P.(2015), Violence against women in Australia: Additional analysis of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Personal Safety Survey, 2012. Sydney NSW, ANROWS.
- Ferguson, C. E., & Malouff, J. M. (2016), Assessing police classifications of sexual

l assault reports: A meta-analysis of false reporting r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5(5), pp.1185-1193.

Horvath, M., & Brown, J.(2007), Alcohol as dry of choice: Is drug-assisted rape a misnomer?, Psychology, Crime & Law, 13(5), pp.417-429.

Kim, B., Gerber, J., Kim, Y., & Hassett, M. R. (2018), Female-Perpetrated Homicide in South Korea: A Homicide Typology. Deviant Behavior, 39(8).

Long, J.(2006), Explaining counterintuitive victim behavior in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cases, The Voice, 1(4).

MacKinnon, C. A. (1979), The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Yale University Press.

Möller, A., Söndergaard, H. P., & Helström, L. (2017), Tonic immobility during sexual assault: A common reaction predic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evere depress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5, pp.103-109.

Wall, L., & Quadara, A.(2014), Under the influence? Considering the role of alcohol and sexual assault in social context, Melbourne: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all, L., & Tarczon, C. (2013), True or false? The contested terrain of false allegations. Melbourne: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3. 국내 보도자료 및 국내·외 인터넷 자료

경기일보 2018. 11. 8.자 기사, 「인천 정가 최초 미투사건 법원으로...검찰, 무고 적용 초강수」.

경향신문 2017. 12. 21.자 기사, 「군사법정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선고유예’ 비중 일반법정의 8배」.

경향신문 2021. 6. 16.자 기사, 「장교 추행에 군사법원 “자연스런 신체접촉”...대법 “추행 맞아”」.

군인권센터2014. 11. 5.자 보도자료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68>.

권혜정, 2015. 7. 31.,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289938>.
- 김가영, 2010. 8. 18.,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올바르게 수사·판결하라”,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
- 남보라, 2023. 8. 9., “아아 애기시구나”... 초등생 성 착취 공무원 등 6명 ‘집행유예’ 그친 이유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911090003379>.
- 뉴시스 2022. 3. 2.자 기사, 「尹 “성범죄 상향에 무고죄도 맞춰야” vs 沈 “무고죄 2차 가해”; 오마이뉴스 2022. 3. 4.자 기사,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가장 높다” 심상정 발언 ‘대체로 사실’ - 최대 형량 미국·독일·프랑스 2배 수준 ... UN도 성폭력 사건에 무고죄 남용 우려」.
-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208>.
-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 7. 7., [기자회견문]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https://peacewell.org/기자회견문-피해자의-시간은-여전히-2017년-5월-5일이다>.
- 성폭력범죄의수사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 신승희, 2023. 8. 10.,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초등생 성매매’ 6명 모두 집행유예 ‘울분’, 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2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2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아시아투데이, 2015. 4. 14.자 기사, 「김용남 의원 대정부질문 “군사법원 폐지해야”」.
- 양형위원회, 2021. 12. 6.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12/6(월) 제113차 회의 결과, <https://sc.sccourt.go.kr/sc/krc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all&seqnum=1289>.
- 에이블뉴스 2008. 12. 3자 기사,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 판결 규탄": [성명]장애여성 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이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
- 여성신문, 2017. 7. 10.자 기사, 「‘꽃뱀’ 몰린 피해자 향해 “상대방 좋아했냐”고 묻는 검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67>.
- 연합뉴스 2002. 10. 22.자 뉴스, 「‘성폭력 역고소’ 대응 공론화」; 동아일보 2002. 7. 10.자

기사, 「“성폭력 역고소 단호대처” 각계인사 공동대책위 구성」.

연합뉴스 2015. 7. 16.자 기사, 「女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성추행 소령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 2023. 3. 8.자 기사, 대검, '교제폭력' 엄단... "중대 상해·보복, 구속 원칙", 연합뉴스, 2023. 3. 8.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139100004>.

의정부지방검찰청 보도 자료, 2014. 5. 12자,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 더 이상 안돼요!'. <http://www.spo.go.kr/site/uijeongbu/ex/board/View.do>.

이보라, 2019. 7. 17., '김준기 성폭행' 피해자 “합의 하 성관계? 목숨 걸고 아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7170807001>.

이투데이 2014. 3. 25.자 기사, 「‘오대위 자살사건’ 부대 측, 유족에 황당한 선처 종용... “아빠, 노소령 괴롭히지 마세요”」.

이형관, 2023. 11. 20., 판결 988건 최초 분석... 절반 이상 '기습공탁',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1970>.

일다 2018. 3. 7.자 기사, 「피해자를 침묵시켜온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7. 9. 14.,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3893>.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2023. 3. 29. 보도자료, 제15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 행동하지 않으면 차별, 성평등 시작은 나로부터.

조은호, 2023. 8. 29.,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690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6900).

조하나, 2020. 6. 30.,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AYBTZIYHSOC>.

중앙일보 2016. 9. 26.,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준다”는 성폭력 재판부 판사」.

중앙일보 2020. 4. 8.자 기사(수정 2024. 9. 29.)오덕식 판사는 구하라 영상 꼭 봐야했나...법정선 무슨 일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1098?sid=102>. (최종검색일: 2024. 11. 22.).

프레스리안 2019. 11. 29.,자 기사, “오덕식 판사, 옷 벗어라”-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7744>. (최종검색일: 2024. 11. 20.)

한겨레 2019. 11. 4.자 기사, “레깅스 불법 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15593.html>. (최종검색일: 2024. 11. 20.).

한겨레신문 1996. 6. 25자 기사,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성폭력법 처벌 대상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9. 16.,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https://www.sisters.or.kr/activity/total/469>.

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 [2006]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소개글,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2536#>! (최종검색일: 2024.10.5.).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22.3.2.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https://peacewell.org/wp-content/uploads/2022/03/사후-기자회견보도자료\\_220302.pdf](https://peacewell.org/wp-content/uploads/2022/03/사후-기자회견보도자료_220302.pdf).

Fact sheet : Challenging misconceptions about sexual offending, <https://www.police.vic.gov.au/sites/default/files/2019-01/FINAL-factsheet-for-web-Challenging-Misconceptions.pdf>.

JTBC 2016. 9. 29.자 기사,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올린 판사」.

KBS 2011. 6. 10.자 기사, 「성폭력 피해여성, 재판과정서 ‘문제女’ 취급에 자살」.

KBS 2014. 3. 21.자 기사, 「‘자살 여대위’ 강제추행 인정하고도 집행유예 선고」; 채널A 2014. 3. 20.자 기사, 「여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성추행 상관 ‘집행유예’ 논란」.

KBS 뉴스 1996. 7. 5.자 기사, ‘폭행사위 살해 혐의 이할머니 정상참작 석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63632>.

UN OHCHR, Harmonization of criminal laws needed to stop rape – UN expert, 28 June 2021,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1/06/harmonization-criminal-laws-needed-stop-rape-un-expert>.

#### 4. 법률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여성발전기본법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대법원규칙 형사소송규칙

## 5. 판례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 도 264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 [공2005.9.1.(233),146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83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6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22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672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18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29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56, 2020전도7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610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363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2018노195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77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31 판결.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보통군사법원 2014. 5. 16. 선고 2014고4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 27. 선고 2014노16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22. 선고 2020노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5노9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35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7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12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8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2. 9. 선고 2003노8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42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노35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노42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17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9노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6노27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913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27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노3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2노19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1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3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노26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18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1노7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30. 선고 2024노57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고합321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합18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167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27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60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09. 3. 19. 선고 2008노4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8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4. 17. 선고 2019노4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2고단389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노32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2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18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노283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고합9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합52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합69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노12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고단280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7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합3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32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370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고합358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3922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노11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4가단275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5. 선고 2007고정15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42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329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4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합3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단16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09가단4802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 선고 2018노28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75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1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노3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628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고합3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7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노82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고합5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30. 선고 2015고합32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3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67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3고합2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6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9. 25. 선고 2009고합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24. 선고 2024고합2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23 판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9 판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합6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합15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10. 31. 선고 2003고합3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고합22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5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소31064(본소), 2018가소31804(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453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7.자 2018헌마559 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부록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역대 디딤돌·걸림돌 선정 현황(2004~2023)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4	디딤돌 1	최완주(재판장) 박연주(판사) 김갑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제22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라고 판시하며 아내 강제추행죄를 인정 한 첫 판결. 부부관계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었던 그동안의 법 해석과 관행 바로 잡는 시금석.
2004	디딤돌 2	박철(재판장) 고제성(판사) 김양훈(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판시하며 피해자의 저항 정도, 고소유예, 피해장소 등은 강간 판단의 주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피해자다움 및 최협의설 타 파한 판결.
2004	디딤돌 3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7명)		성폭력 특수성 고려한 신속한 사건 접수, 피해자 안위와 정서를 고려한 편안한 진술 분위기 조성함. 적극 수 사를 통한 2차 피해 최소화.
2004	디딤돌 4	양정일(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	군인에 의한 강간치상 피해 형사소송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된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피고 책임 인 정, 피-가해자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데이트 관계 아닌 성폭력 관계임을 드러내고 병원기록, 상담 기록을 인 정하여 3천만 원 배상 판결.
2004	걸림돌 1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밀양 물 흐려 놓았다"라며 피해자 비난, 피해자 신원 간접적으로 노출, 여성 경찰 배치 요청 불수용, 피해자에게 면전에서 가해자 지목게 하는 수사 하여 2차 피해를 줌.
2004	걸림돌 2	권중영(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피해 어린이들의 일관된 진술을 불인정함.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언을 외면하고 증거채택 을 편향되게 함. 아동 성폭력 수사에 관한 전문성 결여. 경찰 단계 첫 비디오 녹화본 분실, 검찰의 불기소 처 분(증거불충분).
		이효진(차장검사) 허용진(주임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김태현(부장검사)	대검찰청	
2004	걸림돌 3	이호원(재판장) 김용관(판사) 김경호(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6세 아동이 성기삽입 피해 입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데 피해자는 정상 생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다움을 바탕으로 판결함. 피해자의 양가적 감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함.
2004	걸림돌 4	고규정(재판장) 채승중(판사) 정만규(판사)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	5년간 지속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성폭력 무죄 판결, 임신 및 임신 중단에 이르게 한 사건. "가해자가 때리거 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 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2004	걸림돌 5	윤재운(재판장) 김경호(판사) 김주호(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적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무죄선고함.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간과.
2004	걸림돌 6	손주환(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함.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며 "이 사건은 가족 내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영국에 가서 피해자 측을 만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중용.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4	걸림돌 7	이용일(검사) 윤용식(검찰주사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의 건강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임신중독, 품행장애, 자살 시도 등), 대질조사 강행, 장시간 조사, 보호자 입회 불허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함.
2005	디딤돌 1	김용담(대법관,주심) 배기원(대법관) 유지담(대법관) 이강국(대법관)	대법원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 사건 공론화의 사회적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
2005	디딤돌 2	김영린(대법관,주심) 강신욱(대법관) 윤재식(대법관) 고현철(대법관)	대법원 1부	(1) 군인이 차 안에서 14세 중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몸싸움 중에 일어난 경미한 상해로 강간치상죄 적용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2) 건장한 체구(82kg)의 가해자가 피해자(48kg)의 목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강간치상 인정하여 상고기각. (3) 노래방 도우미 강간 사건 무죄 판결을 강간치상죄 판결하여 고등법원으로 환송. 최협의설을 타파하고 강간치상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
2005	디딤돌 3	고영한(재판장) 유승관(판사) 최성배(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피해자의 특수성(부모이혼으로 친척 집 전전 등 피해자가 내적으로 우울, 무기력하여 적극적인 방어나 소리 지르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고려하여 최협의설에 의한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인정.
2005	디딤돌 4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전담수사관		시설에 기습수사하는 등 8개월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힘.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 사건을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최소화 노력.
2005	디딤돌 5	허서무(계장)	용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진술 녹화실 신속 설치, 전 직원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 방문해 가해자에게 행위 중지 요청, 청소년 유해 광고물 특별단속,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실 운영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하고 수사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2005	디딤돌 6	이종필(군수사관) 강일(군검사) 조순표(군검사) 유광엽(서기관) 송경인(군판사)	육군 제3697부대 법무부 육군 제3697부대 법무부 수도방위사령부검찰 수도방위사령부검찰 수도방위사령부재판부	피해자가 가출한 상황에서 군인에게 준강간 피해.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수사 진행함.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거하고 있는 쉼터에서 재판 진행하며 쉼터 관장 등을 신뢰 관계인 동석계 함.
2005	걸림돌 1	김이수(재판장) 김양규(판사) 전주혜(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 관점을 교묘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판결.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5	걸림돌 2	이호원(재판장) 황병헌(판사) 김미리(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명의 집에 침입하여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범행 한 자에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감경.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노모와 어린 자식이 있는 가정 사정 등을 감경 요소로 참작하여 15년으로 감형.
2005	걸림돌 3	황진호(재판장) 이현복(판사) 정영태(판사)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44명의 고등학생 가해자들이 여중생을 지속해서 성폭력 한 사건.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는 점을 들어 기소된 10명 전원을 소년부 송치(기소 전 20명도 소년부 송치).
2005	걸림돌 4	윤태호(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4단독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의 실제적 사실확인과 무관한 모욕적 심문을 가해자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그대로 진행. 피해자의 기본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 주장을 피고인 및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방어권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태도.
2005	걸림돌 5	강구욱(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에 나올 것을 강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공개와 비공개가 무슨 차이가 있나?", "찌리는 게 있으니까 비공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함(결국 비공개 전환).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불필요한 질문 반복.
2005	걸림돌 6	박혁수(검사) 김훈(부장검사)	춘천지방법검찰청 원주지청	농구선수가 십대 청소년을 성폭력 한 사건. 검사는 모욕적인 언사 하며 "(현장검증에서 범행 재연하라고 하며) 올라타라"는 등 인권 침해적 수사 진행, 문제가 되자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자신은 만류했었다고 해명자료 내어 피해자 가족을 명예훼손 함.
2006	디딤돌 1	노만경(재판장) 김주욱(판사) 이선희(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형사부	사실혼 관계 내 강간 인정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번 심각하게 다툰 정황, 애원까지 하며 거부한 피해자의 의사 무시, 즉시 신고 원쪽 무릎 상해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하며 강간 유죄 판결.
2006	디딤돌 2	박민자(수사관) 이모란(수사관) 박민선(수사관) 이숙자(수사관)	부산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한 수사. 5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방문 조사하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편의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절한 수사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함.
2006	디딤돌 3	강형순(팀장) 문경숙(계장) 김은정(수사관) 이형찬(수사관) 전조욱(수사관) 정종락(수사관) 안병채(수사관) 이기주(과장)	전주경찰서 강력1팀 전주경찰서여성청소년계 전주경찰서여성청소년계 전주경찰서여성청소년계 전주경찰서강력3팀 전주경찰서강력3팀 전주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전주경찰서생활안전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함. 대학가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수 개월간의 협박과 강간이 동반된 폭력을 수사하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6	디딤돌 4	황현주(재판장) 이현주(판사) 노유경(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폭행·협박 죄혐의설을 완화하고 데이트 강간 인정함. 피해자의 거부 의사, 취침 시 강간, 가해자가 강간이 있음을 시인 등에 비추어 강간 인정. 최 국회의원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라는 변명에 썩기, 강제추행 처벌 수준 강화.
2006	디딤돌 5	안대희(대법관,주심) 김황식(대법관) 김영란(대법관) 이홍훈(대법관)	대법원 3부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 시도한 사건 무죄 선고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유죄 취지 판단.
2006	디딤돌 6	이태종(재판장) 김선희(판사) 오태환(판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성희롱 판단기준을 확대함.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6	걸림돌 1	박민주(재판장) 윤찬영(판사) 정혜원(판사)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신부에 의한 유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불인정, 유아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 결여, 피해 아동들이 유치원 교육 시간에 외부에서 발견된 점과 관련해 유치원의 관리책임 소홀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2006	걸림돌 2	이재환(재판장) 김종문(판사) 김태호(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심에서 피해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지 않고, 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에서 피해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모순점과 의문점을 발췌하여 1심에서 인정한 장애아동 피해자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배척함.
2006	걸림돌 3	인천중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 대역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황의 재연을 요구하여 2차 피해를 줌. 112타격대 소속 전경 4명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소속 경찰과 전경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소홀.
2006	걸림돌 4	김경배(재판장) 이동진(판사) 정지영(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	9개의 2차 피해 중 사건 수사 경찰이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 누설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가 책임 불인정. 범인 식별실 미사용 (면전에서 가해자 골라내라고 함)한 건에 대해 의무가 아닌 담당 경찰의 재량이라고 판단함.
2007	디딤돌 1	김능환(대법관,주심) 박시환(대법관) 박일환(대법관)	대법원 제2부	평소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성행위 거부하면 폭행당할까 겁났다는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이 장애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이었음을 인정.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2007	디딤돌 2	윤중기(검사) 예세민(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친딸 3명에게 10여 년간 성폭력 한 가해자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수 등 4가지 죄명을 적용하여 기소. 재판에서 15년 구형하고, 1심 10년 선고되자 형량 낮음을 이유로 항소.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7	디딤돌 3	성미연(경위) 신흥남(경사) 노경수(경사) 오종훈(경사) 임종우(경사) 박지선(경사) 정설아(경사)	전남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	도서 지역 성폭력 발생 시 직접 방문 수사하고 헬기로 가해자를 긴급체포(동거녀의 외손녀를 4년 동안 강간, 피해자의 기초 생계비 횡령 사건)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육지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함.
2007	디딤돌 4	강영호(재판장) 김무신(판사) 남기주(판사)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직장 내 성폭력, 회식 자리 음주 강요까지 불법행위로 인정. 1주일에 2회 이상 새벽 3~4시까지 회식문화 속에서 "술을 대신 마셔준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라고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성희롱한 사건. 민사 소송한 건에 대해 3,000만 원 배상 판결.
2007	디딤돌 5	이수연(팀장) 최은숙(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팀	캄보디아 주재 NGO 단체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지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 밝히고, 현지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까지 밝혀내는 열정적인 조사. 3,000만 원 배상 권고. 해외 파견 근로자와 자원활동가들의 인권 보장.
2007	디딤돌 6	임성철(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성폭력 특별법 8조 적용하여 장애인 항거 불능상태 해석. 사회 봉사명령이 아닌 징역 10개월 선고. (세탁소에 바지 줄이러 온 중복장애(시각,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옷 치수 재야 한다며 강제 추행한 건)
2007	디딤돌 7	박미옥(경위) 이병하(경장) 이상희(경장)	서울양천경찰서 강력6팀 서울양천경찰서 강력6팀 서울양천경찰서 폭력3팀	물증이 부족하여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술 녹화함. 모든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피해자를 존중하며,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2007	걸림돌 1	이홍훈(대법관,주심) 안대희(대법관) 김황식(대법관)	대법원 제3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교감에게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선고.
2007	걸림돌 2	고의영(재판장) 이평근(판사) 설민수(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고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며 최협의설을 적용하고 가해자 고령, 초범, 반성 중, 합의 등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
2007	걸림돌 3	송영천(재판장) 유헌중(판사) 조건주(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1심에서 1년 6월 선고된 딸 성추행 및 아내 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딸 성추행 건은 무죄 선고됨. 재판부는 딸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평소의 애정 표현을 딸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선고함.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함.
2007	걸림돌 4	정형식(재판장) 김선희(판사) 장찬(판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사내에서 성희롱 경고 조치 후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를 해고한 사측에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결. 성희롱 행위가 술을 마시다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소송이 없기에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7	걸림돌 5	김용찬(재판장) 김태건(판사) 송민경(판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학생을 성폭력 해 해고 처분받은 교사 사건에 대해 원고의 성적인 의도 때문이 아닌 술김에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실수한 행동으로 보고 과중한 징계로 판단. 또한 곧 정년인 피고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한다고 판결.
2007	걸림돌 6	조용호(재판장) 유승룡(판사) 박우중(판사)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해고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 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내 권력관계나 생존권 박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바로 문제 제기하지 못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한 판단.
2007	걸림돌 7	김경선(재판장) 안효승(판사) 오현석(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유치원 원장 남편이 5세, 7세 원생 성추행한 건. 두 자매 모두 상담소 상담원이나 어머니의 유도신문에 의해 피해 사실을 조작 및 왜곡하고 있다며 아동의 진술을 전면 부정하며, 아동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2008	디딤돌 1	서지현(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최협의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가해자가 인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함. 수사 과정에서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알아들어야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저항해야 하는가?"라고 반문.
2008	디딤돌 2	성호선(경위)	양천경찰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담소를 찾는 등, 사건의 적극적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
2008	디딤돌 3	조병설(형사) 남정우(형사)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조직1반	아동 성폭력 사건(비친고죄)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 취하하였음에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끝까지 수사하여 기소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2건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
2008	디딤돌 4	선재성(재판장) 장수영(판사) 정수경(판사)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와 직장내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판결. (청구 금액 2배가량 많은 1억 1,500만 원 배상 판결)
2008	디딤돌 5	안대희(대법관,주심) 김영란(대법관) 이홍훈(대법관)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문제의식 없이 그간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사측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
2008	디딤돌 6	김상준(재판장) 이미선(판사) 손삼락(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유아 성폭력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술로 인한 총동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와 합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실형을 선고.
2008	디딤돌 7	강영호(재판장) 김무신(판사) 남기주(판사)	서울고등법원 제26재판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은 수사 담당자가 아닌 수사관에게 들은 모욕적 발언 부분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피해로 인정하여 성폭력 수사 과정의 피해자 인권 보호 더욱 강화한 판결.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8	걸림돌 1	오준근(재판장) 김현범(판사) 김진희(판사)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4명의 친족 일가가 지적장애 아동을 8년간 가해한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아동을 양육했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한 양형부당 판결.
2008	걸림돌 2	신용석(재판장) 최진숙(판사) 권창환(판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강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재활작업장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
2008	걸림돌 3	김영주(심판관 대령) 도현택(군판사,소령) 정의성(군판사,소령)	제2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군대에서 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항명 등의 죄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항명죄 유죄 판결.
2008	걸림돌 4	이시전(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넷에 집 임대 허위 광고를 낸 후,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직후 임대 문제로 고소하지 않다가 나중에 고소 후 취하하자, 피해자의 설명을 무시하고 고소 동기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
2008	걸림돌 5	이승호(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2008	걸림돌 6	김우수(재판장) 장찬수(판사) 하준필(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피해자가 가해자 2인에게 강제추행, 폭행당하고 강간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들이 문자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을 주고받았음에도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간 혐의 무죄 판결.
2009	디딤돌 1	고종주(재판장) 김태규(판사) 허익수(판사)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트랜스젠더여성 강간죄 객체 인정 최초 판례. 주거 침입하여, 칼로 트랜스젠더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 및 유사 강간한 사건에서, 성전환수술 이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2009	디딤돌 2	고종주(재판장) 김태규(판사) 허익수(판사)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피해자인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인 가해자가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건. 부부간에도 성적자기 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존재함을 명시하며 특수강간죄 인정. 그간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으면 부부간의 동거의무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부 강간을 죄로써 최초 인정한 판례.
2009	디딤돌 3	안남희(계장)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교사인 피해자가 고3인 시점부터 약 1년간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제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참여시켜 부당한 영장 기각 방지 효과에 이바지함.
2009	디딤돌 4	남재호(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1부	친부에 의한 강간 사건에서, 아청법상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가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조항(아청법 14조)을 신설 2년 만에 최초로 청구, 결정되게 하고, 이후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 권장 분위기를 조성.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9	디딤돌 5	김병국(형사과장) 이태욱 (성폭력전담팀장)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전국 최초로 성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현 사건과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적 수사를 펼쳐, 2년 동안 연쇄 성폭력범 96명 이상 검거.
2009	디딤돌 6	이광범(재판장) 이주현(판사) 권덕진(판사)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선고함.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2009	디딤돌 7	임상기(재판장) 신윤진(판사) 장규형(판사)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2부	성폭력 통념을 근거로 한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의료기록, 강간당한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간 인정한 사례. 최협의설을 완화함.
2009	디딤돌 8	박형남(재판장) 신종열(판사) 이완희(판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아동 성폭력을 이해하고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성인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9	걸림돌 1	김재승(재판장) 김연경(판사) 박민준(판사) 이성호(재판장) 강상덕(판사) 이언학(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정황 진술을 무시하고 신빙성을 부정.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조력 전문가 지원하지 않음. 15세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20세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 2심도 원심판결 그대로 인용.
2009	걸림돌 2	이영준(공판검사) 이태수(재판장) 박동복(판사) 김병국(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제1형사부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 감형함. 양형부당에도 항소 포기함.
2009	걸림돌 3	신용석(재판장) 이대규(판사) 이재찬(판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경도의 지적장애인을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기 집에 기거하도록 한 후 약 3년간 강간, 폭행, 협박한 사안에서 경도의 지적장애인이기에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축소 해석.
2009	걸림돌 4	김정도(재판장) 송민화(판사) 이상률(판사)	대구지법 제4형사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사건 발생 정황에서의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들어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 선고.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0	디딤돌 1	박은정(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그간 여성 연예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을 강요한 기획사 대표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성매매 사건으로 법리가 구성되었으나 본 사건을 성매매가 아닌 방송 연예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성적 인권침해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성폭력 사건으로 법리를 구성. 수사와 공판 검사를 겸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
2010	디딤돌 2	최윤숙(경사)	익산경찰서 형사과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도움을 받아온 피해자의 친모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하겠다는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피해자를 독려하여 안정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을 위해 연계함.
2010	디딤돌 3	김주현(검사)	대전지방검찰청	보호자들의 합의와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법리 사실을 법리적인 해석 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사하여 16명을 전원 기소.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 권리 확대 및 기소를 위해 노력.
2010	디딤돌 4	손왕석(재판장) 김기수(판사) 강윤희(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결여의 문제를 '증거능력 없음'으로 배척하지 않아야 하고, 가해 수단인 '위력'을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 등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판결.
2010	디딤돌 5	임상기(재판장) 박강민(판사) 박정원(판사)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는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림.
2010	디딤돌 6	이상민(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로 피의자 신분이 된 성폭력 피해자를 검찰 진술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영아살해의 직접적인 이유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소에 전화해 상담을 의뢰. 성폭력 피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
2010	걸림돌 1	서민석(재판장) 김세현(판사) 김세준(판사)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친족 성폭력 사건 자체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과 피해자의 성적 취향, 피해자의 부도덕함을 반복하여 거론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9회 강간 중 1회만 인정하여 선고함.
2010	걸림돌 2	이강원(재판장) 백승엽(판사) 반정모(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항의하지 못한 상황과 가해자가 범행 발각 우려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감행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근거로 성폭력 통념에 근거하여 1심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무죄 판결. 또한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2차 피해 발생.
2010	걸림돌 3	이상주(재판장) 박헌행(판사) 송선양(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가해자로부터의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모와 가해자의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지 수준이나 정황상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최협의설로 무죄 판결.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0	걸림돌 4	이상주(재판장) 박헌행(판사) 송선양(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
2010	걸림돌 5	김덕곤(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핵심을 보지 않고 주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기망하여 성폭력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1	디딤돌 1	문정일(재판장) 박재성(판사) 조아라(판사)	대전지방법원	외견상 연애 관계로 보이는 사이에서의 장기간 폭력 피해 사안에서 주말마다 4년 8개월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판단, 폭행 협박에 대한 넓은 해석으로 강간죄 인정.
2011	디딤돌 2	김민아(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인으로부터의 준강간 피해에 있어,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요구에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상담소 협조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피고인 퇴정, 차폐막 설치 등 절차상 권리보장.
2011	디딤돌 3	이상길(검사)	서울북부검찰청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서 해당 기관 감사계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고소한 사안에서 최협의 설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기소, 벌금형 판결.
2011	디딤돌 4	박정수(재판장) 박명수(판사) 김수정(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굳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근이 아니라 5년 전이라고 지목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죄 판결.
2011	디딤돌 5	이정엽(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형사상 유죄 입증이 쉽지 않으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일부 승소 판결.
2011	디딤돌 6	정영훈(재판장) 배정원(판사) 도영오(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처음 만난 청소년을 수면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적극적인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불필요한 묘사를 하였다는 점을 재판상 2차 피해로 인정 양형 기중요소로 참작하여 판결.
2011	디딤돌 7	김수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장 조사 없이 소환조사, 영상녹화 기기 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영상녹화 진술 3회, 직접 질문조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반복 진술하게 한 사실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1,300만 원 배상 판결.
2011	걸림돌 1	나상훈(판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대전지역 남고생 16명이 지적장애인 여중생 1명을 한 달여간 지속 성폭력 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소년부 송치된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수능시험을 이유로 8월 2차 공판 후, 12월 말로 선고 연기.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수강명령의 경우 내용을 미지정하여 성폭력 가해자 교정이 아닌 인성 교육 등 일반교육 수강하기도 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1	걸림돌 2	이동원(재판장) 오영표(판사) 이용균(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사회성, 성적증명, 피고인에 대한 저항, 애인 내지 이성 관계로 알았다는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전처 명의 주택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점 등을 들어 1심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성폭력 통념에 근거하여 무죄 선고.
2011	걸림돌 3	이동원(재판장) 오영표(판사) 이용균(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1심의 징역 15년형과 달리, 의붓딸을 지속 강간한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은 아니고, 이혼하여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상쇄되었다고 판단하여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징역 10년, 공개 정보 10년 선고.
2011	걸림돌 4	김동규(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작업공간(제빵실)에서 엉덩이를 손끝으로 스치는 등의 추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은 추행에 이르러 고소한 사안에, 제빵실이 좁아 서로의 신체가 스쳤을 수 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2011	걸림돌 5	권광현(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아는 사람 지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기절 상태에서 모텔에 끌려가 강간 피해를 입고 도망친 사안에 있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재판 진행에 대한 안내 부족과 미온적인 공소 유지.
2011	걸림돌 6	이영진(전 형사)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채팅으로 만난 외국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사건 인지한 경찰이 크게 사건화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허위신고로 오해받는다며 협박. 추가 진술받는다며 피해 당시 상황 재연 요구.
2012	디딤돌 1	문건봉(검사)	경남지방경찰청 아동보호 1391팀	한 동네 사는 피의자가 피해자 비난과 협박을 하자, 강제추행 가해자임에도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내 피해자로부터 분리.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적극적으로 수사.
2012	디딤돌 2	박해진(팀장)	대구 달서경찰서 강력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가해자 이름, 피해 일시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명의 가해자(친부, 스님, 동네 아저씨)로 압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증거 확보함.
2012	디딤돌 3	김은정(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고 이를 영상녹화에 포함(예: 시계를 읽지 못하는 피해자 모습 등)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견인함. 철저한 보완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추가 성범죄 밝혀 구속함.
2012	디딤돌 4	김지연(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 두 명의 진술 녹화 CD 등 수사 참고자료를 상담소에 제공하도록 담당 형사에게 수사 지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소 자문하도록 함. 적극적인 수사 지휘로 가해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이 외에 미해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3건을 기소함.
2012	디딤돌 5	박현주(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행방을 감춘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공판 검사는 상담소 의견서 및 상담확인서를 받고, 유력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판에 현출함. 재판부는 합의한 사건임에도 징역형 선고.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2	디딤돌 6	진을중(검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가 먼저 상담소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인 동석을 제안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 같은 학과에 다니는 피·가해자 상황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와 학교생활의 안전을 위해 법적 조치 취함.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함.
2012	디딤돌 7	정일권(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소지청(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동네 할아버지가 성추행 및 강간한 사건. 피해 시기 진술이 반복되자 원점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기억을 시간을 따라가며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감. (*이 사건 재판부도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함)
2012	디딤돌 8	김종호(재판장) 정수경(판사) 김경록(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증인신문 시 판사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소송지휘권 발휘, 판결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위로. 가해자 측 공탁 요청에, 공탁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보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발언함.
2012	디딤돌 9	박동복(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벌금형 사건을 소송지휘권 발휘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 신뢰 관계인 동석자 진술 기회 부여,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시 적절한 제지, 피고인에게 "진실 규명 없는 용서는 없다. 그러니 피고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으라."라고 함.
2012	디딤돌 10	이진만(재판장) 이영철(판사) 이상오(판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담소 상담일지 등을 토대로 사건 철저하게 재검토함. "나중에 남편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친부의 성폭력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012	디딤돌 11	이금형(전 청장) 김현길(경감)	광주지방경찰청	청각 장애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피해자들의 경찰 신뢰 회복으로 수사에 협조받음.
		정현(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피고인의 탄핵으로 쟁점이 된 사항을 보완할 만한 추가 증거로 사료. 목격자 증인신문, 전문가 의견 조회 실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노력하고 사건대책위와 성실히 소통.
		이상현(재판장) 강애란(판사) 공우건(판사)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유일한 직접 증거는 지적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뿐인 현실에서 강간치상죄 인정. 피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12	걸림돌 1	이현정(검사)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의부에 의한 강간 피해자에게 검사가 "너 아바랑 사건 거 맞지? 카톡 내용 보니까 아바랑 사랑한 거네"라며 2차 피해. 피해자와 신뢰관계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바로 사과했지만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됨. 친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2차 피해.
2012	걸림돌 2	유상재(재판장) 김도연(판사) 민희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를 증거의 열람 및 등사 요청하는 피고인 측에 피해자 정보 및 신변노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열람 등사 허가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포함하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2013	디딤돌 1	최현석(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교내 해결되지 않아 온라인에 실명 글 올려 학생들의 댓글 논쟁이 된 사건. 당시 교수 간 명예훼손 고소 건이 진행 중이었으나 추행 사실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 후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3	디딤돌 2	민유숙(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공부방 교사의 초등 5학년생 지속적인 강제추행 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항소심. 피고인이 합의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기일을 충분히 주어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도록 함.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강제추행죄는 유죄)에 대해 성기의 일부만 삽입된 경우 처녀막 손실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2013	디딤돌 3	성보기(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	친부에 의한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과도한 증인신문 사항 생략 요청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성중독증, 음란한 생활) 주장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증인신문 제지, 10년형 선고.
2013	디딤돌 4	김영수(형사)	구미경찰서 강력계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공모해 집단 강간한 사건, 3년 전 사건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독심 있게 사건을 수사하여 총 4명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함.
2013	디딤돌 5	박영성(경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엄마의 애인에게 세 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가 지방에 거주하여 진술하러 서울에 오기 어렵고, 보복 우려 등으로 진술 거부하자 지방까지 가서 설득함. 피해자보호를 위해 자원을 연계하고, 국선변호사와 협력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함.
2013	디딤돌 6	최용내(경위)	정읍경찰서 수사관	다른 사건 수사 중 친족 성폭력 피해 사실인지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고하게 함. 학교 상담교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 가해자를 구속하고 피해자 생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원 연계함.
2013	디딤돌 7	최재호(팀장)	제주동부경찰서 강력2팀	10년 동안 임대아파트 지적장애인들을 성폭력 한 사건.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검사의 기각에도 적극적으로 법리 해석하면서 끝까지 소재를 추적하여 구속수사 요청. 결국 가해자 7명 전원 구속수사. 동네 경찰 수사 순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등.
2013	걸림돌 1	김태광(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전담검사임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피고인 측 변호인의 강한 피해자 반박 및 탄핵에도 전혀 다투지 않고,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하지 않아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됨. 상담소에서 대법원 상고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2013	걸림돌 2	이규원(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적장애 여중생을 학교 선배가 강간한 사건. 둘이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라며 불기소 처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하여 무고혐의로 기소함. 신고 후에 소아 정신과에서 중증 지적장애 판정받음. 국선변호인 선임 안 됨.
2013	걸림돌 3	채석현(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지적장애 여중생을 16명의 고등학생이 한 달여간 집단 강간한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수시전형의 입학 자격을 만들어 준 교사들을 대책위에서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3	걸림돌 4	권현중(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준강간 및 절도 혐의 사건 1심 재판. 신뢰 관계인 동석 불허, 비공개 재판에 피해자 동의 없이 방청 허용, 신뢰 관계인에게 "왜 여성단체가 개입하느냐"라며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 재판 내용 수기 기록 불허. 양형 기준 보다 낮은 형 선고. 2차 피해.
2013	걸림돌 5	이원범(재판장) 이현우(판사) 김동현(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성추행 사건을 손바닥, 쇠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선고. 이 선고로 가해자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해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됨.
2013	걸림돌 6	이강호(형사)	목포경찰서	지적장애 남자 고등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합의서를 들고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도 모른 채 합의서(고소 취하서)를 작성케 함.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 시정 권고받음.
2014	디딤돌 1	김기영(재판장) 오홍록(판사) 류영재(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여중생이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구속된 가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편지에 쓰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냈다는 점 등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 설혹 가해자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하게 된 정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14	디딤돌 2	민유숙(재판장) 박해빈(판사) 심활섭(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10대 중학생이 관심 가질 법한 연예인 이야기를 건네 접근한 후 피해자 성폭력 한 점, 피해자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연인관계를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결.
2014	디딤돌 3	유남경(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 의한 장기간 성폭력 사건. 피해 일시가 구체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애인의 인지 특성 및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여 공소를 제기.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하고 장애인의 특성 이해를 위해 노력함.
2014	디딤돌 4	김윤용(판사)	전주지방검찰청	피해 고발 직원, 피해자 지원기관과 소통하면서 시설의 환경과 특성,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특성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재판마다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특성이 재판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피고인 측 왜곡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2014	디딤돌 5	변성환(재판장) 유청희(판사) 박미영(판사)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피해자 각각의 지적 능력에 대한 특성뿐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함.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긴장감, 두려움 등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언어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판결.
2014	디딤돌 6	한진욱(재판장,중령) 이주형(군판사,대위) 김진성(군판사,대위)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 '가해자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성인의 관점을 강조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판단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4	디딤돌 7	이상국(수사관)	육군 특전사헌병대	가해자가 군인이어서 군내에서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수사 과정 중 피해자가 진행 상황을 알고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신뢰를 주고, 재판 당일에도 수사관의 차량을 이용해 동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지.
2014	디딤돌 8	함석천(재판장) 윤준석(판사) 류희현(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친부의 10대 딸 강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결문에 인용했을 뿐 아니라, 고쳐된 피해자상을 강요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헤아림.
2014	디딤돌 9	류충상(형사)	구미경찰서 형사과	28년 전 이웃 아저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 후 5,000만 원 약정서 받았지만, 가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어머니를 공동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존재 확인하여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받음.
2014	디딤돌 10	양해원(경사)	전주덕진경찰서 성폭력 전담팀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를 경찰 진술 과정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하여 수사 진행. 피해자 지원기관에 피해자 연계함.
2014	걸림돌 1	민일형(대법관,재판장) 박보영(대법관) 김선(대법관,주심) 권순일(대법관)	대법원 제3부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폭력 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해자를 계속 만났으며,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동안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머물면서 면회하고 서신을 보내 사랑을 표시한 점을 들어 성폭력으로 보지 않음.
2014	걸림돌 2	김용덕(재판장) 고진홍(판사) 임한아(판사)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에게 범죄구성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공소사실 입증 요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도 무죄 선고함. 또한 공판 시 법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상황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2014	걸림돌 3	한재성(재판장,대령) 김민경(군판사,소령) 김애령(군판사,소령)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가해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과중한 업무 부여 등의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 가해자 온정주의와 군 성폭력의 특수성의 몰이해를 바탕으로 아홉 개의 사유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함.
2014	걸림돌 4	김홍석(법무실장)	육군본부	1심 선고 후 브리핑에서 "하룻밤만 자면 해결될 텐데 이런 이야기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해 피해 사실 왜곡하며 피해자를 비난함. 가해자의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하다고 가해자 옹호함.
2014	걸림돌 5	김창석(대법관,재판장) 양창수(대법관) 박병대(대법관,주심) 고영한(대법관)	대법원 제1부	군대 내 동성 간 성추행 건.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 사항 반복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의 가해자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선고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4	걸림돌 6	한승훈(재판장,중령) 송기준(군판사,중령) 엄현재(군판사,대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군사법원	병장의 일병 강제추행 건.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양형 기준 적용하여 선고유예 판결.
2015	디딤돌 1	방광주(경위) 정태완(경사) 심성배(경사) 최진이(경장)	경남성폭력 특별수사대 3팀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 구속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관 연계함.
2015	디딤돌 2	봉만중(경위)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인계되었으나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진척이 없자 지역 담당 경찰서에서 직접 검거반을 편성하여 검거.
2015	디딤돌 3	백기동 (여성보호계장)	대전지방경찰청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인지수사로 개입하여 발 빠른 수사로 한 달 반 만에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초기에 피해지원기관에 연계하고, 학부모 긴급모임에 방문, 전반적인 대응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안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개입.
2015	디딤돌 4	김성배(경감)	목포경찰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시설 내 사건, 데이트 성폭력, 카메라 촬영 및 유포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면서 피해자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
2015	디딤돌 5	이혁우(경위)	부여경찰서	보호망 없는 십 대 소녀 피해자, 피해자가 '문제가 많은 아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보호를 전제로 적극적 수사, 관계 기관 연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학을 위해 교육청을 직접 방문.
2015	디딤돌 6	정명원(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형사부	정신장애 3급 피해자, 검사가 신뢰 관계인 요청하여 영상녹화 진술에 참관하도록 하고, 진술 분석자료 제출 등 적극 수사.
2015	디딤돌 7	이기영(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넘어선 교사로서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구속기소.
2015	디딤돌 8	황은영(부장검사) 김태견(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의부의 성추행 및 강간, 적극 수사, 감형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인 신고하도록 강요한 피해자의 친모를 아동학대로 기소, 실형 선고됨.
2015	디딤돌 9	유상재(재판장) 신동현(판사) 이준명(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반성, 사과 없는 상황에서의 공탁 및 탄원을 사유로 감경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형. 원심의 무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형량 상향.
2015	걸림돌 1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으로 치료감호소 수감 중이던 가해자가 탈주하여 감금 및 성폭력 이후 자수하려 하였으나 경찰 미온적 대처. 경찰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질문. 기자들이 몰려있어 피해자 노출 가능성 있었으나 피해자를 외부 공간의 흡연실에 방치.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5	걸림돌 2	최종한(재판장) 김정곤(판사) 서삼희(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 납부 사실을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 벌금형 선고유예.
2015	걸림돌 3	이승련(재판장) 이봉수(판사) 이상완(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준강간(음주)의 항거불능 판단에서 음주량, 구체적 진술, 피해 직후 행동, 직접 신고 등을 들어 항거불능 부정,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2015	걸림돌 4	이광만(재판장) 박순영(판사) 전휴재(판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환송심. 대법원의 무죄(2014년 걸림돌)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
2015	걸림돌 5	서태환(판사) 문주형(판사) 이인석(판사)	서울고등법원	피해자 증인신문이 아닌데도 피고인 측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 주장 수용, 시민감시단 (명칭: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 퇴정시키고 비공개심리.
2016	디딤돌 1	안병위(팀장)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촬영물 이용 협박. 신속한 조사, 잠복 체포.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함.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를 통해 익명의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수사.
2016	디딤돌 2	백우현(수사관)	익산경찰서	지적장애에 준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장애등급 받지 않은 정신장애에 대해 병원에 찾아가 상담하고 의사 소견서 요청.
2016	디딤돌 3	최영식(수사관)	청주청원경찰서	직장 상사의 강간. 신고 외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 증거 신속 확보, 2차 피해에 대한 경고,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관점.
2016	디딤돌 4	오창근(경감) 김응희(경감) 박정훈(경위) 곽동규(경위) 박충호(경위) 최광몰(경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	18년 전 강간 살해 미제사건, DNA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여 구속, 검찰에 송치함. 수사진의 의지가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2016	디딤돌 5	강현욱(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운동부 코치로부터 강간 피해 4년 뒤의 신고로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기소함.
2016	디딤돌 6	김주호(재판장) 이혁(판사) 권순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준강간의 무혐의 불기소 및 항고 기각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재판부가 항거불능 상태 인정, 준유사 강간으로 죄명 변경, 공소제기 명령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6	걸림돌 1	성기범(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데이트 성폭력 강간 피해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를 무고 기소함.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성폭력의 몰이해를 바탕으로 유죄판결.
		유창훈(판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6	걸림돌 2	엄성환(판사)	부산지방법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노조 갈등, 정치적 문제로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 부정, 무죄 선고
		박석근(재판장) 이환기(판사) 김유성(판사)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6	걸림돌 3	이성구(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폭력 통념에 기반을 둔 사건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2016	걸림돌 4	김병철(재판장) 장현석(판사) 구준모(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장기간에 걸친 지적장애 여성 대상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양가감정, 가해자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함.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친족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죄 선고.
2016	걸림돌 5	엄상섭(재판장) 류봉근(판사) 이호연(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시각장애,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2년간 지속된 강간 사건에서 신고 지연, 피고인 측 지인의 압력으로 경찰신고 거부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하고 무죄선고.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사정을 간과한 판결.
2017	디딤돌 1	홍동기(재판장) 이수영(판사) 성연주(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준강간에서 항거불능 상태 이해, 피해자의 저항 없음을 과거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판단, 피해자의 합의금 제시를 금전 취득 목적이 아닌 억울함을 알리는 의미로 이해, 가해자의 무고 고소를 반성 없음으로 보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2017	디딤돌 2	나상용(재판장) 신동일(판사) 이아영(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연예인 박OO 사건 피해자 중 1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소된 사건. 판사가 검사의 부적절한 질문(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 이용) 제지, 배심원들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의 법적 의미 설명, 2차 피해 예방.
2017	디딤돌 3	차경식(경위) 정철현(경위) 박홍조(경사) 최선영(경장)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주변에 알려질까 봐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적극적 보호조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인 모르게 사건처리.
2017	디딤돌 4	김정화(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피해 이후 십여 년이 지나 인터넷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 개시. 따뜻하고 편안한 조사환경 조성, 피해자의 낯뜨름을 돕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친모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어 고소 지속 조력.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7	디딤돌 5	김동현(재판장) 정진화(판사) 정승화(판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준강간(음주)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 묵시적 승낙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 사건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해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
2017	디딤돌 6	이지홍(경감)	부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 작전계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가해자로 인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발 빠른 사전 조치, 구속수사, 적극적 증거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고소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2017	걸림돌 1	손진욱(검사) 김중(검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연예인 박** 사건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담은 질문 다수함. 피해자가 성관계 후 금전적 이익이 없자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함.
2017	걸림돌 2	김희동(검사) 김혜림(검사)	부산지방법검찰청	아내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로 살인죄 피소된 사건, 검사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폭력 흔적 없다고 주장, 피고인(아내폭력 피해자)의 외도를 폭력의 원인이자 살인 동기로 주장, 지나치게 높은 구형.
2017	걸림돌 3	이명혜(경사)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아내폭력(강간, 폭행, 폭언 등), 자녀에 유사성행위 강요로 이혼, 강간 및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한 사건. 경찰은 부실 수사, 자료 누락함. 아동학대 불기소 의견 송치하면서 피해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판명서 확인 요청하지 않음.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며 신변 보호 요청 무시, 아내폭력 사소화.
2017	걸림돌 4	김공주(검사)	부산지방법검찰청	준강간으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무고 인지 기소. 피해자의 노모에게 연락하여 딸의 강간 사실 알리고 무고혐의 있다고 겁을 줌. 다른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
2017	걸림돌 5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의부가 10대 딸과 친구들에게 약물 투여 후 추행 및 유사 강간. 경찰서는 단순 괴롭힘으로 판단, 학교에 경찰차로 제복 입고 출동, 피해자 노출되어 2차 피해. 약물 소지 전과 가해자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함. 조사 중 불명확한 이유로 피해자 주거 지역으로 사건 이송.
2017	걸림돌 6	제갈창(판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혼이주 여성인 언니의 남편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피해. 폭행, 협박의 정도 심하지 않고, 약한 방어, 도움 요청하지 않음, 피해 후 같이 차를 마심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 친족 성폭력의 특성 간과한 판결.
2017	걸림돌 7	박정의(검사)	전주지방법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준강간(음주). CCTV, 스킨십, 손잡고 걸어 들어감, 저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적극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저항의 정도만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음.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7	걸림돌 8	한웅재(검사) 김지윤(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모르는 사람에 의한 준강간(음주). 검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잠에서 깬 뒤 재차 강간 시도 하자 저항하다 콘돔 사용하라고 한 것을 동의로, 가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사게 한 것을 친밀감의 표시로 보고, 이를 뒤 고소한 것이 일반적 피해자의 대처와 다르다고 하며 불기소 처분.
2017	걸림돌 9	황나영(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논할 일이 있어 모텔을 이용하였다가 강간 피해. 사과 통화 내용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퇴실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피해자다움을 근거로 한 수사.
2017	걸림돌 10	안성준(재판장) 류호중(판사) 목혜원(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장 내 성추행. 판사들은 '남친 있다고 말했나?', '근처에 있는 남친을 왜 안 불렀나?', '왜 바로 도망가지 않고 가해자들을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내려 했나?' 등 직장 내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는 질문을 함.
2018	디딤돌 1	전형근(검사) 오세영(검사) 이승민(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시 의원인 가해자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언론 노출, 무고로 역고소하여 피해자를 위축시켰으나 검찰은 가해자 역고소에 '무고'로 엄중 대처, 성폭력 가해자의 무분별한 역고소 관행에 경종을 울림.
2018	디딤돌 2	안성근(경감) 최윤희(순경) 정구록(경감) 노승일(경장)	동두천경찰서	SNS로 알게 된 가해자에 의한 특수강간. 피해자 진술 시 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자 동석, 사건 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힘씀. 증거 수집 시 사건 현장을 피해자와 동행하며 증거물로 확보, CCTV를 일일이 수집하여 '감금죄'를 추가하여 구속수사.
2018	디딤돌 3	이은정(수사관) 노형기(팀장)	전남지방경찰청	언론에 공개된 현직 군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보고 상습 추행 사건으로 인지하여 신속히 수사 착수, 다수의 피해자 진술 확보, 관련자 30여 명 조사, 압수수색, 통신영장 8회 집행 및 참고인 9명을 조사. 권력형 성폭력의 이해를 기반으로 둔 적극 수사.
2018	디딤돌 4	김문관(재판장) 박성준(판사) 최재원(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웃 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 강간 사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황 설명을 어려워했으나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함. 또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 노력.
2018	디딤돌 5	이승훈(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학교 총장에 의해 20년간 지속된 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맥락 고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를 제압하기 위한 충분한 세력으로 인정하며, 위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
2018	디딤돌 6	강승준(재판장) 김유진(판사) 최한순(판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지인에 의한 준강간 사건. 1심에서 가해자 주장만을 근거로 무죄가 결정되었다고 판단.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가 주요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주목.
2018	디딤돌 7	황병현(재판장) 김수민(판사) 김주영(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유명 연극 연출가에 의한 상습 강제추행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권력관계 내 성폭력 피해의 맥락을 고려.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8	걸림돌 1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신동욱(군판사) 최정윤(군판사)	고등군사법원 특별부	해군 간부 2명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군대 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 피해자의 상황 고려치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최협의 설을 엄격하게 적용.
2018	걸림돌 2	최종필(검사)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교사에 의한 학생 강간 및 불법 촬영에 의한 협박 피해 무고 건. 최초 무고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했으면서도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사 진행. 두 차례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 야기.
2018	걸림돌 3	조병구(재판장) 정운택(판사) 황용남(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차기 유력 대선후보 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재판부는 직장 내 성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해진술 신빙성 배척, 관계 내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봄. 피고인 측 증인을 공개 신문하여 피고인 측의 피해자 비난이 언론화되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 야기.
2019	디딤돌 1	조규설(재판장) 김혜선(판사) 김보라(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2019	디딤돌 2	한규현(재판장) 권순열(판사) 송미경(판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연극촌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의 상습적 강제추행. 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급여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퇴사한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2019	디딤돌 3	홍동기(재판장) 오현구(판사) 성언주(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신상 노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내용 유포 등 성폭력 재판 밖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양형에 고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송지휘권 적절히 행사.
2019	디딤돌 4	오정희(부장검사) 황윤재(검사) 전화정(검사) 오창명(검사) 김녹원(검사) 김석순(검사)	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확보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 및 신뢰 관계인을 동석,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비공개심리 등을 적극 주장, 피해자 변호인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2019	디딤돌 5	민유숙(대법관 주심) 이동원(대법관) 조희대(대법관) 김재형(대법관)	대법원 제3부	해외 대사의 직원에 대한 위력 간음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및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력 해석 넓힘.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9	디딤돌 6	이영남(재판장) 권노을(판사) 이호연(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군수가 다수 피해자에게 상습 강제추행. 초기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성격, 태도, 피고인과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판단, 피해 후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님을 명시.
2019	디딤돌 7	박정화(대법관 재판장) 권순일(대법관 주심) 이기택(대법관) 김선수(대법관)	대법원	피해자가 성매매 또는 필로폰 투약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무죄 부분 파기 환송. 동의라는 개념을 ‘동의를 번복할 자유’와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
2019	디딤돌 8	김재형(대법관 재판장) 조희대(대법관) 민유숙(대법관) 이동원(대법관 주심)	대법원 제3부	무분별한 역고소 남용 지적.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 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정한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주체임으로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번복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
2019	디딤돌 9	신동헌(재판장) 박운삼(판사) 최희영(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직장동료 강제추행 사안 재정신청 인용. 1회 추행을 피해자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2019	걸림돌 1	제갈창(판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피해 당시 ‘피고인이 반팔 옷을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주장인 “출장을 갔다 왔으면 정장 차림이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등 추측성 주장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근거로 인정.
2019	걸림돌 2	박남준(판사)	광주지방법원	군수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치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한 모함’이라는 주장을 인용. 권력형 성폭력의 몰이해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2019	걸림돌 3	전국진(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시에 고기를 놓아준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있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2019	걸림돌 4	오덕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	데이트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연예인이었던 피해자를 유모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촬영 제지하지 않고, 즉각 삭제하지 않고, 이전에 합의한 촬영물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 판단. 또한 판사는 피해자 측이 동영상에 대해 비공개 요청했음에도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 및 심리적 압박감을 무시한 채 증거 영상을 시청.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9	걸림돌 5	오원찬(재판장) 박세황(판사) 고준홍(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대중교통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건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증거자료로 판결문에 기재하여 2차 피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 피해자의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고 판시.
2019	걸림돌 6	김연학(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부	관악구 주거침입 사건. 피고인의 강간 실행착수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 보라’는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간미수는 무죄 선고.
2019	걸림돌 7	최미복(재판장) 이성복(판사) 이수영(판사) 김동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월کم투비디오 사건. 피고인이 많은 범죄행위(경합범) 기소로,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하거나 최고 형량으로 처벌했어야 했으나, 피고인의 사적인 면을 고려(어려운 성장배경, 혼인 신고 등) 1년 6개월이라는 단순하고 가벼운 판결.
2019	걸림돌 8	한규현(재판장) 권순열(판사) 송민경(판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피해자가 10세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누른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최협의설을 근거로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 적용.
2019	걸림돌 9	이영남(재판장) 권노을(판사) 이호연(판사)	목포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의붓아버지에 의한 지적장애 청소년 강제추행 건에서 장애의 특성을 간과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성과 관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이를 무죄 판결 근거로 사용. 친족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합의서를 별도의 판단 없이 인정.
2019	걸림돌 10	양동우(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언어장애 동반)가 물리치료사에 의한 입은 추행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 당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배척.
2019	걸림돌 11	장해영(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경찰 송치 3일 만에 별도의 수사 없이 ‘허위 및 과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기소 처분. 비장애인과 동일한 증명력을 요구함.
2019	걸림돌 12	노영래(형사)	서초경찰서	수사 진행 시 피해자에게 ‘본인도 용의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도 유포된 영상을 앞뒤로 돌려보며 불필요한 질문으로 불쾌감을 줌.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혼란을 가중함.
2019	걸림돌 13	박인우(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고인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함.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된다. 피고인의 행동을 왜 부리치지 않았는지, 이 얘기들이 사실이야?’ 추궁.
2019	걸림돌 14	이수진(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호감을 가진 관계로 보이는 점,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거나 나체로 옷을 벗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9	걸림돌 15	여환섭 외 12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	부실 조사 등으로 인해 팀이 변경되었고 조사 기한도 총 4차례 연장.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뇌물죄만 기소, 사업가인 피고인에 대해 수년에 걸친 성범죄 중 단 3건만을 기소. 같은 양태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강간'으로, 다른 피고인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
2019	걸림돌 16	손동환(판사) 천무환(판사) 서진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성 접대'로 왜곡함. 장기간 성폭력 및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대가관계에 의해 동의했거나 성 접대를 수행한 것처럼 해석.
2020	디딤돌 1	류재응(경찰서장)	함양경찰서	주요 참고인인 동석자가 직장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고 및 경찰 조사 이후 센터 내에서 회유, 2차 피해 발생 및 고립 등으로 사건을 은폐 및 조사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 여경 2명을 매일 파견하여 점심을 함께 먹으며 상황을 주시.
2020	디딤돌 2	장태희(과장) 기신호(수사팀장) 박종현(팀원) 이민경(팀원)	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	피해자는 가해자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피해 과정에 동의했다고 진술. 그러나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가해자 사이의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지수사, 기소 의견 송치.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게 신속히 수사 착수, 증거 인멸에 대비하여 가해자 현장 조사함.
2020	디딤돌 3	강대기(팀장) 권민경(팀원)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1팀	진술 녹화 시 피해자의 청각 장애를 고려하여 수어 중개통역사, 신뢰관계자, 진술 조력인을 동석시켜 의사소통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사건 접수 후 성폭력상담소 및 의료지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돕고자 함.
2020	디딤돌 4	박형준(재판장) 임영우(판사) 심용후(판사)	서울고등법원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압박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자 2심은 추가 심리 및 증거 조사를 실시, 가족의 회유 및 압박을 인정하고 수사단계 피해자 진술 인정.
2020	디딤돌 5	김명수(대법원장)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주심),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대법관)	대법원 합의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0	디딤돌 6	이종민(재판장) 차성안(판사) 박태수(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기도 하다.”라고 판시. 미투운동 및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의미를 명시함.
2020	디딤돌 7	민유숙(대법관,재판장) 김재형(대법관) 이동원(대법관) 노태우(대법관,주심)	대법원 제3부	1, 2심 무죄 판결에 반해 연령, 경력, 직급의 차이 등 위력이 존재하는 조건을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 발생 전후의 맥락,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희롱적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발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던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원심을 파기.
2020	디딤돌 8	박주영(재판장) 김도영(판사) 정의철(판사)	울산지방법원 합의부	가출 청소년 대상 강간, 감금, 불법 촬영, 협박, 성매매 알선을 한 건에 대하여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는 점과 한국 사회의 이중적이고 왜곡된 성 규범 지적.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의 관련성을 해석.
2020	디딤돌 9	이준명(재판장) 류재훈(판사) 이선미(판사)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강간 상황극 사건. 2심 재판부는 강간 교사범 이외에도 상황극인 줄 알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강간 정범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 검사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공.
		윤효정(검사) 이수현(검사)	대전지방법검찰청	
2020	디딤돌 10	진재경(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근의 명예훼손, 모욕이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판시.
2020	걸림돌 1	박강민(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불법 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운영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책임자의 책임을 협소하게 판단하여 유포 방조에 대해 무죄선고.
2020	걸림돌 2	이준민(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모 그룹 전 회장 가사 도우미 및 비서 성폭력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고령, 전과 없음, 재판과정에서 사실인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관대한 처벌.
2020	걸림돌 3	이창경(재판장) 고영식(판사) 양해인(판사)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피고인이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적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
2020	걸림돌 4	오보미(검사)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 대상 준강간 사건에서 장애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다고 보고, 가해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실 반응, DNA 증거를 가해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0	걸림돌 5	오보미(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가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협의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왜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등 저항의 정도를 입증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함.
2020	걸림돌 6	박성환(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남자가 성범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건지 아냐', '어른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다그치는 등 조사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의심하는 말투와 대화, 가해자 중심 사고를 드러내며 가해 논리를 주장하여 2차 피해.
2020	걸림돌 7	한규현(재판장) 권순열(판사) 송민경(판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피해자가 만취하여 남성들에게 모델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밝혀졌고, 가해자가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 원본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사건.
2020	걸림돌 8	고은별(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의 녹음으로 약 30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소리를 지르거나...도움을 요청한 바가 없고...신음 음성도 확인되어 진실한 의사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불기소.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 불인정.
2020	걸림돌 9	윤석(경찰관)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피해자가 추행 피해로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가해자 민원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옹호 발언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고 2차 피해를 입음.
2020	걸림돌 10	류경진(재판장) 한동석(판사) 홍유정(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피해자가 1심 후 2년이 지나고 기자회견과 고소를 한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준강간 피해 주장을 무죄로 판단하고 기자회견은 불법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의 명예훼손, 직위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20	걸림돌 11	강동원(판사)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피해자 진술 시 피고인 퇴청, 비대면 요청 거부. 피해자 가족에게 '분하다면 왜 사건 당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며 다그침. 또한 피고인을 '외간 남자'라고 지칭 함으로써 성폭력을 남녀 간의 성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며 2차 피해를 줌.
2020	걸림돌 12	김용찬(재판장) 심우성(판사) 김가영(판사)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강간 상황극 사건. 강간 정범의 고의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목을 쥐거나 바닥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도 연기 수준을 넘은 폭행·협박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 가해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강간 통념을 기반으로 판결함.
2021	디딤돌 1	서수진(경위)	대구강북경찰서	적극적 수사 의지로 여죄를 다수 밝혀내고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고소를 끌어냄. 그루밍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밝힘.
2021	디딤돌 2	권순향(판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1	디딤돌 3	신봄메(재판장) 류봉근(판사) 김재현(판사)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성희롱 신고로 오히려 해고 처분당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함.
2021	디딤돌 4	신중환(재판장) 정지원(판사) 강영선(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피해자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술에 취해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을 심신상실로 인정하였고, 블랙아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당시 맥락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척함.
2021	디딤돌 5	이기택(대법관, 재판장) 김산수(대법관, 주심) 박정화(대법관) 이흥구(대법관)	대법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관점을 벗어나 판단하였음.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관점을 적용함.
2021	디딤돌 6	노태익(대법관, 재판장) 민유숙(대법관, 주심) 김재형(대법관) 이동원(대법관)	대법원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피해자 관점에서 살펴, 사건의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동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함.
2021	걸림돌 1	오현규(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산 전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와 검찰 측 의견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해자 측의 감정 촉탁 신청을 받아들임. 또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치상의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는 발언을 함. 교회 목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번의 기일 연기로 인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보석을 허가함.
2021	걸림돌 2	이주희(검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불신하여 불기소함. 피해자가 임신 당시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다 다툼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쌍방폭행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됨.
2021	걸림돌 3	헌법재판소 재판부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 관계인, 진술 조력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을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절대화함.
2022	디딤돌 1	이유진(경사)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함. 잠정조치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경고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2	디딤돌 2	정수미(경위)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군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힘. 지체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피난처 입소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함.
2022	디딤돌 3	이영광(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판 관여하면서 질문과 무관하게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느낌에 대해 진술하려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함. 다른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예민해서'라는 가해자의 변명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나게 하였음.
2022	디딤돌 4	강병섭(경위)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에 자문하면서 수사를 진행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안정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진술 조력인을 배치하는 등 노력함.
2022	디딤돌 5	강민주(경위)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 못하자 출산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배려하여 피해자가 안정을 찾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함.
2022	디딤돌 6	정진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전담재판부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그루밍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 상태, 심리적 길들이기,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인정하여 올바른 판단을 함.
2022	디딤돌 7	남궁선(경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성 착취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고,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함.
2022	디딤돌 8	김명수(대법원장)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	균형법상 추행죄가 사실상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함. 이로써 균형법 제92조의6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군인과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함.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동성애 혐오를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22	디딤돌 9	이정희(판사) 성재준(판사)	서울행정법원 제8부	서울 전 시장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비난과 주장에도,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판단함. 손 편지 내용을 기재하며 피해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일환으로 판단함.
2022	디딤돌 10	최창훈(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향 사건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였으나,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이 주장한 괴롭힘, 부당한 인사 고과 등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2	디딤돌 11	노태익(대법관 재판장) 박정화(대법관 주심) 김선수(대법관) 오경미(대법관)	대법원 제1부(아)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무죄 판결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함.
2022	걸림돌 1	노정희(대법관 재판장) 김재형(대법관 주심) 안철상(대법관) 이흥구(대법관)	대법원 제3부(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성 소수자고 상관의 행위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협의설을 단순 적용함.
2023	디딤돌 1	손영남(경위)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와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지능검사 재검 및 소견서 자료들을 확보하여 송치함. 피해자가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자 적극적 공감으로 안정시킴.
2023	디딤돌 2	이하나(경위)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해외 서버 기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촬영물을 직접 삭제 의뢰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안정시킴. 끈질긴 수사로 가해자 특정과 검거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옴.
2023	디딤돌 3	나원우(경감)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함. 피해자 진술이 반복된 진술 속기록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 문제가 아닌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열린 질문의 문제로 판단하고 질문 방식을 바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함.
2023	디딤돌 4	반정모(재판장) 박수진(판사) 강상우(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저항을 포기한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 언급으로 강간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소를 취하게 된 것이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2023	디딤돌 5	강지웅(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의령 군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로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함.
2023	디딤돌 6	이종채(재판장) 조정용(판사) 김찬미(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일상대화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잘 감안하여 판단함.
2023	디딤돌 7	구창모(재판장) 김기호(판사) 송현섭(판사)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합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아야 성립되는 것이며,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을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납부하는 행위가 감경 취지에 위배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존하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살펴 선고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3	디딤돌 8	백강진(재판장) 강지엽(판사) 박성수(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직업, 성 경험 등을 강조하며 동의 존재 입증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2023	디딤돌 9	안철상(대법관, 재판장) 이흥구(대법관, 주심) 노정희(대법관) 오석준(대법관)	대법원 제3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 해당 사진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되었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2차 가공물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을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023	디딤돌 10	김명수(대법원장)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주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의 최협의설을 폐기함. 최협의설 요구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함.
2023	걸림돌 1	송영주(경위) 김정화(경위)	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편의에 따라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애인 학대 통보제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음.
2023	걸림돌 2	박진영(경위)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를 언급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게 함.
2023	걸림돌 3	천안문(검사)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발론에 입각하여 기습추행을 폭행으로만 기소함,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
2023	걸림돌 4	이동희(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피해자가 엄벌 청원서를 내고 검사가 20년을 구형하였음에도, 공탁 등을 이유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2023	걸림돌 5	김형진(판사) 강지성(판사) 박동욱(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화장실 불법 촬영 건에서 유죄 판단한 1심에 반해 아동, 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은 '성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2023	걸림돌 6	이동원(대법관, 재판장) 조재연(대법관, 주심) 민유숙(대법관) 천대엽(대법관)	대법원 제2부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순간간 고의 판단을 잘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도 최협의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2020년 걸림돌 7)의 판단을 유지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역대 특별상 선정 현황(2009~2023)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09	특별 디딤돌 1	김동준(교사)	00 초등학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졸업한 제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피해 사실 파악, 어머니를 설득해 상담소에 동행 지원, 재판 시 증인 출석 등 적극 지원.
2010	특별 디딤돌 1	김나영 (사회복지사)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부모회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 이후 다양한 피해자 지원.
2010	특별 디딤돌 2	김영수(기자)	시티뉴스	T 교회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미수 피소 과정을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도.
2011	특별 디딤돌 1	전응섭(사무국장)	광주 농아협회 (전 인화학교 교사)	2005년 6월 발생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용기 내어 제보. 본인도 청각장애인으로 학부모와 외부에 사건을 알려 내고 피해 학생들의 수어 통역. 이에 따라 해직처리 되고 광주 농아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
2011	특별 디딤돌 2	젠더법연구회	법원 내 법관 모임	법원 내 젠더문제에 관심 있는 판사들의 모임. 여성 법관 리더십, 성폭력, CEDAW 등 젠더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심포지엄 개최 등 법관들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 법원 내 판사들의 젠더 감수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법원의 문화를 바꾸는데 주요 역할.
2011	특별 걸림돌 1	이훈철(기자)	일요신문	피해자의 이름과 연령, 대학과 학과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시하여 신문에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미스테리' 라는 제목으로 게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공격 댓글로 2차 피해 유발. 피해자 측 삭제요청에도 거부.
2012	특별 디딤돌 1	이유진(기자)	한겨레신문	10년 동안 지속해서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주장함으로써 친고죄 폐지 여론 형성에 큰 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심층적인 기사 작성, 성폭력 관련 사회 담론의 방향 설정에 기여.
2012	특별 걸림돌 1	112 신고센터	경찰청	<p>귀가하던 여성이 납치되어 성폭행, 살인을 당한 후 시신이 훼손된 사건. 112에 신고하여 구조요청 했으나 뒤늦은 현장 탐문 수사. 성폭력을 신고했으나 "단순 폭행인 줄 알았다"라고 하였음.</p> <p>동거남 폭력 사건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범행 현장에 전화에 동거남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처리하며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라고 함. 사건 이후 경찰의 은폐 상황도 드러남.</p>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12	특별 걸림돌 2	나주 사건 보도기관		나주 사건(고종석 사건), 흥미 위주로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피해자의 집과 범행 장소, 피해자 부모의 직업과 수입 정도 등을 노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 발생의 원인을 돌리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보도.
2013	특별 디딤돌 1	자림 복지재단 직원 7명 (기관 내 불이익 우려로 이름을 밝힐 수 없음)		6개 시설을 가족 중심 경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려 냄. 특히 현재 법인의 직원의 신분에서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7명의 직원의 용감한 고발.
2013	특별 디딤돌 2	박길자, 김수희, 이하나	여성신문 통합미디어국 콘텐츠 팀	1988년 창간 이래 지속해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 2013년 한 해 동안 성폭력 관련 보도물이 27건.
2015	특별 디딤돌 1	안교진(PD), 정보람(작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그것이 알고싶다〉의 '위험한 초대남'에서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의 사회구조적 문제 보도. 준강간 모의 실행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관련 대책 부재로 인해 겪는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다룸.
2016	특별 걸림돌 1	박기목(기자)	CBS 노컷뉴스	형부에 의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 편의 소설처럼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관음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사 작성.
2017	특별 걸림돌 1	KBS 뉴스, JTBC 뉴스, KBS 전주총국, JTBC 전주 방송		준강간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줌. 흥미 유발, 선정적 보도 및 유명인의 일탈과 외도 등에 집중된 보도.
2019	특별 걸림돌 1	버닝썬 관련 징계 대상 경찰	강남경찰서	버닝썬 클럽 내 발생한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눈감아준 경찰. 오히려 고위직 경찰이 재력가들과 유착된 비리. 관련 경찰 3명은 파면, 9명은 견책 처분, 7명은 경고로 경미한 징계. 경찰과 재계, 연예계 인물들과 친분이 확인됨에도 대가성 밝히지 못함.
2020	특별 걸림돌 1	전주대학교		교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학생 추행 사건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학 내에서는 2심 선고 후 가해자인 교수에게 징계 요청하는 등 느장 대응. 대학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의무를 방기함.

연도	구분	수상자(직책)	소속	선정 이유
2021	특별 디딤돌 1	사재수	요양보호기관	방문 요양보호사가 98세 이용자에 의한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에 대해 요양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 피해 일자 불특정. 증거 부족으로 경찰신고 반려되자 증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임.
2021	특별 디딤돌 2	양미희(기자)	씨티 21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및 보도. 관내 중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성추행 건에서 2차 피해 발생상황을 기사화.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건 기사화 및 시·도의원에게 실제적 도움 요청. 지역사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2021	특별 걸림돌 1	전남대학교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가 직원을 강제추행.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기각. 오히려 피해자 측을 허위신고로 징계. 이에 대항해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해 승소. 교육부에서 특별 감사 실시해 인권센터 교수 등에게 중징계 통보했으나 오히려 대학 내 자율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복하여 항소.
2022	특별 디딤돌 1	정은주(기자)	부산 MBC	장애인 인권 연대체의 대표가 연대단체의 실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건. 보도 이후에 사건대책위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고, 2차 피해 징계 절차가 진행됨.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 공감과 지지, 공론화를 위해 노력. 장애인단체들의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 등의 점검하는 계기가 됨.
2022	특별 디딤돌 2	이은옥, 강경국	시민	지적장애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입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자 오히려 가해자에 의해 역고소 되었으나 기각됨. 위협에 빠진 이웃에 대한 용기 있는 시민.
2023	특별 디딤돌 1	침해구제 제1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 치상한 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합의 중용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재판 중 발언도 인권 침해한 것으로 인정.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계기 마련.
2023	특별 디딤돌 2	이기림(활동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주민 13명이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사건 인지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일부 가해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전남경찰청의 수사에 이의 제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해 검찰이 직접 수사 지휘하도록 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 발굴하여 연계.
2023	특별 걸림돌 1	형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과	피해자가 신청한 판결문 발급조차 재판부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요원하게 함.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고 반박할 기회를 박탈함. 판결문 발급 허가 조치로 인해 피해자에게 시간적, 비용적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법 접근 기회를 어렵게 함.



〈부록 2〉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 활동<sup>356)</sup>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 활동

###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며

전체 성폭력 중 강간, 강간미수 등 비교적 피해 정도가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은 6.1%(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토록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데에는, 여전히 팽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을 감수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건의퇴과정,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 및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로 인해 겪는 후유증,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 겪는 2차적 피해 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법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적절한 신문 방법을 택하고 그 특성에 기초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현실에서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고 배려되기보다는, 가해자와 동석한 곳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 녹화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재진술을 요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재단하고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의 판례와 법적 관행에서 나타나는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와 가족 및 지원자들은 이와 같은 수사·공판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356)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4),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2004. 10. 13), 119-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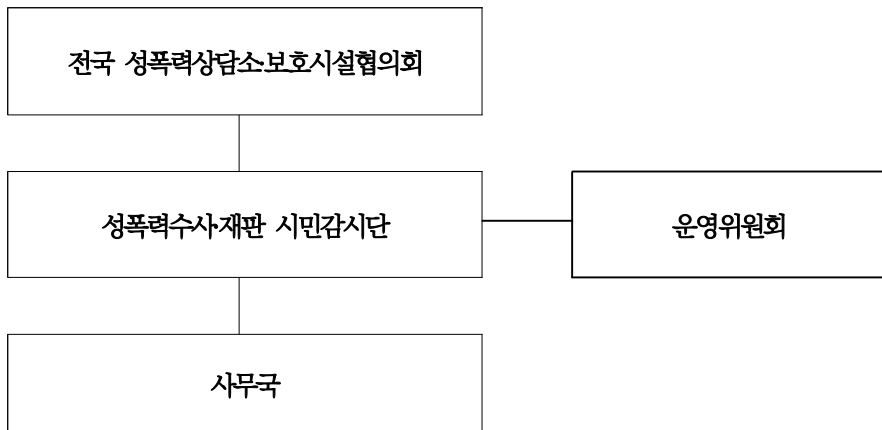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제 현상은 한편으로는, '진술 녹화는 의무화되었으나 녹화된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처럼 어린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현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을 적용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남성중심적이며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 채택은 물론,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그리고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 사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 조직구성 및 역할(안)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 감시단장 : 강지원(변호사), 이미경(전국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협의회 상임대표)

□ 사무국

□ 운영위원회 :

- 법학자 : 김성천, 김엘림, 심희기, 조국(이상 법학교수),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 법조인 : 김삼화, 김재련, 이명숙, 이성환, 이지선, 장현우, 최은순(이상 변호사)

- 여성단체 : 전국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협의회 운영위원단

유경희(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협의회 공동대표),

배숙일(서울인천지역), 김정숙(경기지역), 이화연(대전·충청지역),  
채숙희(전라·제주지역), 신기숙(대구지역), 이재희(부산·울산·경남지역)  
장명숙(장애인상담소), 조중신(피해자 보호시설)

□ 자문단 : 전국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자문위원(법조인, 학자, 의사, 활동가 등)

## □ 활동 내용

### 1.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전국의 각 상담소보호시설)

- 1)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관련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 2) 진술녹화실 운영, 신뢰 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의무화, 전담재판부 설치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 3)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증인 신문 내용상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 2.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 (사무국)

- 1) 고소 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경우,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하게 영장 기각하는 경우,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 2) 각 상담소의 지원사건 중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취합
- 3)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설계

### 3.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법률전문가, 학계, 여성단체 공동 위원회)

접수된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활동 추진

- ①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감찰 청구
- ② 대법원 진상조사 요구 및 진정
- ③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 ④ 부당 처분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 ⑤ 항의 방문, 서명운동
- ⑥ 손해배상 청구, 기획소송 등

### 4.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정기 발표

- 1) 걸림돌, 디딤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 발표
- 2) 부당/불법 사례 발표
- 3) 모니터링 결과 취합/분석자료 각 수사, 재판기관 대상으로 배포

# CHECKLIST

\* 이 체크리스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 지원팀(2003)에서 제작한 것으로 공판절차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뒤의 ‘공판 절차상 어려움 인터뷰’항목은 별도의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 형사 절차상 2차 피해(공판절차 중심)

사건번호		재판부	
기 일	( 차)	공개·비공개	작성자

### 1. 증인 신문에 앞서

a.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다음의 증인보호조치(특강7, 특신13, 성폭20)[법조문참조]가 있는가?

(Y-○ / N-☒ ☞ 비고)

- (1) 들어올 때 별도 출입문 사용 ----□ ☞.....  
 나갈 때 -----□ ☞.....
- (2) 법정경찰의 보호(동행 등) -----□ ☞.....

357)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4),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2004. 10. 13), 122-128쪽, 당시에는 공판과정 체크리스트만 공유하였고, 이듬해 전성협 정기총회에서 경찰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 공판 과정으로 세분하여 수정·보완한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조문 등을 공유하였다.(전성협 2005년 정기총회 자료집, 92-120쪽 참조)

b. 비공개심리 및 피고인 배제, 신뢰 관계 있는 자 동석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성폭22, 특신11, 형소297, 성폭22의2)[법조문참조]

(1) 비공개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 밑의 인터뷰 ①㉔에서 확인  
------(비공개 · 공개)

(2) 피고인 등의 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밑의 인터뷰 ①㉔에서 확인  
------(비공개 · 공개)

(3) 신뢰 관계 있는 자 동석 여부, 밑의 인터뷰 ①㉔에서 확인  
------(동석 · 단독)

c. 기타 (Y- / N- ☞ 비교)

(1) 법원 내 장애인 시설 완비 ----- ☞.....

(2) 증인대기실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장소 구비 ----- ☞.....

## 2. 증인 신문 상

**공판 과정상 부적절한 증인 신문이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

**유형1.**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  
☞ 피해자의 품행, 평판, 직업(성매매 업소) 및 성관계 이력 등을 질문

**유형2.**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  
☞ 충분히 반항하였는지 재차 질문

**유형3.** 기타 인격 침해성  
☞ 삼입 시간 삼입 시 느낌사정하였는지 여부 질문

참고문헌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pp98~102, 박영사 2003

a. 신문의 내용(형소299, 형소규칙74, 77)[법조문참조] (Y- / N- ☞ 비교)

(1) 논점(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의 질문을 한다.

판사 ----- ☞.....

피고측 변호사 ----- ☞.....

검사 ----- ☞.....

b.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노력

(Y-○ / N-☒ ☞ 비교)

(1)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판사 -----□ ☞ .....

피고측 변호사 -----□ ☞ .....

검사 -----□ ☞ .....

(2)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판사 -----□ ☞ .....

피고측 변호사 -----□ ☞ .....

검사 -----□ ☞ .....

(3)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적극 제지(형소299)[법조문참조]

판사 -----□ ☞ .....

피고측 변호사 -----□ ☞ .....

검사 -----□ ☞ .....

(4)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판사 -----□ ☞ .....

검사 -----□ ☞ .....

c. 기타

[공판정 내 진술권] 피해자 진술을 끊는 경향이 있다(헌27, 형소294의2②)[법조문참조]

-----□ ☞.....

[절차자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는다(시간끌기, 기일 불출석 등으로, 특히 피고 측 변호사) -----□ ☞.....

[실효성 확보] 검사는 증인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제기를 한다(형소304, 형소규칙136)[법조문참조]----□ ☞.....

### 3. 공판 절차상 어려움 관련 인터뷰

#### INTERVIEW ① - 증인 신문에 앞서

㉓ 법정 에 출석할 때 보호조치(위의 1. a. 특강7, 특신13, 성폭20)가 있었나요?

☞.....

㉔ 검사로부터 비공개신청(성폭22)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비공개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질문 사항] 신청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

㉕ 불필요한 법정 소환 방지[법조문참조]

(1) 검사로부터 증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성폭22의4)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2) 법정 외 신문(형소165) 등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㉖ 혹은 반대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았나요?

(진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헌27⑤, 형소294의2)[법조문참조]

☞.....

㉗ 공판이 지연될 때, 지연이유 등을 설명해주던가요? 증인대기실 등에 관한 배려가 있습니까?

☞.....

㉞ 피해 사실 노출 방지

(1) 소환 절차 중 피해가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나요?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았나요? (특신11, 성폭21)[법조문참조]

☞ .....

(2) 수사 및 심리 중 출판물 등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나요? (특강8, 성폭20)[법조문참조]

☞ .....

㉟ 피고인 등의 퇴정(특신11, 형소297)을 원하였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 .....

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음(성폭22의2)을 고지받았습니까?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지는 않았나요? 동석하였다면 어떤 사람인지(친족, 상담원, 변호사)? (단, 성폭22의2에 규정하는 범죄에 한함에 유의)

☞ .....

㊲ 형사절차로부터 소외 여부

(1) 수사 검사 및 공판 검사와 공판 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 .....

(2) 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 종결 후, 검사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습니까? (형소258, 259)[법조문참조]

☞ .....

(3) 재판기일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검사로부터 기일 조정(특신12 등)[법조문참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

(4) 검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소(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해달라고 종용받습니까?

☞ .....

㊳ 기타

(1)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성폭4)[법조문참조]

☞ .....

(2) 피고인에 대한 보석 취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특강6)[법조문참조]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습니까? (특신15)[법조문참조]

☞ .....

(3)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지원 및 상담, 의료지원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INTERVIEW ② - 증인 신문상

㉠ 논점(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 질문을 받았나요?

☞ .....

㉡ 신문 시, 판사 및 변호사 등의 신문 자세가 추궁하는 식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나요?

☞ .....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때, 판사 또는 검사가 이를 적극 제지하나요?(형소299)

☞ .....

㉣ 판사 및 검사 등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 .....

㉤ 재판장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헌27, 형소294의2②)

☞ .....

㉥ 피고 측 변호인 등이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이를 재판장이 제지합니까?

☞ .....

㉦ 증인 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검사가 이의제기(형소304, 형소규칙136)를 하는 것 같습니까?

☞ .....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 헌장

### 전 문

모든 어린이는 나이, 성별, 경제력,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달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적 기회와 사회적 지원 및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어린이의 심신을 해치는 행위를 가할 수 없다. 모든 어린이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린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만일 어린이의 이러한 권리가 성적 폭력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니며,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더불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로 인해 다른 권리들이 침해 받지 않게 하고,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상의 권리를 존중받고, 나이가 원치 않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와 환경 속에 자라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 수사/공판 과정에서

1. 아이가 피해에 대해 말했을 때, 혹은 아이의 언행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58)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4),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2004. 10. 13), 129-134쪽.

- 1.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담당자에게 수사/공판 받을 권리
- 1. 고소 시 자신과 아이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 증언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1. 예,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1.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언행들의 진위를 의심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 1. 단지 심문이나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공판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권리
- 1. 가해자의 신병 변화 시 통지를 받고 이를 알 권리
-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 진료 과정에서의 권리

- 1.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연계 받을 권리
- 1.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받을 권리
- 1. 모든 검사 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을 들을 권리
- 1. 진료 이후 어린이에게 예상되는 증상들을 미리 충분히 설명 듣고 알 권리
- 1.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1. 진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 일상적 권리

- 1. 고정된 성폭력 피해자보호자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1.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비난받지 않을 권리
- 1.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피해로 인한 힘든 감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권리
-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어린이의 피해로 인한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1. 사건에 대해 소위 '객관상'의 잣대로 평가되지 않을 권리
-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받을 권리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 보도(과정)에서의 권리

- 1.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권리
- 1. 동의 없이 인터뷰 당하지 않을 권리
- 1. 인터뷰를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터뷰 이후 이의 언론보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1. 사건 보도 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1. 인터뷰 전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 1. 보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제기 할 권리
- 1. 남성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1.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권리
- 1. 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 1.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1.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비교되지 않을 권리
- 1.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

##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적,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 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 받거나 사회적으로 두려워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1.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

359)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1998년 11월 25일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을 선포하였다.

###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1.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1.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 □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 1.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1.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 1.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1.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1.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 1. 생존자가 사건당시, 혹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몸의 이상과 징후 등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고 그것을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 □ 보도과정에서의 권리

- 1. 사건보도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1. 인터뷰 전 보도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 1. 보도과정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질 권리
- 1. 남성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1.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 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 1.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1.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응하지 않을 권리
- 1. 국민의 알 권리 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인터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20주년 기념 토론회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가족프라자 다목적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 주 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후 원 : 성주재단

사회: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0-14:10 개회 및 인사 나눔

14:10-15:20 발제 1 :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2차 피해 감시활동의 역사와 의미

이미경 (전성협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공동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발제 2 : 역대 디딤돌·걸림돌 명단 및 선정이유

양보름 (전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 3 : 성폭력 판단기준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인식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발제 4 : 피해유형별 수사·재판에서의 쟁점과 과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5 : 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절차적 문제와 과제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15:20-15:40 휴식시간

15:40-16:20 지정토론 1 : 권지현 (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지정토론 2 : 연대자 D (반성폭력활동가, 사법감시자)

지정토론 3 :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정토론 4 : 김보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16:20-16:50 종합토론

16:50-17:00 폐회

문의전화 : 070-4895-4126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석 신청 QR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가족프라자 다목적홀(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 주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후원 : 성주재단
- 목적 :
  - 지난 20년동안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보장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법·관행·인식의 문제점 및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 활동현장의 목소리와 의미를 분석해 이론화하고 이를 다시 운동으로 환류하여 피해자 권리를 확장하고자 함.
- 내용 :

■ 사 회 :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0-14:10 **개회 및 인사나눔**

14:10-15:20 ▲ **발제 1 :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2차 피해 감시활동의 역사와 의미**  
- 이미경(전성협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발제 2 : 역대 디딤돌·걸림돌 명단 및 선정 이유**  
- 양보름(전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제 3 : 성폭력 판단기준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인식**  
-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발제 4 : 다양한 피해유형별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5 : 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절차적 한계와 과제**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15:20-15:40 **휴 식**

15:40-16:20 **지정토론** : 권지현(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연대자 D(반성폭력 활동가, 사법 감시자)  
: 차인순(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김보화(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16:20-16:50 **종합토론**

16:50-17:00 **폐 회**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 목 차

#### ▲ 발제문 ( \* 본 연구보고서 내용 참조)

1.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2차 피해 감시활동의 역사와 의미 ..... 9  
이미경(전성협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 역대 디딤돌·걸림돌 명단 및 선정 이유 ..... 243  
양보름(전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 성폭력 판단기준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인식 ..... 26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4. 다양한 피해유형별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 88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5. 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절차적 한계와 과제 ..... 183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 지정토론문

1. 시민감시단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 294  
권지현(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2. 시민감시단의 확장 가능성 : 피해자 연대와 사법감시운동 ..... 300  
연대자 D(반성폭력 활동가, 사법 감시자)
3. 수사 재판 감시 20년이 드러낸 과제들 ..... 310  
차인순(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 ‘정치적 책임’으로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의 계보와 향후 과제 ... 314  
김보화(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 시민감시단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전성협 시민감시단 집행부로서의 경험과 전성협 공동대표로서-

권지현(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전성협 공동대표)

### 1. 시민감시단 활동 의미의 재점검 필요

시민감시단이란 무엇인가. 시민감시단을 전성협의 회원기관 활동가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시민감시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민감시단은 ‘가입’해야 들어갈 수 있다거나 나 아닌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부끄럽게도 <부록 3> : 전성협 시민감시단(2004), 형사 절차상 2차 피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알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했으나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싶다. 체크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전달하는 개인적인 방법도 있었을 테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전성협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모니터링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성협에서 2005년에 워크숍을 통해 과정보로 체크리스트와 법조문을 공유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시민감시단이 전성협의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오는 활동가들이 자신을 시민감시단으로써 인식하고 역량 강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23년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지원에 대해 알게 되어 좋다는 피드백이 매우 많았다. 이는 사건 지원자로서 갖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경우에 성폭력 사건이 사법화되면서 피해 지원 영역이 심리 정서 지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활동가들이 자신이 법으로 ‘판단’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과 제도 및 절차를 잘 알아야 피해자 권리보장과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한 것이다. 지원자로서 업무이기도 한 모니터링 활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것이었다.

시민감시단 활동이 20년을 맞이했다. 사건 지원자로서 시민감시단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주최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라는 점. 그리고 추천 대상이 디딤돌/걸림돌/특별상(디딤돌/걸림돌)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감시단 활동의 필요성-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보장-이라고 본다. 그간의 활동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기여했을까?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는 참고인에 불과하다. 법에 대해, 절차에 대해 무지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도움이 필요하다.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사 재판과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본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 그저 기분 나쁘고 불편한 감정적·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기여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걸림돌 사례로 선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자체는 불기소나 무죄 등 결과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 선정이유와 함께 통지하고 언론에 알림으로써 선정된 이들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성찰하거나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을 것이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 활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2. 디딤돌·걸림돌 선정 범주 확대 여부

현재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사건에 한해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성협 소속 회원기관은 가정폭력도 함께 지원하는 통합상담소가 35개소로 26.5%에 달한다. 운영 지침에 따라서도 스토킹, 교제 폭력이 성폭력상담소의 지원 범위에 속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의 경우도 상담소에서 지원하지만, 추천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 90년도에 전성협 시민감시단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인 김부남 사건을 디딤돌로 선정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혹은 폭행 등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건-3차 피해-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사례가 나오더라도 범주로 따지자면 제외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사건이라면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특별상의 범주를 확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는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 외 성폭력 사건의 대응과 대처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사건의 여성 폭력 범주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둘째, 유의미한 사건을 선정하고 싶어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 단체(여성단체 연합, 지역의 시설협의회 등)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디딤돌/걸림돌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을 대표해서 주는 성평등 디딤돌/걸림돌로 선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추천 대상이 전성협 회원기관에 한하지 않는다. 개인이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신뢰가 없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성협 회원기관이 아닌 개인과 단체를 위한 현재 전성협 내에 속하지 않아 시민감시단 사업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3. 디딤돌·걸림돌 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경감시킬 방안

사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막연한 추측보다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현황 파악을 위해 활동가 대상으로 설문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활동가에게 사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지역에서 걸림돌 추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마치 조직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의 노동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딤돌 추천은 하지만 걸림돌 추천은 하지 않는 것이 혹시 '관계성'을 우선해서는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걸림돌 추천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종의 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걸림돌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인가? 걸림돌 추천을 하는 것은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걸림돌로 선정된 후 그 수치심을 딛고 다음에는 더 나은 액션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봐야 안 바뀐다.'라는 불신과 무력감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걸림돌 선정 후에 돌아올 부정적 반응이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사람/기관이라면 걸림돌을 주지 않았을 때 자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감시단이 함께 연대할

것이므로 지레 겁먹지 않길 바란다. 설치고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감시단 활동을 이어 나가야 할 이유다.

#### 4.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모색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 그리고 체제 마련.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든 활동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위해 최소한의 여비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식비도 필요하다. 대부분 활동가는 속한 기관에서 출장비를 받는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출장비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비장애인 대상의 상담소는 방문이나 동행 비용이 크지 않아 출장비가 운영비 일부로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다 보니 실제 방문과 동행이 늘어나는 경우 출장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출장비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 상담소에 제안하는 첫 번째는 지역의 기금을 받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기관 소속의 활동가가 아닌 보통의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수사 과정도 아닌 재판 방청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재판 방청을 위해 '부영이감시단'을 조직한 적이 있다. 지역의 기금을 받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재판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 지역의 대학생들 비롯한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활동비나 회의비를 받을 수 있고 감시단 활동을 하며 시민으로서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청연대지만 '무엇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사회변화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목소리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담소가 사회복지실습 기관으로서 사회복지 실습생을 대상으로 재판 방청에 대해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혹은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로서 실습의 하나로 교육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상담소의 자부담 혹은 후원금으로 자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소정의 여비를 주고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소정의 여비 지급도 어렵다면, 자원 활동 시간으로 인증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두 번째, 시민감시단 체제를 마련하는 것인데 VMS라고 알고 있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olunteer Management System)를 참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sup>360</sup>로 지정되면 인증관리 요원<sup>361</sup>을 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요원은 양성 교육,

보수교육, 전문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성 교육은 신규로 인증 요원 위촉받기 위해 듣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 요원으로 위촉된 자가 요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전문 관리교육은 2년 이상 활동한 인증관리 요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관리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 체계를 전성협 시민감시단에 접목시켜본다. 모든 전성협 회원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감시단 활동에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칭)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되면 (가칭)모니터링요원을 두게 한다. 모니터링 요원은 시민감시단원으로서 위촉받기 위해 양성 교육을 듣고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듣도록 한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보수교육하고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추천서를 받아 우수 요원 및 우수모니터링기관도 선정하고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한다면 동기부여와 의무감, 소속감을 높여 시민감시단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5. 시민감시단 홍보 방안

시민감시단 홍보와 관련해서는 전성협이 주도하여 주체적으로 움직여야한다고 본다. 현재는 전성협 홈페이지가 없고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대부분의 회원 소속 활동가조차 잘 접속하지 않는다. 한편, 전성협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표단도 결국 현재 속한 기관의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시단 사업은 개별 상담소의 사업이 아니라 전성협의 주된 사업으로서 그 역사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현재 전성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성협 활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들 중심으로 메뉴 구성 및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외에도 실시간 홍보 채널로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 6. 시민감시단 예산 확보 방안

의지와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NGO 활동이니만큼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두

---

360)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

361)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인증 요원 양성 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

가지로 본다. 전성협이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받는다. 연대 사업으로 기획하여 기금을 받는다. 사실 전성협의 성격에 맞게 회원단체의 연회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으나 협의회 회비 지출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아 선뜻 제안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금이나 후원금에 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니만큼 포기하기보다 협의를 위해 꾸준히 제안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시민감시단의 확장 가능성 : 피해자 연대와 사법감시운동

연대자D

### 1. 서설

무엇보다 '시민감시단' 운동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외부에 '시민감시단' 운동을 소개하면서 관련 정보 및 기록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아쉬웠는데, 이번 보고서로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디딤돌, 걸림돌 선정 사례의 쟁점별, 피해유형별, 절차별 분석 내용은 교육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앞으로 시민 대상 형사소송절차 온·오프라인 교재로 적극 소개·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대한 작업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저는 '시민감시단'의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결합하는 사법감시운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절차가 피해 회복과 일상 재구성을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 법률전문가 - 기관종사자'의 협력 외에 일반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 연대방식 중 하나가 바로 사법감시(방청연대 등)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감시운동의 확장을 위해 피해자, 기관 종사자 외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가이드북),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절차별 설문조사 구성·제작 등에 관여해 온 입장에서 이를 일부 소개·설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속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벌써 20년 전 것이기 때문에 사법시스템의 변화와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크리스트 등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 적절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2. 본론 : 2015년 이후 일반시민들의 사법감시운동 동참 흐름

#### (1)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과 방청연대의 등장

2015년은 반(反)디지털성폭력운동이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sup>362)</sup>' 세대를 주축으로 온라인에서 활성화된 해이자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고발이 SNS를 통해 이어지던 해였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피해 고발을 한 경험은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들과 연대하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반인 여성들이 반(反)성폭력운동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미투운동: 나도 고발한다)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2016년 말부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각 분야 성폭력 피해자 연대체들의 활동도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고발을 했던 김지은 씨 등 피해자 일부는 '고소' 등을 선택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보복성 역고소'의 피고소인으로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대의 상당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방청연대'였습니다. 재판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은 성폭력 상담기관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해 왔으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직접연대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접연대를 이어가다 시민들의 재판 방청을 독려하고 피해자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청연대'라는 이름을 고안했습니다. 이후 '방청연대'는 2017년 '남배우 A(조덕제) 성폭력 사건'부터 각 기관에서도 정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17년~2020년 사이의 '방청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연대 의사 표시의 일환으로 일반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청단을 조직해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기존 성폭력 상담기관 등이 이를 주도했고, 시민들은 전국에서 재판이 열리는 수도권 법원으로 모였습니다. '공개재판주의'라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자신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그렇게 들어선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힘이 된다는 연대의 경험은 일반시민들에게 법원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능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법원은 법조인들이 군림하는 '성'이거나 피해자가 고립되는 '섬'으로, 본인

---

362) 이 용어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2001년 그의 논문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를 통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원어민처럼)로 활용하는 세대를 일컫는다.

이나 주변의 일이 아니면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었습니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용어 역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잘 모르는 자신들이 방청석에 앉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방청해 본 사람은 왜 그것이 ‘연대’이자 ‘감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정이 ‘광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방청연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 (2) 변화에 이어 맞이한 ‘백래시<sup>363)</sup>’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대면접촉형 일반성폭력에 대한 여러 담론이 이어지던 2019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대면·비접촉형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나 하고 있던 그해, ‘양진호’의 기소로 ‘웹하드 카르텔’로 명명된 디지털 성폭력 산업의 실체가 드러났고, ‘세계 최악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W2V(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인 20대 한국남성인 ‘손정우’에 대해 한국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실행)’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미 법무부가 범죄인인도 등을 위해 공개한 공소장 내용과 함께 알려졌으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언론·방송도 ‘익숙한 신종범죄’에 대해 보도가치를 부여하지 않던 그때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잠입취재를 했던 ‘추적단불꽃’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존재를 알렸고, DSO,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이어 ReSET이 등장,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20년, 경찰과 검찰은 각각 TF를 구성해 ‘N번방’으로 대변되는 텔레그램 기반의 집단 성착취, 성폭력을 추적했으며, 양형위원회는 그제서야 용어 논쟁을 그만두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손꼽니다. 국회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켰고, 언론과 방송은 사건을 다양한 형태로 다루었습니다. (검찰의) 상소 포기(재판부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남발로 점철되었던 디지털성범죄 재판도 관행에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일반시민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법무부 TF(디지털성범죄

---

363) 원래 ‘백래시(backlash)’는 ‘반동’이나 ‘반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1991년 미국 저널리스트 수잔 팔루디의 저서 〈백래시: 미국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전쟁(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를 통해 반(反)페미니즘 역풍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

죄 등 대응TF)를 구성, 활동을 지속했으며, 법원 내에 성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회(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방청연대'가 '피해자 연대'와 '사법감시'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단적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된 2020년, 오프라인 시위를 위해 모였던 '팀 eNd'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던 디지털 성범죄 재판 모니터링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고, 서로 알게 된 재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2022년까지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안동, 대구, 창원, 제주 등에서 'N변방', '박사방', '프로젝트N변방'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재판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팀 eNd'는 공판일정을 공유하고, 재판 방청 후에는 관련 후기를 카드뉴스의 형태로 SNS에 게시했으며, 그렇게 기록한 활동 내용을 책으로 출판<sup>364</sup>)했습니다.

그러나 '팀 eNd'가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 모니터링을 마무리한 2022년 이후 한국사회는 또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형사소송절차 측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변화가 이어졌고,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피해자 지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의 사법감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2년 주기로 활동 인원이 교체되거나 활동 자체가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외부감시 역시 축소되었고, 이를 틈타 사법시스템에서도 본격적으로 백래시가 나타납니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법관으로 교체되기 시작<sup>365</sup>)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말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sup>366</sup> 위헌결정을 내려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했으며,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2부에서는 2024년 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유죄(선고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장애인)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2023도13081)<sup>367</sup>)하면서 2018년의 일명 '성인지감수성 판결(2018도7709)'에 대한 적극적인 오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이전까지 유지하던 전담수사팀이나 TF 등을 경찰, 법무부 등에서 해체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부터 부실해지기

---

364) 팀 eNd,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봄알람(2022.04.30.)

365)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기획기사, 2023.10.~2023.11

366) 성폭력처벌법 제39조제6항(위헌결정: 2021.12.23.)

367) 한겨레,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가 웃는다...대법원은 정말 변신했나, 2024.02.12

시작했습니다. 부실수사는 부적절한 기소로 이어졌고, 이는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전국의 성폭력 상담기관 등도 통폐합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 조력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때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2년 일명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의 증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명제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제·소외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사건을 알리며 연대를 이어가자 사회는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 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각종 사이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건을 알리고 탄원서 작성 및 재판 방청 등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일반시민들이 연대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연대’라는 개념을 알고 있던 이들은 SNS에 게시된 방청일정에 따라 법원으로 한둘씩 모였고, 취미 등을 공유하던 팀이나 단체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심을 가지면서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이던 이들이 시위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연대를 지속 중입니다.

### (3) 시민연대의 확장

‘지역 - 정보 - 지원 - 세대 격차’는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기관을 통해 형사소송절차를 밟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가들이 모든 사건에 균일하게 투입되기도 어렵습니다. 기관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오해가 쌓여 있기도 하고, 세대 간 대화가 단절돼 갈등이 격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면 달라집니다. 일반시민들은 기관 연계 사건에서 기관 활동가들이 어떻게 연대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관 활동가들은 일반시민들과 만나며 연대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반(反)성폭력운동을 지속하던 기존 단체들이 일반시민들과 적극 교류하며 수사·재판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가는 사례를 수도권 외 지역(춘천, 창원, 광주 등)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판 방청을 하던 일반시민들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들어

가기도 하고, 기관 활동가가 시민들에게 재판 방청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기관 연계가 어려운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의 연대를 기획, 추진(전주)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교제폭력·교제살인, 여성혐오범죄, 딥페이크 기반의 디지털성폭력범죄 등이 이어 지자 일반시민들이 또다시 방청연대 등을 위한 연대체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과 경남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단F’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대단F’는 SNS를 통해 공판 일정을 공유하며 팀원들 중 참여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 내에서 방청연대를 하고 이를 카드뉴스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및 사회 전반의 관심도, 기자단의 유무 및 태도, 피고/피의자 측의 반성적 태도, 재판부 판사들 전반의 태도, 검사/원고 측의 태도, 2차 가해 미 피해 당사자 존중’ 등 항목에 최소 1점 ~ 최대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청연대 후 재판 평가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연대체들은 각자의 일상(학업, 본업 등)이 있어 지속성을 담보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거리 유지가 어려운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의 수사·재판을 모니터링하다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사·재판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 연대가 활발한 지금,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기관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기관 종사자가 다 ‘현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시민감시단’의 지속·확장은 내부의 역량 강화 및 성찰 외에 외부 시민사회와의 연계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1) 정보접근성 강화 및 아카이빙 지속

이번 보고서 작성·발표 이후 ‘시민감시단’ 운동의 의의 및 역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이트를 만들어 게시하는 것이 안정적이겠으나 예산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및 자료 백업 용도의 SNS 계정 운영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기관 종사자, 일반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오프라인 행사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관련 영상 제작 등 지역-정보-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야 합니다.

## (3) 매뉴얼(가이드북) 제작·보급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의 수사절차 가이드북<sup>368)</sup>이 2024년 하반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연말까지 기관별 각 3부씩 배송 후 비치될 예정<sup>369)</sup>이며, 앱 개발 등 추가 작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이 가이드북은 '성인 - 비장애 - 대면접촉형 일반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수사절차'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범위, 디지털성폭력 등 대상 성폭력 범죄 종류, 재판과정 등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해 별도 가이드북 기획·제작이 필요합니다.

## (4) 모니터링용 체크리스트 및 사후 평가용 설문조사 문항 제작·활용

전국 법원을 돌아다니며 법원 내 비치되어 있는 '무기명 설문조사' 문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및 시민들의 비판을 '인상비평'이라며 무시하던 법원도 법관의 언행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라 보기 어렵고, 그나마도 일반인들은 그 존재 자체조차 모르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국의 변호사회에서도 법관 평가를 지속 중이며, 올해엔 최초로 각

---

368) 서울대공익법률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 피해자노트>, 2024.09.20

369) 파일 전체 무료 공개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자료실 : [https://slcc.snu.ac.kr/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61](https://slcc.snu.ac.kr/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61))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주요 평가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sup>370)</sup>하였습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의 4개 항목으로 구분, 1,717건의 사례를 담았다고 하는데, 평가 주체가 각 지방변호사회이다보니 피해자 등 일반시민들의 평가와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감시단’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아카이빙하며 시민 대상 교육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체별(피해자, 기관종사자, 연대자, 일반시민 등), 절차별(고소 전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 등) 모니터링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활용해야 합니다. 단, 체크리스트는 현장확인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섬세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 종료 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등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중 일반시민들이 형사1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피해자나 기관종사자 포함 연대자 대상의 체크리스트는 연말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고소 전단계 및 수사단계 체크리스트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하되, 현 시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 피해자노트> 및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sup>371)</sup>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사·재판 단계 설문조사는 2019년 젠더법연구회 <“미투, 그 이후”(법정으로 온 성범죄 사건의 쟁점들)> 등을 참조해 제가 2019년 12월 22일부터 7일간 온라인으로, 이후 2020년 1월 대면을 통해 총 64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문항 및 분석 결과<sup>372)</sup> 등을 참조<sup>373)</sup>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2025년 상반기에 2020년 이후 형사소송절차의 변화를 포함해 해당 설문조사 문항을 조정,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체크리스트와 설문조사 문항은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 즉 쟁점과 피해 유형별 분석 작업은 종합 평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어도 결과에서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결과 면에서 유의미한 사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 대상이 사안·사

370) 대한변협, <2023 법관평가 사례집> 보도자료, 2024.07.01.

371) 국가인권위원회+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2022.12

372) 연대자D, “성폭력 피해자 64명 대상의 대면/온라인 설문조사”, 2020.01.

373) 경향신문, ‘피해자 배제된 재판..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2020.04.20

진별로 달리 평가되기도 합니다.

### (5) 평가 대상의 확대 필요성

실제 '2차가해'로 명명되는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추가·파생 피해는 경찰, 검찰, 법관 외에도 변호사, 각 센터·기관 종사자, 민원담당자 등 다양한 직군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론 특별상을 통해 해당 직군의 가해 등에 대해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2차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평가 부재는 늘 아쉽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등의 자정을 기대하기엔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부도덕, 비윤리는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평가기준 도입은 필요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 법무부, 검찰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무료법률지원사업 역시 평가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상황, 기관의 입장 등이 겹쳐 제대로 된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대상의 법률시장이 팽창했고, 초기 진술부터 개입해 피해자 진술을 오염시키는 사선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 3. 결어

'시민감시단'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의 외부감시가 활성화된 것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운동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휘발성이 강한 일반시민들의 연대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민들과 소통·협업하는 '내일'을 그려 보는 작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갈등과 그로 인한 불화 가능성을 감내할 수 있는 연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피해자 측의 적극적 참여, '방청연대'의 확대, 기관 내외부의 협력, 연대 공간·방법의 다양화,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백래시의 현실적·물리적 위협, 지역·정보·

지원·세대 격차의 심화 등 변화 가능성과 반동 위험성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시민감시단’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그 확장 가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듯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관과 전문가, 피해자와 시민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수사 재판 감시 20년이 드러낸 과제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시민감시단 활동 20년, 축하와 감사

전성협 의 시민감시단 활동 20년을 축하합니다. 위대하다고 말 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작업을 해 오신 지난 20년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보고서 초안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널을 뛰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룬 것에 대한 깊은 감동입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젠더폭력 법제의 진전은 가능하거나 했을까요? 누군가 시민감시단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합의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무려 20년간이나 추진해 온 분들께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 걸림돌의 사례를 읽는 내내 혈압이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소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 년 내내, 수년간, 수십년 동안 지원해 온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시단의 역할은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형성 과정과 역사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발걸음이었고, 입법·사법·행정에 공익적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점에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수사재판 절차의 준수 과제 : 법과 현실의 괴리

시민감시단의 활동은 오늘 발표처럼 수사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할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절차적 변화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전성협 여러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깨끗한 마음 하나로 버텨 왔지만, 진정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이 사업은 법무부 또는 여성가족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감시단의 활동은 바로 기왕의 법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대법원 판결 기초의 변화와 하급심의 판결과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고, 이는 제도의 안착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 양형 : 공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성폭력 양형에서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감경요소는 ‘공탁’입니다. 시민감시단의 노력으로 기계적인 공탁 인정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아가고, 공탁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합당한 처벌이 피해의 회복과 유관하다고 볼 때, 공탁이 가해자가 금전적 능력이 있으면 형을 적게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금전적 능력이 없으면 그 보다는 형을 많이 받게 되는 현 구조는 부정의하게 보입니다. 마치 ‘유전 감경’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성폭력과 같은 인격권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의 범죄에 공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공탁의 완전 배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피해자 회복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 친족성폭력 성격에 부합하는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과제

사회적으로 소위 ‘친밀한’ 관계라고 일컬어지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지속성과 일상의 불안 그리고 피해 상담과 신고의 어려움 측면에서 더 높은 강도를 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때문에 공소시효의 배제 또는 연장을 위한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는 “절반이 피해 후 10년 만에 피해 사실 상담하거나(2019), 57.9%가 공소시효 도과 후 상담 진행(2021)” 했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관점의 접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디지털 성폭력 보호 법익과 ‘성적 수치심’

디지털 성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후에도 여전히

히 '음란성'의 관점에서 판례가 일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며, 이는 법 규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의 유발이라는 구성 요건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성적 수치심'이 피해를 설명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것으로 21대 국회 부터 개정 노력(수치심 => 불쾌감)이 있어 왔지만, 보다 적절한 개정안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sup>374)</sup> 다만 국민들의 평균 감성에서 수치심은 가해자가 가져야 할 것이므로 법문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분노의 게이지'와 국가 통계의 부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페미사이드에 대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만이 매년 이 통계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교제폭력이, 성폭력이, 가정폭력이, 스토킹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지 국가가 통계를 내야 하는 것을 의무이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통계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체계적 구성 필요 : 그런데 왜 대법원은 최협의설을 유지하지?

(1) 발표자는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해석의 변화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시단의 열정적인 문제제기로 최협의설의 실질적 완화가 판례에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강간범죄의 최협의설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의'에 관한 입법 부재가 근본원인이기 때문입니다.

---

374)'성적 수치심'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인으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인으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2024 1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재인용)

(2)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의 유포범죄도 ‘의사에 반하여’를 묻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왜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는 걸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범죄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의사에 반하여’와 관련하여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여러 가지 맥락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151쪽), 만약 법 규정이 ‘의사에 반하여’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 라고 되어 있다면 종합적인 판단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유포가 안되었을 것이고, 최협의설의 확장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전성협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의 약 60%~ 70%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현실이 있고, 이것이 최협의설 해석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신체적 성폭력에 대하여 최협의설이 아닌 ‘동의’ 또는 ‘의사에 반하여’를 강간의 기본형으로 정립하여 집행하고 그에 합당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만 아니라 더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2021년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피해자 동意的 부재가 강간 정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국의 법률이 이를 조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sup>375)</sup>

---

375) 시모노비치(Simonović)는 ‘주요 쟁점은 강간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말했다. "강간은 항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강제력의 사용은 동의 결여를 보여 주지만, 이는 강간 범죄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은 모든 강간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강간을 멈추기 위한 형사법 정비 필요 - 유엔 전문가, 2021년 6월 28일,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공식 웹사이트.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1/06/harmonization-criminal-laws-needed-stop-rape-un-expert>.

## ‘정치적 책임’으로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의 계보와 향후 과제

김보화(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 □ 연구의 의의와 위치성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기록이자,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것들의 의미, 그리고 현재의 쟁점과 고민을 운동사적으로 계보화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성폭력 판례가 얼마나 반피해자적이었는지를 고발하는 방식을 ‘걸림돌’로, 피해자의 관점, 또는 피해자의 맥락을 고려한 판례를 ‘디딤돌’로 호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경험 이 어떻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때로는 판례를 변화시키는 기점이 될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가히 ‘말하기 운동’의 한 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걸림돌과 디딤돌뿐 아니라 이러한 판례들이 등장하는 전후의 과정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및 전국 각지의 성폭력상담소의 활동들을 소개함으로써 판례와 운동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드러내고, 절차상의 문제와 특별상 수여 사례들을 통해 언론, 경찰, 대학, 국가기관, 활동가, 시민 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 수사·재판 담당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몫이자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해야 할 공유된 책임으로서 ‘정치적 책임’<sup>376)</sup>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 고민하고 싶은 지점들

수많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

376) Young, Iris M.(2013),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서울: 도서출판 이후. 원전: Responsibility for justice, 2011.

첫째, 판례의 선고를 둘러싼 배경이 좀 더 강조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 디딤돌, 걸림돌 선정 개수 표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에 다른 해보다 선정이 많은데, 이는 2018년, 미투운동 시기 고소되었던 사건이 그 시기에 판결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판례가 등장한 사회적 배경이 좀 더 설명되면서 미투운동 전후의 차이가 부각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좀 더 드러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의 FGI가 연구방법에 간략히 적시되어 있지만, 참여 인원, 시기, FGI 내용, 간략한 특성 및 사례 번호 등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 향후 성폭력 시민감시단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물음들”은 시민감시단 활동뿐 아니라 반성폭력운동의 방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여 해당 부분에 FGI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드러내고 이러한 활동가들의 물음을 향후 후속 연구나 포럼으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피해경험 당사자들의 활동이 더 드러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을 전후하여 피해 당사자들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었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공론화나 글쓰기, ‘공폐단단(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과 같은 활동들은 수많은 디딤돌 판결들의 배경이자, 앞으로의 디딤돌 판결에 씨앗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해경험자들의 적극적 활동들을 조금 더 강조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2차 피해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걸림돌 판례는 그것 자체가 2차 피해이고, “II.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와 2차 피해 감시활동”이라는 활동명과 같이 시민감시단 활동 자체에 ‘2차 피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에 ‘아내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 불인정과 2차 피해’ 등과 같이 2차 피해가 별도의 소재목으로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어 카테고리상의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2차 피해’라는 언어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감당해야 될 수많은 부조리와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반성폭력운동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2차 피해를 명명하게 된 과정이나 그것이 판례나 양형 등에 반영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나 흐름이 조금 더 언급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피해’의 명명과 연구<sup>377)</sup>,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반성폭력운동사에서 중요하게

의미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의 법적 정의는 변하기 어렵지만,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그 판례와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감시단이 말하고 있는 성폭력의 정의를 서론에 추가하여 법 조항과의 차이 및 그것의 의미가 강조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정의는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법의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의 시작점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성폭력 PTSD 진단과 성폭력의 법적 인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 연구에서 2019디딤1판결은 성폭력 피해 후 PTSD 진단시점을 손해발생일로 보아 소멸 시효를 적용한 판결로 이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사건이기에 특히 정신적, 심리적 손해배상 증명의 차원에서 어떠한 진단명이 꼭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 고민이 되는 것은 PTSD의 ‘진단명’이라는 것이 피해 이후의 후유증과 어려움을 모두 통칭하는 ‘대명사’로 부각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과 적 진단명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이 특정한 시기와 맥락에서 정신과나 심리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성폭력 피해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PTSD와 같은 진단명은 성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배경, 그 경험이 각기 다르게 의미화되는 이유, 조금 덜 고통스럽거나, 조금 더 고통스러워지는 사이의 맥락이나 사건의 해결과 회복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야 할 정치적인 언어들에 개인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경험의 의미는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판례들은 이를 특정한 상으로 고착화하고, 피해의 진정성을 판단하거나 형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의 법적 판단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

---

377)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2차 피해와 그것의 발생 구조, 피해자 권리와 국가 책임 등에 관해서는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고.

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의 입증을 위해 도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전형에 저항하면서도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에 대해 계속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sup>378)</sup>

일곱 번째, 성폭력 법적 해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법제·개정 운동은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기에 그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감시단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판결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디딤’이 될 수도,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법적 승/패소만으로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단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폭력운동의 법제·개정 운동이 주는 의미와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 한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의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 연구가 단행본으로 제작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걸림돌’로, 어떤 것이 ‘디딤돌’로 선정되는지를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혹시 모를 내 안의 통념을 마주 볼 수 있는 귀한 학습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 덧붙이고 싶은 말

지난 몇 년 전, 많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없나요?’, ‘선배들은 어디에서 무얼 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운동가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 연구 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고 바뀔 때 뿐 아니라, 그 법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때에, 또는 그 강고했던 문구와 해석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에도, 그 핵심에는 성폭력 피해경험자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활동가들이 있었고, 그들을 둘러싸고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이 웅장한 보고서를 가슴에 담아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도하며, 또 다음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보고서야말로 ‘특별상’에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378)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



## 형사재판 1심 체크리스트(일반시민용)379)

이 체크리스트는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일반시민이 형사재판 1심을 방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만든 것입니다. 평가 대상(판사, 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법원 경위 등)보다는 절차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법원 현장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그를 조력하는 기관 종사자들 대상의 체크리스트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작업을 진행 중으로, 늦지 않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가 현장확인용으로 활용도가 높다면, 이외는 별개로 절차별 설문조사를 세심하게 구성해 절차 종료 후 평가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체크리스트는 평가의 기초 정도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 연대자D

---

379) 본 체크리스트는 연대자D님이 형사사법절차 모니터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성협 시민감시단에 공유한 것입니다. 전국의 수사·재판 현장을 직접 다니며 쌓은 사법감시의 노하우를 전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에게 가까이 공유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판 시작 단계 공통 확인 사항〉

재판 전 법정 앞(〈오늘의 공판안내〉 확인하기)	
1	법정 앞에 붙어 있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확인했나요?
2	〈오늘의 공판안내〉의 형태(종이, 전광판, 종이+전광판)를 확인했나요?
3	〈오늘의 공판안내〉를 통해 재판부 이름을 확인 후 기록(‘고단’일 경우 1인, ‘고합’일 경우 3인이며, ‘고합’은 순서대로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입니다)했나요?
4	〈오늘의 공판안내〉에서 방청 사건의 구분(신건, 속행, 선고), 주심 판사(가, 나, 다/재판장, 우배석, 좌배석), 사건번호, 피고인명(일부), 사건명(범죄명 일부)을 확인했나요?
재판 전 법정 내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확인하기)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했나요?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나요?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일반내용’을 통해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인과 변호사 이름을 확인했나요?
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일반내용’을 통해 관련 사건이 있는지(번호), 분리/병합된 사건이 있는지(번호) 확인했나요?
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진행내용’을 통해 공판검사 이름을 확인했나요?
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진행내용’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 (피해자 변호사 이름은 익명처리됩니다)했나요?
7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진행내용’을 통해 법원에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했는지 확인했나요?
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진행내용’을 통해 피고인 측이 합의나 형사공탁을 진행했는지 확인했나요?
9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진행내용’을 통해 피고인 측이 ‘부당감형자료(일명 ‘꼼수감형자료’: 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치료 확인서, 심리교육 수료증, 범죄심리의견서, 봉사활동계획서(확인서), 재범방지서약서, 독후감, 장기기증서약서 등)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나요?
10	법정 내 스크린의 위치를 확인했나요?
11	법정 내 구속 피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12	법정 내에서 일반시민은 휴대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수기는 대체로 허용)했나요?

13	법정 내에서 녹음, 촬영을 하면 확인 절차 후 퇴정 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나요?	
<b>재판 시작</b>		
1	재판부가 공판검사 이름을 확인했나요?	
2	공판검사 이름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공판검사 이름과 동일한가요?	
3	재판부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이름을 확인했나요?	
4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법인 및 변호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다수의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출석한 변호사가 누구이며 몇 명인지 확인했나요?	
5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사 출석 여부 및 이름을 확인했나요?	
6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했을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자리를 확인했나요?	
7	(피해자 측이 방청할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8	재판 일자·순서별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 확인(예. '첫공판 때 모두진술까지만 했고, 두 번째 공판 때 공소사실 인부, 증거인부까지 했다' 등)했나요?	

## 〈재판 종료 후 단계〉

<b>매 공판 종료 후</b>		
1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방청했을 경우 공판 종료 후 재판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나요?	
2	공판 시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재판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했나요?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이후 재판 일정을 확인했나요?	
4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 언론·방송의 기사 내용과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나요?	
5	재판 내용에 대해 외부(SNS 등)로 알린다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사건 내용에 대한 자극적 설명 자제 등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게시했나요?	

## 〈형사 재판 1심 절차별 확인사항〉

공판준비기일	
1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나요?(바로 공판기일로 넘어간 경우 나머지 체크리스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이 출석했나요?(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예.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 논의, 공소사실 관련 쟁점 정리, 증거조사 방식 결정 등)했나요?
4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했다면)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했나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1	피고인의 인신구속 여부(구속상태, 불구속상태)를 확인했나요?
2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나요?
3	재판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직업 등)을 확인했나요?
4	방청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나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1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2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나요?
3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판검사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했나요?
4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 측(예: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했나요?
5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모두진술	
1	공판검사가 공소장(공소요지 등)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는 공판검사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범죄사실의 상세 설명 지양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나요?
2	공판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했나요?
3	공판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나요?
4	공판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방청연대자는) 공소장 속 적용범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했나요?

공소사실 인부	
1	검사의 모두진술 후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범위를 확인했나요?
2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전부 인정, 전면 부인, 부분 인정) 확인했나요?
3	(부분 인정의 경우)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확인했나요?
4	(전부 인정의 경우)이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예. 검사 구형 등 당일 바로 결심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5	(전면 부인의 경우)이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증거 인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중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증거 목록상 번호)했나요?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중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중 피고인 측이 동의 후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증거신청	
1	공판검사가 법정 내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거와 증거조사방식을 확인했나요?
2	피고인 측이 법정 내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거와 증거조사방식을 확인했나요?
3	재판부가 증거조사와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나요?
4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와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5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공판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들은 몇 명이고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6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재판부는 피해자 측(예: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했나요?
7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공판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디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인했나요?
8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공판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중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하기로 채택한 증인들의 증인신문 순서와 일자를 확인했나요?

9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이 언제, 어떤 방식(공개 여부 등)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	---	--

증거조사 중 피해자 증인신문		
1	피해자 증인신문 전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의견(증인신문 방식, 공개 여부 등)을 확인했나요?	
2	피해자 증인신문 전 피해자 측(예. 피해자 변호사)은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나요?	
3	피해자 증인신문 전 공판검사는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나요?	
4	피해자 증인신문은 공개(비공개되었을 경우 이하 체크리스트는 답변하지 마십시오)되었나요?	
5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가 증인신문 전 어느 장소에 있는지 확인(법정 내 방청석, 법정 밖, 법원 내 증인지원실 등)했나요?	
6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차단을 요청했을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드나들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치지 않도록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나요?	
7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사 및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했나요?	
8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 변호사는 동석했나요?	
9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 신뢰관계인이 동석했다면, 누가, 몇 명이나 했는지 확인했나요?	
10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가 변호사나 신뢰관계인이 증인석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나요?	
11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예. 피해자 바로 옆, 증인석 왼쪽 사선 뒷자리 등)했나요?	
12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차단을 요청했을 경우 재판부가 허가한 접촉차단방식이 무엇인지 확인(예. 차폐막 설치, 피고인 퇴정, 화상지원실 활용 등)했나요?	
13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전 재판부가 신문 과정이나 내용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검사와 피고인 측에 전달했나요?	
14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할 경우 소송지휘를 하거나, 그 내용을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는 주의를 주는지 확인했나요?	

15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전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의 심적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보였나요?	
16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전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피해자의 상태, 상황 등을 고려해 충분히 설명했나요?	
17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전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증인신문 도중 휴식이 필요하면 이야기할 것 등을 전달했나요?	
18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예. 검사의 주신문→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재판부 신문, 재판부 신문→검사의 주신문→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등)했나요?	
19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검사의 주신문은 어떤 내용이었고,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했나요?	
20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어떤 내용이었고,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했나요?	
21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검사가 재주신문을 했나요?	
22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반대신문을 했나요?	
23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 유형 및 내용이 적절했나요?	
24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부적절한 질문 유형(내용면)에는 모호하거나 오도되거나 혼동하게 하는 질문, 과도하게 괴롭히거나 겁을 주거나 공격적인 질문, 빈정거리거나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질문, 고정관념 내지 일반적 통념을 기반으로 다그치는 질문, (사건과 무관하게)집요하고 반복적인 질문, 성관계 행위 내지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질문, 피해상황에 대한 시범 및 재연 요구, 피해자의 사생활 내지 성적 이력에 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질문이 있었다면 각각 어떤 유형인지 확인했나요?	
25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권고되는 질문 유형(형식면)으로는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증인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적합한 단순한 용어를 사용한 질문, 단순한 구조와 짧은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 수동형보다 능동형 문장을 사용하는 질문, 한 번에 하나의 내용만을 담아 전달하는 질문, 복합적 개념이나 표현, 부정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성한 질문, 개방형 질문, 증인의 인지능력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질문, 분명한 어조와 적당한 속도로 표현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이 이에 비추어 어땠는지 확인했나요?	
26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를 일으키는 신문에 대해 외부의 문제제기 없이 재판부가 알아서 제지 등을 하는지 확인했나요?	

27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를 일으키는 신문에 대해 검사가 즉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지 확인했나요?	
28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를 일으키는 신문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제기를 하는지 확인했나요?	
29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를 일으키는 신문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했나요?	
30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검사, 피해자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했나요?	
31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2차 피해'를 야기하는 부적절한 신문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태도는 어떤지 확인했나요?	
32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문서, 영상, 사진 등 피해자 진술 외 증거자료의 확인이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다면, 해당 증거자료에 피해자 보호 조치(개인정보 삭제 등)가 이루어졌나요?	
33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종료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전달했나요?	
34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는 증인신문 종료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했나요?	
<b>증거조사 중 피해자 외 증인신문</b>		
1	피해자 외 증인들의 증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확인(검찰 측 신청 증인 대상 증인신문 → 피고인 측 신청 증인 대상 증인신문 등)했나요?	
2	피해자 외 증인들은 증인신문 순서에 따라 증인신문 전 다른 증인들의 신문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퇴정되었나요?	
3	피해자 외 증인들의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변호사는 출석했나요?	
4	피해자 외 증인들은 증인신문 종료 후 다른 증인들이 증언할 때 법정에서 있었나요(혹은 법정에서 있겠다고 할 때 재판부가 허가했나요)?	
5	피해자 증인신문 전 피해자 외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을 때 피해자가 법정에서 있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나요?	
6	피해자 증인신문 후 피해자 외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을 때 피해자가 법정에서 있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나요?	
7	피해자 외 증인들은 증인지원절차를 활용(증인지원실 이용, 비공개심리, 접촉차단 등)했나요?	
8	피해자 외 증인들이 비공개심리를 요청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나요?	
9	피해자 외 증인들이 접촉차단을 요청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나요?	

10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 외 증인들의 증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신청한 쪽 주신문→반대신문→재판부신문 등)되었고,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했나요?	
11	(증인신문 공개 시)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피해자 실명 사용 금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언급 자제 등 요구)를 취했나요?	
12	(증인신문 공개 시)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 유형 및 내용이 적절했나요?	
13	(증인신문 공개 시)부적절한 신문에 대해 재판부, 검사, 피고인 측이 각각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했나요?	
14	(증인신문 공개 시)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야기할 만한 신문이 있었는지, 그런 신문이 있었을 때 재판부, 검사 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했나요?	
15	(증인신문 공개 시)증인신문 종료 단계에서 피해자 외 증인들은 의견진술을 했나요?	

#### 증인신문 외 증거조사

1	증인신문 외 증거조사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2	영상, 녹음물, 사진, 문서 중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거나 '2차피해'를 야기할 만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경우 비공개전환 등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3	영상, 녹음물, 사진, 문서 중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거나 '2차피해'를 야기할 만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공개심리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현장에서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 등이 문제제기를 했나요?	
4	영상, 녹음물, 사진, 문서 중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거나 '2차피해'를 야기할 만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공개심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했나요?	

#### 피해자 의견진술

1	증인신문 외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측(피해자, 가족 등)의 상태·상황,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별도로 확인했나요?	
2	증인신문 외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나요?	
3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했다면 재판 단계 중 어떤 단계(예. 결심 전, 결심단계 등)에서 진행되었나요?	
4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했다면 어떤 방식(양형증인신문, 일반 구두진술, 서면진술, 대독 등)을 활용하는지 확인했나요?	
5	피해자 측이 양형증인신문방식으로 의견진술을 했다면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공개 여부)으로 얼마나 걸렸나요?	
6	피해자 측이 양형증인신문방식으로 의견진술을 했다면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	

	을 했나요?	
7	증인신문 및 결심공판 외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 구두진술의 형태로 의견진술을 했다면 피해자는 어느 자리(예. 방청석)에서 어떻게 진술(예. 피고인 퇴정 상태)했나요?	
8	결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했다면 순서가 어땠는지 확인(예. 검사 구형 전, 검사 구형 후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 전, 피고인 최후진술 후 마지막 순서 등)했나요?	
9	결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제약(시간, 진술방식 등)을 두는지 확인했나요?	
<b>피고인신문</b>		
1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 재판부가 확인했나요?	
2	피고인신문은 누가 신청(피고인 측 변호인, 검사, 재판부 직권)했나요?	
3	피고인신문을 피고인 측 변호인, 검사가 신청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나요?	
4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해자 변호사는 출석했나요?	
5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해자 측(피해자, 가족 등)이 방청했나요?	
6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은 재판 단계 중 언제 진행(결심 전 별도공판 기일, 결심 단계 등)되었나요?	
7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은 공개되었나요?	
8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해자 측, 피해자 변호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을 때,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변호사는 방청이 가능했나요?	
9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고, 얼마나 걸렸나요?	
10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 과정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 대상의 '2차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적절하게 소송지휘를 했나요?	
11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 과정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 대상의 '2차피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나 (출석했을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하나요?	
12	(피고인신문 진행 시)피고인신문 과정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 대상의 '2차피해'가 발생하고 검사나 (출석했을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했나요?	
<b>결심공판(변론종결)</b>		
1	결심 진행 전 재판부가 결심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의 '2차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주의를 주는지 확인했나요?	
2	결심 진행 전 재판부가 피해자 측(피해자, 가족 등)이나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결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나요?	
3	결심과정에서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한다면 언제(검사 구형 전, 검사 구형 후 최후변론 이전, 최후진술 후 마지막 순서) 어떻게(직접 구두진술, 대독, 서면제출 등)하는지 확인했나요?	

4	(검사 구형 및 최후의견)검사 구형 시 형종(징역, 벌금 등), 형량,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금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 청구, 몰수, 폐기 등) 등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5	(검사 구형 및 최후의견)검사가 구형하면서 최후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했나요?	
6	(검사 구형 및 최후의견)검사가 최후의견을 밝혔을 경우 검사의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나 피해자 보호 의지, 성인지감수성 등은 어땠는지 확인했나요?	
7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2차가해'를 저지르는지 확인했나요?	
8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불필요한 변론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했나요?	
9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지 확인했나요?	
10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개입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적절하게 개입하나요?	
11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 피해자 변호사(출석 시)가 문제제기를 했나요?	
12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하고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했나요?	
13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변론)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자기 변명을 했나요?	
14	(피고인 최후진술)최후진술은 구두로 진행했나요?	
15	(피고인 최후진술)피고인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16	(피고인 최후진술)피해자 측이 참석했다면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나요?	
17	(피고인 최후진술)최후진술에 대해 피해자 측이 분노 등 격한 감정을 표출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했나요?	

1심 선고		
1	선고 전 검사의 구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나요?	
2	선고 시 피해자 측(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출석했나요?	
3	선고 결과(형종, 형량, 보안처분 등)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4	검사 구형 내용과 선고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았나요?	
5	선고 시 재판부가 어떤 순서에 따라 판결 내용을 전했는지 확인(이유 낭독→주문 낭독, 주문 낭독→이유 낭독 등)했나요?	
6	선고 시 재판부가 사건 내용 중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1심 선고 후		
1	선고 결과 확인 후 <대한민국법원-대국민서비스-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을 신청(개인정보 입력,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신청, 파일형태로 이메일 전송 신청 등)했나요?	
2	선고 후 피고인 혹은 피해자 측에서 판결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신청했나요?	
3	선고 후 열람제한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 허가했나요?	
4	선고 후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신청 후 얼마만에 판결서 사본을 제공받았나요?	
5	판결문을 받았다면 분석을 해보았나요?	
6	판결문을 분석해 보았다면 방청 때 모니터링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유의미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 보았나요?	
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항소기간(선고 후 일주일 이내) 도과 전 항소 여부를 확인했나요?	
8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누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했나요?	
9	항소장 제출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중 '사건일반내용'을 통해 상소법원('고단'일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 '고합'일 경우 고등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심급 내용)했나요?	

〈부록 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상담소 명단 (13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상담소 명단 (132개소)

서울·인천 권역(14개소)		경기남부 권역(14개소)		
서울	1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1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	뽕엘성가족상담센터	2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3	서초성폭력상담소	3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이레성폭력상담소	4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5	천주교성폭력상담소	5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6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6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7	한국성폭력상담소	7	사단법인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8	한국성폭력위기센터	8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9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9	인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10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10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11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11	하남성폭력상담소
	12	꿈터성폭력상담소	12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인천	13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13	김포성폭력상담소
	14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14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북부 권역(6개소)		강원 권역(8개소)		
경기북부	1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1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2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2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3	동두천성폭력상담소	3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4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4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5	포천가족성상담센터	5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6	연천행복뜰상담소	6	아라리가족성상담소
		7	행복만들기상담소	
		8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청·세종·대전 권역(19개소)		전남·전북·제주·광주 권역(19개소)		
충청	1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1	나주여성상담센터
	2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	담양인권지원상담소
	3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3	무안여성상담센터
	4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4	함평보두마상담센터
	5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5	전남성폭력상담소
	6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6	해남성폭력상담소
	7	충남성폭력상담소	7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8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8	여수새날상담센터
	9	부여군성 가정폭력상담센터	9	군산성폭력상담소
	10	예산성폭력상담소	10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11	서천성폭력상담소	1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12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12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13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13	익산성폭력상담소
	14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14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충북	15	제천성폭력상담소	15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6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16	광주성폭력상담소
	17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17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대전	18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18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9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9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대구 권역(9개소)						
전북	1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북	6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2	로댐성폭력상담소		7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3	새경산성폭력상담소	대구	8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4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9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5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부산·울산·경남 권역(20개소)			장애 권역(23개소)			
전남	1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서울	1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장애여성폭력상담소	
	2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2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3	김해성폭력상담소		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4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4	한사회장애여성폭력상담센터	
	5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인천	5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여성폭력상담소	
	6	사)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6	오내친구장애여성폭력상담소	
	7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기	7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8	함안성·가족상담소		8	의정부장애여성폭력상담소	
	9	하동성가족상담소	대전	9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10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10	사단법인 다감복지협회 부설 동대전장애여성폭력상담소	
	11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	11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여성폭력아산상담소	
	12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12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여성폭력상담소	
	13	진주성폭력상담소	충북	13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14	양산성가족상담소		14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광주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부산	15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제주	15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16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16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17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북	17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18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18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부설 영남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울산	19	사)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남	19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20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부산	20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전북			울산		21	울산장애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여성폭력상담센터
			전남		22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전북	23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여성폭력상담소	

전성협 2024년 연구보고서 -1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

발행일 : 2024년 12월 9일

발행인 : 김혜란, 권지현, 박선경, 최현진

발행처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편집 : 장임다혜, 양보름

주소 : (44070)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 3층

전화 : (052)251-6776

이메일 : kasvrc@hanmail.net

인쇄처 : 카피플러스 TEL (02)338-4566

---

- 본 연구보고서는 성주재단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